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하루소식

합본 11호

1998년
7월 ~ 12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1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02-741-5363 (팩스) 02-741-5364 웹사이트 http://www.interpu.net/rights

인권하루소식

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

에 대한 조명이 한창이다.
4·3 50주년을 맞는 시점
해 보다른 취民间 논의와
되고 있다.

3에 대한 논의가 예고된
6월 학생 이후, 그전까지
기하는 것조차 '금기'였고,
이었다. 그러나 87년 6월
출된 민주화 열기는 4·3

을 본격화시켰고, 그 작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현간의 꾸준한 노력에도
대한 진실은 아직 일부에
다수 양민들이 군경토벌

들에 의해 집단학살되었
는 3만 명 이상으로 추
각 다양한 피해 사례가
이다. 제주도의회가

에서도 1만1천6백60여
83%에 해당하는
토벌대에 의해 죽어
나.

의 핵심쟁점인 마산
부는 여전히 빠임에
관과 함께 일부가 주
자료와 미국측 관
구해 왔지만, 경북
때문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인권하루소식

합본 11호

(1998년 7월 ~ 12월)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인권하루소식

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

에 대한 조명이 한창이다.
4·3 50주년을 맞는 시점
해 보다른 취民间 논의와
되고 있다.

3에 대한 논의가 예고된
6월 학생 이후, 그전까지
기하는 것조차 '금기'였고,
이었다. 그러나 87년 6월
출된 민주화 열기는 4·3

을 본격화시켰고, 그 작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현간의 꾸준한 노력에도
대한 진실은 아직 일부에
다수 양민들이 군경토벌

들에 의해 집단학살되었
는 3만 명 이상으로 추
각 다양한 피해 사례가
이다. 제주도의회가

에서도 1만1천6백60여
83%에 해당하는
토벌대에 의해 죽어
나.

의 핵심쟁점인 마산
부는 여전히 빠임에
관과 함께 일부가 주
자료와 미국측 관
구해 왔지만, 경북
때문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마친 것이다. 4·3 진실규명의 시대
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인권하루소식

98년 11월

(제1241호 - 제1260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1월 3일(화)

제 124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책읽는 교도소’ 말뿐인가

검열 불편 이유로 도서 반입 금지

법무부가 자랑한 ‘교도소의 도서관화 정책’이 보안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교도소의 이미지를 도서관처럼 바꾸겠다던 법무부는 최근 들어 보안을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도서 반입을 금지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전국 각 교도소에 ‘원형을 훼손해야만 검사가 가능한 품목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렸으며, 도서도 이 중의 한 품목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대구, 강릉, 청송교도소와 청송 1·2 감호소 등 몇몇 교도소에서 책과 옷 등의 소포 반입이 금지되고 재소자들에겐 영치금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방침을 지시한 법무부 보안과의 한 책임자는 “소포를 통해 부정물 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완벽한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물건 대신 영치금을 넣으면 교도소에서 즉시 내부 구매를 해주기 때문에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이번 조치는 면회자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송료도 없기 때문에 재소자와 가족들 모두에게 편리함과 이득을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도소마다 재소자의 숫자가 평균 1천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소자들이 원하는 모든 책을 교도관들이 언제든 즉시 구입해서 전달한다는 법무부의 방침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보통 교도관과 재소자의 비율이 일본 1:2.4, 미국 1:3.2, 영국 1:1.3, 프랑스 1:1.2 정도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7.8에 달해 전반적으로 교도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군산, 청주교도소

등 몇몇 교도소에선 그동안 교도관 부족으로 인해 재소자 1인당 월 2회 총 6권으로 도서구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폐운 바 있다. 결국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검열물품을 줄여 교도관의 편의를 도모하는 반면, 재소자들에게는 그 만큼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재소자 독서권 보장 미흡
한편, 올해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가 전국의 출소자 2백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교도소내 도서관과 도서구비율 등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9.1%는 교도소내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없으며, 도서관이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서관 이용자중 93.9%가 구비된 책이 매우 빈약하고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이용자중 81.8%는 도서관의 이용이 까다롭고 부자유스러웠다고 답변했다.

도서를 외부에서 반입받는 경우 응답자 2백30명중 58.7%인 1백35명이 ‘반입이 불허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

며, 잡지의 경우 51.3%가 내용이 ‘삭 제되어 들어왔다’고 답변했다.

박찬운 변호사는 이번 법무부 조치에 대해 “일부 극소수의 부정물품반입의 책임을 모든 재소자에게 묻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재소자의 독서권과 가족의 선택권을 교도소가 자신들의 편의(검열과정 삭제)를 위해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안당국 다시 기지개

단국대·인제대생 대거 연행

한동안 잠잠하던 공안당국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2일 새벽 단국대학교 천안교정에 투입된 경찰력은 학교 안에 있던 문기호(경상대 학생회장) 씨등 3명을 연행했다. 또 총여학생회장인 정윤이 씨가 2일 아침 집에서 연행됐으며, 96년 인문대 학생회 간부를 지낸 김동관 씨도 비슷한 시각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자 가운데 김선봉 씨는 지난해 9월 자주대오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올 1월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며, 이철희 씨는 96년 연세대 사태로 구속돼 3·13 특사로 석방됐다.

이날 단국대생들을 연행한 곳은 천안보안수사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북무증인 부산 인제대생 8명이 지난달 말 일제히 연행돼, 조직사건이 잇따르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

제3회 인권영화제: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 때: 오늘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곳: 기독교회관 2층 강당(종로5가역에서 2분 거리)
- 내용: 상영작 소개 및 하이라이트 상영/ 영화제 부대행사 소개 등

“사실왜곡, 언론자유 아니다”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

“언론의 자유란 진실의 발견을 위한 것이지 사실을 왜곡 시킬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최장집 교수의 현대사 연구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 :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방정배 한국언론학회장 등 참석자들은 “〈조선일보〉는 비뚤게 해석된 ‘언론의 자유’를 빌미로 학자·지식인이 누려야 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사상·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턱없는 이념적 폭력을 자행하는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조선일보는 이제 안보상업주의의 대명사”라며 “이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 아니라 안보를 빙자한 여론몰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생산하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선일보는 기사를 쓰는데 있어서도, “안보상업주의의 표적이 등장하면 사실확인 절차는 생략한 채 짜깁기를 일삼는 등 ‘작문’에 능통하다”며 김 교수는 성해림 맹명설 오보, 김일성 사망설 오보,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 오보 등을 ‘작문 쓰기’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참석자들 모두 “조선일보의 ‘안보상업주의’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가운데, 방정배 회장은 “조선일보의 논리가 국민들에게 여전히 먹혀드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사상적 원시주의’ 덫”이라며 이를 계기로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형완 참여연대 연대사업국장은 “조선일보가 억지 주장을 하면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개혁이 미진한데도 책임이 있다”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장집 교수에 대한 사상검증 논란’이 김대중 정부에게 개혁을 지연시키는 알리바이로 작용해선 안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조선일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성명서를 통해 “최장집 교수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비뚤어진 언론관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아 온 것에 대해 역사 앞에 참회하라”고 조선일보에 촉구했다. 또 참석자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선일보사의 모든 간행물에 대한 불매운동과 더불어 언론개혁촉구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시평〉 필자 사정으로 쉽니다
〈공판안내〉는 내일자에

주/간/인/권/호/틈

(98년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10월 26일 (월)

김홍신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백신제조회사가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행성출혈열 백신 임상실험을 벌였으며, 기임여성까지 임상실험을 했다”고 주장/전국 11개 교육대학, “교육부의 수습교사제 도입은 교권침해 행위”라며 반대운동 벌이기로/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김명호 씨, 조사과정에서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받았다고 밝혀

◆ 10월 27일 (화)

최장집 교수에 대한 월간조선 사상공세와 관련, 민교협·학단협 등 조직적 대응 나서/한국대인지로대책회의, 백령도에 대한 대인자치 실태조사 결과, 지난 74년 이래 대인자치 피해자가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나/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개최

◆ 10월 28일 (수)

고문기자 이근안 공소시효 15년 연장/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공위성 발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재일동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심사 진행/육군본부, 비무장지대 내 대인자치지대가 여의도 면적의 334배에 이르는 2억9천7백60평이라고 밝혀/국회 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인권과 정책방향’ 심포지엄 개최/부산지역 인권·사회단체,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운동 위한 부산지역 연대기구 구성기로/인하대생, 학부제 시행 유보 및 학생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 점거농성 들어가/한국여성민우회, ‘결혼임신퇴직제가 부활하는 등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더욱 강화됐다’고 밝혀

◆ 10월 29일 (목)

김대중 대통령, “불법감청과 고문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백인 통치시절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보고서 공개/준법서약제 철회를 요구하는 ‘명동성당 농성단’, 양심수 쳐우 개선 요구하며 3일간 단식농성 돌입/수원 권리구지구 재개발지역, 철거용역 직원들이 강제철거 시도하다 주민들과 마찰 빚어

◆ 10월 30일 (금)

규제개혁위원회, 영화·비디오 완전등급제 도입하고 방송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기로/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 학교 안에서의 집단괴롭힘(이지메)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과 감독관청(서울시)에게 1억5천여만원 손해배상 명령/해외 학자 22명, 〈월간조선〉 보도와 관련 “조선일보의 쳐시는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의왕시 오전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용역회사 직원들, 잠들어 있는 주민 끌어내고 철거/주거연합 회원 5백여 명,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시민대회’ 개최/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진웅 부장판사), 진보민중청년연합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에 전원 유죄 선고

◆ 10월 31일 (토)

노사정위원회, 교원노조특별법 제정 합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1월 4일(수)

제 124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 ~ 10일 개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제3회 인권영화제가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동국대학교 화술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서준식)는 3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3회 인권영화제의 일정과 상영작품을 공개했다.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예년보다 많은 1백50여 편의 작품을 심사해 〈챌레전트〉(아엔데 정권이 피노체트에 의해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등 35편의 상영작을 선정했으며, 이외 6편의 작품을 더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도전하는 민중들’이라는 주제 아래 특별기획전이 마련되며, 부대행사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세계인권선언 및 상영작에 대한 퀴즈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제3회 인권영화제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정숙)가 주최하고 인권운동시랑방, 동국대 총학생회가 주관을 맡는다.

서울에서 시작되는 인권영화제는 이후 전국의 10여 개 주요도시에서 순회 개최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안양, 원주, 수원, 전주, 제주가 개최지로 확정됐다.

무료 상영, 검열 거부

제3회 인권영화제에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당국의 탄압이 올해에도 반복될까 하는 점이다. 인권영화제는 시대착오적 검열을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 까닭으로 지난 2년간 순탄치 못한 길을 걸어왔다.

96년 11월 2일부터 7일간 이화여대에서 진행됐던 제1회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 아래 사전심의를 거부한 최초의 대중 영화제로 서울에서만 연인원 1만5천 명이 관람하는 성황을 이뤘다. 그러나 당시 상영장소였던 이화여대측에 교육부와 공안당국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개·폐막 행사가 취소되는 등 곤질이 없지 않았다.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도 당국의 집요한 방해와 탄압으로 얼룩진 가운데 문의: 인권영화제 사무국 (741-2407)

결국 집행위원장(서준식)이 구속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최종 상영장소로 확정된 홍익대학교에서는 경찰병력의 봉쇄와 학교당국의 단전조치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7일간 ‘게릴라식’ 상영이 이어지기도 했다.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서준식 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예정되는 등 제2회 인권영화제에 가해졌던 탄압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당국의 탄압 되풀이될까?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준식 집행위원장은 “인권의 향상을 위해선 때로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전심의 거부와 같은 노력이 조금씩 쌓여 표현의 자유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영화제 집행위원인 조광희 변호사도 “당국에서는 인권영화제가 불법영화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현법정신에 맞는 영화제를 개최하려는 것”이라며 “현법에 위해되는 하위법을 근거로 영화제를 탄압하는 당국의 행위야말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가 제3회 인권영화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인권영화제!

여러분의 후원 속에 만들어집니다.

개인은 1인당 1구좌(1만원) 이상
단체는 1구좌(5만원) 이상

〈인권영화제 후원계좌〉

국민은행 822-21-0276-824

농협 033-02-119388

제일은행 110-20-342272

(예금주: 서준식)

근거 없는 '재범 우려'

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

사회보호법에 근거한 보호감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했던 조 세형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조 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 감호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본지 참조 8월 1일자).

형사 3부(이창구 부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론을 맡은 엄상익 변호사는 "15년 전 일을 둘째 '재범 우려가 있기에 조 씨에게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은 독단"이라며, "혹독한 15년간의 독거 생활을 통해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조 씨가 이전 자유로운 몸으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담안선교회의 임석근 목사는 종인 신문 과정에서 조 씨가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조 씨가 풀려난다면 책임지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목사는 호주 교민회, 미국 교민회, 국내 정수기 사업가 등 조 씨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교도소 안에서 익힌 기술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조 씨가 간생의 노력을 계울리 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려 했다. 이에 조 씨는 "지난 15년간의 엄정 독거 생활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질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2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특별법 제정' 국회 앞 농성

유가협, 제13차 총회 개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3일 기독교회관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유가협은 이날 총회에서 "민족민주유가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4일 오후 2시부터 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유가협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서울역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9월 15일에는 국회에 법 제정을 청원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가협의 이번 농성은 정부와

여당에 특별법 제정이 올해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유가협 회장으로는 배은심(이한열 열사 어머니) 씨가 유임되었다.

통일운동단체에 또 이적혐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9명 체포

최근 단국대, 인제대생이 대거 공안당국에 연행된 데 이어, 3일 오전 진

<공청회>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

민간단체의 힘으로 법무부의 '인권법'(안)의 핵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인권위원회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대) - '인권위원회법'(안) 발표
- 토론: 곽무근 검사(법무부 인권과장),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과), 차지훈 변호사(민변), 최창행 박사(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전문위원)
- 때: 1998년 11월 6일 (금) 오후 2시 - 5시
- 곳: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덕수궁 옆)
- 주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 문의: 배경내 · 최은아 (Tel : 741-5363)

보적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9명이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사건이 발생했다.

연행자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와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 등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디스크,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관련 서류 및 자료집과 청년회 회원 명단 등을 압수해 갔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는 87년 구성된 이후, 10여 년간 통일운동 사업을 주요 활동으로 해왔으나 이적단체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홍제동 대공분실 측은 수사상의 이유로 이날 가족의 면회를 불허하고 4일부터 가족의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연행자 명단: 전상봉(서청협 의장), 함대웅(회장), 강효식(사무국장), 홍길표(전 회장), 이수정, 이수경, 서효정, 흥혜린, 정용기

.....주요 공판 안내

▶ 11월 4일 (수)

·조은호(국보법 친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11월 5일 (목)

·김영곤 외2(국보법, 전노운법) 오후 4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속행

▶ 11월 6일 (금)

·문규현(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합의22부, 속행

·강재우(강희남 목사) 외3(국보법) 오후 4시, 서울지법 311호, 합의22부, 속행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1월 5일(목)

제 124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제정

차별배제 · 결사의 자유 · 노동권 등 천명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한 '인권선언'을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선언은 특히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학생인권선언' 발표에 앞서, 선언의 주체인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끈다.

하이텔과 나우누리에서 활동중인 컴퓨터통신모임 '중고등학생복지회'(학복회)는 학생의 날인 11월 3일 0시를 기해 '학생인권선언서'를 발표했다. 학복회는 "새 정부가 교육환경의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학교교육의 진정한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되어 왔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식 개혁과 실질적인 권리신장을 목표로 선언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선언서는 △나이 · 성별 · 성적 등에 의한 차별 거부 △신체적 · 정신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표현 · 행동 · 결사의 자유 △쾌적한 환경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매체 접근과 문화활동의 자유 △원치 않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차별 문제에 성적을 포함시킨 점 △자체 활동과 표현 · 결사의 자유를 분명히 한 점 △가출학생이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노동현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문제들을 명확히 포함한 것은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2조에서 '학교, 가정, 국가를 비롯한 사회는 위 권리들을 보장하며

에서 공식입장을 표명한 사람을 색출해 징계하고 선언이나 집회에 참석하는 학생은 적발해 정학조치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컴퓨터통신상에는 "교육부에서 학교측으로 '학생의 날에 불온문서의 유포를 주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데 그럼 학생인권선언이 불온문서나"고 비난하는 글 등이 게재됐으며, 한 학생은 통신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의 날'을 맞이해 불온문서를 배포하는 불순한 무리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며 "학생인권선언문을 봤어서 배포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밝혔다.

학생의 날에 관련한 교육부의 '불온 문서에 관한 공문'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정보부 사람들이 와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은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낸 적은 없으며, 혹시 있다해도 각 지역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화 사랑방

여동수



전경·해군 의문사 잇따라

당국 “자살” 주장…유족 “의혹” 제기

최근 들어 군인 의문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803 전투경찰대 소속 이태경 이경(한신대 휴학)이 양천경찰서 내 숙소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 씨가 단순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유족들은 이 씨에게 자살할 이유가 특별히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인에 의혹을 품고 있다.

전투경찰대측은 이 씨가 사망 직전 입대동기인 김 아무개 이경에게 “사람이 죽으면 중대장이 피해를 보느냐”는 말을 했고, 고참병에게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며, 평소 잠을 못 이루는 등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왔다는 정황을 내세워 이 씨가 가정 내 문제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들은 스동기생 김 이경이 “태경이는 평소 잠을 일찍 자는 편이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사고 당일 한 전경이 ‘너무나 불쌍하다.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한 사실 등을 내세워 단순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족들은 “태경이의 사인이 불분명했던 사망 직후부터 전경대측이 이미 ‘자살’로 단정하고 나섰다”며 “단순자살로 결론을 내린 뒤, 이를 짜맞추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이 씨의 사인과 관련, 유족들 역시 타살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설명하는 자살의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명확한 원인규명을 요구중이다. 특히 이 씨가 전입은 지 2주일도 안돼는 신명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부대 내 기혹행위가 있었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족들은 장례를 미룬 채 이 씨의 시신을 목동 이대병원에 안치하고 있으며,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천경찰서와 전투경찰대측은 유족들에게 장례부터 치를 것을 요구중이다.

한편, 지난 9월 27일에는 경북 김천에서 부대로 복귀하던 해군 소속 나진영 이병(김천대 휴학)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나 씨는 4박5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도중 동료들과 헤어진 뒤,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당국은 ‘나 이병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유족들은 △13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자체에 코피자국과 오른쪽 다리 골절상만 있는 점 △시신에 온통 흙이 묻어 있던 점 △사고장소에서 안경이 발견되지 않은 점 △지갑 안의 현금과 현금카드가 분실된 점 등을 들어 타살의 의혹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나 씨는 해군에 자원 입대한 뒤 군 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었으나, 자대로 배치된 뒤 심한 구타를 당하면서 군생활을 무척 힘들어 했다고 한다. 휴가 기간 동안 병원진료를 받은 나 씨는 청주 두 곳에서 장애가 발견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구타에 의한 장애라고 주장하고 있다. 4일 현재 38일째 장례를 미루고 있는 유족들은 나진영 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촉구하고 있다.

유가협 국회앞 농성 돌입 “올해 안 특별법 제정” 촉구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이 4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2시 유가협 회원 30여 명은 여의도 국회의당 앞에서 국회 앞 철야농성 돌입식을 갖고,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어찌한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엔 특별법 제정을 이뤄 개의원으로 해 국회에 청원했다.

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철야농성이라는 강도높은 투쟁을 선택한 데는 올해마저 넘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달 20일 김대중 대통령이 유가협 회장단 및 ‘열사범주위’의 장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에 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아직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가족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유가협 회장 배은심(고 이한열 씨 어머니) 씨는 “집권당인 국민회의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며 “민주화 과정에서 죽어간 많은 이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받기 전까지는 여의도를 떠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간 아들보다 더 오래동안 싸우고 있는 분’이라 소개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씨는 “우리 자식들을 죽인 장본인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 일이 더딜 수밖에 없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현 부대는 과감히 청산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당부했다.

전국연합 노수회 공동의장 또한 연대사를 통해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을 법사위에 조속히 상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유가협은 농성돌입식을 마친 후, 국회의당 앞에 천막을 치고 특별법 제정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유가협은 당초 한나라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함께 따라 농성장을 국민회의 당사 앞으로 옮겼다.

유가협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38일 동안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8월 3일에는 이길재, 이미경, 조세형 의원 등 국회의원 65명을 포함해 32개 사회단체가 모여 ‘열사범주위’를 결성했고, 9월 15일에는 5만2천8백98명의 국민 서명을 첨부한 특별법 초안을 국회의원 58명을 소개의원으로 해 국회에 청원했다.

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철야농성이라는 강도높은 투쟁을 선택한 데는 올해마저 넘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달 20일 김대중 대통령이 유가협 회장단 및 ‘열사범주위’의 장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에 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아직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가족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경찰청이 5일 일선 경찰에 “무분별한 검문을 지양하고 검문자는 반드시 소속·성명 및 검문 목적을 고지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청은 또 “의심나는 소지품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제시토록 해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특히 여성의 경우 위암적 표현이나 몸싸움 등 신체접촉을 피하도록 했다”며 “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올해 들어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피해 소송이 잇따른 데다, 불법 검문에 대한 언론의 눈초리 역시 따가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5일 법원은 불법검문 및 강제연행·구금과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학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며(본지 10월 22일자 참조), 최근 동아일보와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경찰의 불법 검문 관행을 비판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11월 4일자 ‘마구잡이 검문에 죄기’라는 사설에서 “경찰의 마구

〈알림과 정정〉

• 오늘(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문규현 신부와 강희남 목사의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 5일자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기사 가운데, 문 아무개 양이 “선언 제정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징계위 험이 가해졌다”고 주장한 것은 윤씨가 제3자의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임을 밝힙니다.

1998년 11월 6일(금)

제 12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천질검문’을 강조하기도 했으나, 그후로도 불법 검문의 관행은 전혀 시정되지 않아 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날 경찰청의 지시와 관련, “경찰은 형식적인 지시나 공문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하지 말고,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일선 경찰과 전경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교육 △불법 검문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와 분석에 따른 시정조치 △불법 검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경찰,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 9명 가운데 6명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전상봉(서청협 의장), 한대웅(민애청 회장), 강효식(민애청 사무국장) 씨에게 영장이 발부됐으며, 나머지 6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대거 기각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민애청에 대한 공안당국의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민애청 회원들을 연행한 홍제동 대공분실은 이를간의 조사과정에서 민애청이 발행한 문서들에 대해 집중적인 심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문서는 민애청의 격월간 소식지 「조선까지」와 총회자료집, 신입회원 교육자료집 등이다.

■ 2면으로 이어짐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할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치소 내 신문 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미결수의 '알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 등이 침해되는 현실을 의연한 결정이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 씨는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인권하루소식>의 구독을 신청했으나 금지당했다. 또 구치소 측은 서 씨가 구독 중이던 한겨레신문 및 문화일보에 대해 서 씨와 관련된 기사를 수시로 삭제한 채 구속하게 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구치소 측의 처분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알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미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권리 이상을 과잉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인권하루소식> 구독 불허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여부 심사 자체를 각하였다. 다만 신문의 일부 기사 삭제처분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사전 권리구제절차가 마땅치 않고 청구인이 구금자로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어 절차 이행의 기대 가능성을 찾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됐지만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일부 기사 삭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의 침해 문제와 관련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일단 위헌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정했다. 하

사 삭제가 불가피하다면 삭제의 범위에 관한 헌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애청> 1면에서

특히 8차 총회자료집 등에 실렸던 '민애청 제일주의'에 대해 경찰은 "북한의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혁명)을 동조하는 주장이 아니냐"고 추궁하는 등 북한과의 연계·주종 협의를 집중 심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홍길표 씨는 "자주·민주·통일과 연방제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을 추종한 것이라고 추궁당하는 등 일반 공안사건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심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결국 여타의 이적단체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안당국은 민애청의 대외활동보다 여러 문건에 실린 주장과 토론 등을 문제삼아 이적단체 혐의를 써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애청은 통일문제에 대해 범민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서 있을 뿐, 대외적으로 특별한 활동을 해 온 단체는 아니었다. 87년 당시 비관적지지(김대중 씨 지지)과 청년들의 모임을 모태로 만들어진 민애청은 90년 이후 노래모임, 글모임, 역사기행, 통일모임 등 소모임 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범민족대회 참가 외엔 특별한 대외활동을 벌이지 않았다. 민애청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입장으로 체택하기도 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김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비판적 입장은 취해온 바 있다.

재소자 '알 권리' 등 외연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교도행정상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신문 기사 삭제의 범위를 구치소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인권하루소식> 구독 불허에 관한 결정 역시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안이었다"며 각하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또 일부 기사 삭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기사 삭제를 구치소의 판단에 그냥 맡김으로써 알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며 "만약 교도소 행정 상의 문제로 일부 신문 기

<공청회>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

- 때: 11월 6일 (금) 오후 2시 - 5시
- 곳: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 (여수궁 옆)
- 발제: 곽노현 교수 (방송대 법대) - '인권위원회법' (안) 발표
- 토론: 과무근 검사, 김승환 교수 (전북대 법대), 심영희 교수 (한양대 사회학과), 차지훈 변호사, 최창행 박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 주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1월 7일(토)

제 1245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IMF 체제 아래 흠티스(무주택자)가 급증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파괴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주거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주거기본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6일 한국도시연구소(소장 하성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빙민사목위원회(위원장 이기우)가 주최한 'IMF시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제토론회'에서는 민간단체가 추진중인 주거기본법 시안이 공개됐다.

정태용 법제처 법제관이 소개한 주거기본법 시안은 '주거권'이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국민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제2조)는 조항을 둘 것으로 써 선언적 의미에서나마 주거권 보장을 정책적 이념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또 제11조와 12조에서는 임차인과 철거민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정태용 법제관은 "이 법안은 주거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구체적인 실제규정을 두지는 않았다"며 "실체적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구성할 경우 현재의 주거관련법을 망라하는 새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등 민간단체가 추진하기엔 적합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교식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국장은 "정부가 주거기본법 제정에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법이 되기 위해 철거민과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빠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계주거연합의 키르티 샤야 총재와 '철거 및 주거권'

삶 자체를 지켜주는 것을 말한다"며 "한국에서 주거기본법의 제정은 주거권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키 변호사는 또 "한국의 경우 IMF가 결과적으로 흠티스를 양산하고 주거권에 위배되는 금융 및 재정 정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이 주거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한 제25조) 아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66년)과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년), '개발에 있어 권리에 관한 선언'(86년)에 이르기까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특히 93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강제퇴거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IMF 1년, 고통받는 민중 결집

'98 민중대회 8월 여의도에서 개최

IMF 체제 1년 '고개 숙인' 민중들이 일어난다.

민주노총, 전농, 빙민연대, 민교협 등 60개 사회단체는 오는 8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98 민중대회를 갖는다.

박석운 민중대회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올해의 IMF 한파는 노동자 뿐 아니라 농민, 빙민 등 민중 모두를 고통에 몰아넣었다. IMF 1년 째,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 째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민중대회는 고통받는 모든 민중들이 한데 모여 올바른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됐다"며 '98 민중대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회위원회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2천7백명의 각계 인사들이 대회위원으로

참여했고, 본대회 참가인원도 10만 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밝혔다.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함께 하는 만큼 행사도 다채롭다. 7일 밤 보라매공원에서의 노동자 전야제를 시작으로 8일 오전엔 보라매공원부터 여의도까지 평화행진이 진행된다. 이어 전국연합은 전경련 앞에서, 철거민·노점상·빙민

조직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제7차 실업자 대회가 국회의당 앞에서 열린다. 이러한 민중대회장의 소식과 연설내용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과 전세계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http://www.jinbo.net>).

한편 민중대회 공동대회위원장들은 각 정당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민중 10대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가 6일 오후 2시 성공회대성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민간차원에서 준비해온 '인권위원회법'(안)을 발표했다.

공추위가 법안의 명칭을 인권법이 아닌 인권위원회법으로 한 것은 "인권의 내용을 법으로 열거해 규정할 경우 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냥고, 이후 변화하는 인권개념의 형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추위가 발표한 인권위원회법은 우선 인권위원회의 관할사항에 있어 법무부 안과 구별된다. 공추위는 "법무부 안이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구분함으로써 차별행위가 인권침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인권위원회는 모든 인권문제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원회법은 법무부 안과 달리 △사상 △성적지향 △병력 △행형기록 등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킴으로, 정치적 신념이나 사면·복권의 기록,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등에 의한 차별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추위의 인권위원회법은 또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둔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인권위원회는 국회 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과정에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인권위원회 권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추위

의 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회에 출석요구·자료제출요구·현지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조사권 보장을 위해 △자료제출 불응시 압수·수색 △출석요구 불응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 인권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개인이나 시직시설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원회의 의결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유엔권고는 독립성 강조 의미
이같은 공추위의 인권위원회법이 발표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무부측과 민간단체 간의 논쟁이 계속됐다.

법무부 괴무근 인권과장은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이전과 달리 "이사회를 두지 않는 법인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소 변화된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법무부의 인권법안을 놓고 국내외의 비판이 계속된데다, 5일 김대중 대통령이 "유엔권고안에 따라 시민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권고안(파리원칙)에 대해 차지훈 변호사는 "인권기구에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은 인권위에 독립성을 보

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꼭 법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법무부의 '이 사회 없는 법인' 안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없다고 해도 감독기관의 구속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므로 독립성 보장은 불가능하다"며 법무부가 법인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월간조선』 편집장 고발

영남위 피의사실 유포 혐의

6일 '영남위원회' 사건 부산·울산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우종창 「월간조선」 차장대우, 이현만 부산경찰청장, 김호진 보안과장, K 상무(성명불상), 등 5명을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공판을 통해 진실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주장이 진실인 양 보도해 공안 분위기를 확산시킨 「월간조선」과 피의사실을 사전에 유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선 수사관들이 위법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 분노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월간조선」은 지난 9월호에서 경찰의 주장과 수사기록만을 인용하며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비난을 샀다(본지 9월 1일자 참조).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 없다" 판단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던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관련자 이의철 씨가 6일 항소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박송하, 문강배,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이름으로 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1심 이후 이 씨의 태도에 뉘우치는 기색도 찾을 수 없다"며 이 씨에 대해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행사와 동정

- <강연>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박찬운 변호사)
 - 때: 11월 7일(토) 오후 1시(2시간) · 곳: 인권운동사랑방
- 예비다 문제해결과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 인권회복을 위한 행진대회
 - 때: 11월 7일(토) 오후 2시 · 곳: 서울역-명동성당
- 영남위 사건 불법도청과 통신비밀법 개정에 대한 사회단체 기자회견
 - 때: 11월 9일(월) 오전 10시 · 곳: 참여연대 2층 회의실
- 98 노동미디어주간 - '대안미디어와 현장네트워크의 길찾기'
 - 때: 11월 8일(일)-15일(일) · 곳: 대학로 서울대 연건캠퍼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향 밝혀

"감청·도청 보호법이 아닌 진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원한다."

최근 불법감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감정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법감청이 과연 근절될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9일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모임과 「부산울산지역 공안조작사건 전국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통신비밀보호법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려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감청에 대한 엄격한 제한조치와 감청을 당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제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사관의 주의에 의한 인권유린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구체적이고 엄격한 법개정을 강조했다.

최근 국민회의가 내놓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긴급감청 허용시간의 축소 △긴급감청에 들어간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청구할 것 △감청대상 범죄의 제한 △불법감청 및 도청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을 침해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겠다면서도, 감청영장의 발부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1998년 11월 10일(화)

제 12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간의 도청이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드러나는 것보다 도청·감청의 남용은 훨씬 심각하고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며 "현재도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경각심을 환기 시켰다.

민중대회, 곤봉·방패 세례 해산중인 시민·대학생 연행

8일 98민중대회와 거리행진을 마치고 돌아가던 시민들에게 경찰의 방패와 곤봉이 날아들었다.

이날 저녁 6시 30분 경 경찰은 영등포역 앞에서 해산중이던 시민과 대학생 14명을 연행했으며, 연행을 막던 시민들을 곤봉과 방패로 진압해 박찬종(청년진보당 부산진구 지구당 위원장) 씨 등이 부상을 입었다.

박찬종 위원장은 방패로 눈자위를 찍으면서 안경이 깨져, 오른쪽 눈 위부분이 10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박세증(청년진보당 서대문구 지구당 사무장) 씨는 곤봉에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8·15 출소자 16명 준법서약제 철폐 촉구

지난 8·15특사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풀려난 출소자 16명이 9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서약제 철폐 및 양심수의 조건없는 석방" 등을 촉구했다.

지난 9월 김태완 씨와 정선 씨가 준법서약제 철폐를 요구하며 명동농성에 들어간 이후, 8·15 출소자들이 집단적으로 준법서약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불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김용원 사형! 도예종 사형! 서도원 사형!...사형!...
'이따위 법이 어딨노!' '생 사람을 잡아!' '나라와 거래를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다!'... (이기형 시인의 시 가운데)

75년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 사상 암흑의 날'
로 규정했다. 바로 전날(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판
결을 받은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 8명에 대해 불과 15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형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최대의 인권유린, 사법살인 사건으로 재조명되고 있
다. 9일 서울 명동 가톨릭센터에 모인 유가족과 각계 인사
1백여 명은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
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돈명 변호사, 문정현 신부)를 발족
시키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혁당 사건이 처음 발표된 것은 64년. 반정부시위를 잠
재우려던 정권에 의해 1차 인혁당 사건이 만들어졌다. 그
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조작사실이 밝혀지면서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후 10
년이 지난 74년, 정부는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발표했
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시위 움직임
을 이른바 '민정학련' 사건으로 뛰었고 그 배후가 '인혁당'이
라며 모두 23명을 구속했다. 내란에비 음모 및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은 1심을 시작으로 10개월만에 대법
원 확정판결이 내려졌으며,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는 공판도중 긴급
조치 위반죄로 구속되었으며, 2심 재판 때엔 피고인과 변
호인의 진술권마저 박탈되는 사법폭력이 자행되기도 했다.

유가족들이 겪었던 고초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수병 씨
의 부인은 어느 날 7살짜리 아들이 목에 새끼줄을 매고 나
무에 끝인 채 '빨갱이 자식이니 총살한다'는 놀림을 받는
것을 목격했으며, 김용원 씨의 부인은 어린 자식들과 함께
일가족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인혁당 신부'로 불리는 문정현 신부는 인혁당 사건 진상
규명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죽은 이들은 아직 두 눈을
부릅뜨고 절규하고 있다.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에 승복
하여 모두가 살아나야 한다. 현대사의 한복판에 있는 인혁
당 사건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주요 공판 안내

▶ 11월 11일 (수)

·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신건

▶ 11월 12일 (목)

· 오치근(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건

▶ 11월 13일 (금)

· 홍성철(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속행

· 김향로(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주/간/인/권/흐/름 (98년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 11월 2일 (월)

국민회의,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 시헌을 현
행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표/대구, 강릉, 청송 교도
소, 청송 1·2 감호소 등, 체과 옷 등 소포 반입 금지·
재소자들에게 영치금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11월 3일 (화)

한국통신, 총파업참여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 6백여
명 정직·경직/국민승리21, '조선일보의 사상공세'에 대
해 사과를 요구하며 조선일보사 앞에서 규탄집회 열어/
법무부 등 5개 부처, 긴급감청 남용 방지 법 개정키로/
현법재판소, 서준식 씨가 "구치소 내 신문구독을 제한하
는 것은 위험"이라며 청구한 현법소원심판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기각 결정/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9명, 국
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중고등학생복지회, 학생인권선언
서 발표

◆ 11월 4일 (수)

국민회의, 여성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 산하에 '평등촉진위' 설치키로/유가협,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
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

◆ 11월 5일 (목)

김대중 대통령, 인권법을 '독립된 인권기구에 준사법
권한을 부여'도록 한 유엔 권고안에 따라 마련하라고 지
시/한국시민단체협의회, 최장집 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상검증 시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방용석 의원, "을
들어 9월말까지 직업병 환자는 1천7백3명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에 비해 16% 늘었다"고 밝혀/경찰청, 일선 경찰
에 "무분별한 검문을 지양하고 검문자는 반드시 소속·
성명 및 검문 목적을 고지토록 하라"는 지시 내려/구속
됐던 민애청 회원 9명 중 6명, 영장기각 풀려나

◆ 11월 6일 (금)

한국도시연구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민사목위원회,
민간단체가 추진 중인 주거기본법 시안 공개/「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 「인
권위원회법」(안) 발표/「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 가족, 〈
월간조선〉 편집장 등 5명을 피의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서울시, 98년 결핵관리실태 보고를 통해 "지난 9월
말 현재 결핵균 양성자가 2천71명 발생해 95년 아래 줄
어온 결핵 환자가 처음으로 늘었다"고 발표

◆ 11월 7일 (토)

정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현행 6개월로 된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

◆ 11월 8일 (일)

민주노총 등 60개 시민사회단체,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
에서 '98민중대회 열고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요구/서울
지법 판사,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건 알리지 않은 제
청구되는 구속영장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

인권 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이태곤(장애인우권의문제연구소 부설 월간『함께걸음』 편집부장)

정부는 최근 제2 전국운동의 하나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발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 인권(권리)
선언 제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되는
장애인 인권선언으로 우리 사회의 구
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을 재확인하고 이를 내외에 선언하기
로 했다는 것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나서 장
애인 인권선언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것은 장애인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현
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권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
고 이 평의 장애인들에게 진정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려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즉 정부가 나서 장
애인이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
고 당당하게 자기 삶의 주체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경제적인 지원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동정보다는 권리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긴 세월동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동등한 인격체라
기보다는 도와주어야 할 동정의 대상
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장애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로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이 동정의 대상으
로 전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그로인한 차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교육받을 권리에서도 차별
을 받고 있고 직업을 가질 권리에서도
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특히 삶의
수단인 직업을 가질 권리에서의 차별

은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묶어두
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차
별로 인해 장애인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곧 장애인이 경
쟁력도 빛지 못한 채 고용촉진법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말이 나온 김에 부연하자면 직업정책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정
책은 중증장애인 중 장애 등급 1급,

그것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장애
인에 한해 한 달 4만5천 원을 생계보
조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사실상 현재 정부의 중증장애인을 위
한 복지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닌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흔히
가까운 나라 일본의 장애인 정책과 비
교되고 있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중
증장애인에 대해 직업을 가지지 못한 장
애인들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삶을 보
장해주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자립생
활이 가능한 수준의 장애연금을 지급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와 달리 거리에서 구걸하는 장애
인을 찾아볼 수 없다. 일본도 장애인
을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
는 것은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지만 연
금 지급을 통한 최소한의 삶의 보장으
로 장애인이 극단적인 동정의 대상으
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주고 있다는 점
에서 일본의 장애인 정책을 높이 살
수 있다.

물론 일본 장애인들도 불만은 있어서
필자가 만난 일본의 한 장애인은 일본
정부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빌미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있
다고 일본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비판
했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현실에서 보
면 이런 일본 장애인들의 고민은 말
그대로 행복한 고민일 뿐이다.

장애인을 계속 동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한, 선언은 그저 선언적 의미에 그칠 뿐이다

최저생활의 보장부터

지금처럼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일본처럼 장애인
연금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비쳐
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장애인 인
권선언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
점에서 분명히 전제되어야 할 것은 장
애인이 지금처럼 동정의 대상으로 여
겨지고 있고 최저 생활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한 정부의 장애인 인권선언
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짙다
는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인권선언 제정을 계기
로 우선 중증장애인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복지정책 시행을 가시화
해야 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복지부 국감, 신임이사장 부적격 질책

양지마을(부랑인시설)이 국회 국정감사장 도마에 올랐다.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은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한 수용자의 탈출과 인권단체들의 현장조사를 통해 양지마을의 인권실상이 알려진 이후, 강제수용증이던 원생들이 대거 퇴소했지만 오랜 강제구금으로 생활기반이 파괴된 터라 퇴소자들은 혼자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차원의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퇴소자 가운데 일부가 다시 부랑인생활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빚어져 왔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퇴소자 대책부터 추궁했다. 정 의원은 "형식적인 감사로 수용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보건복지부가 사건이 터진 후엔 퇴소자에 대한 지원대책 하나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퇴소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10년 전부터 천성원(양지마을)이 속한 사회복지법인)과 관계가 있는 김병화 씨에게 이사장 승인을 내린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김병화 씨는 이사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김병화 씨에 대한 이사장 선임을 취소할 의지가 없느냐고 물었다.

노재중 전 이사장이 구속된 후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병화 씨는 지난 87년 성지원 사건으로 노 씨가 구속됐을 때도 1년 간 성지원을 맡아 대신 운영하며 노 씨의 뒤를 봐줬던 인물이다.

<국감스케치> 보건복지부

이성재 의원을 에바다로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이 에바다농아원의 이사장이 된다면?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에바다농아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이성재 의원을 이사장으로 전격 추대키로 한 것이다.

96년 재단의 강제노동 및 학대에 견디다 못한 원생들이 농성에 돌입함으로써 출발된 에바다 사태는 현 김선기 평택시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관선이사장 파견 △현 이사진 전원 승인 취소 △전문적 지식과 도덕을 갖춘 이사진으로의 개편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상황없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재단운영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할 혁실타 전 원장은 법원 사무실 2층에 기거하며 사실상 이사장 역할을 계속해 왔고, 후원금 통장에서 다달이 50만원 씩 죄 씨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김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1년 전 했던 이야기만을 되풀이하면서 "이사진을 당장 교체하겠냐"는 물음엔 미적거렸다. 이에 격분한 이성재 의원은 "나를 이사장 사켜주면 문제를 해결한 후 물려나겠다"고 밝혔고 동료 의원들이 합세해 김 시장에게 이 의원의 이사장 추대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자 김 시장은 "추진해 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고, 보건복지부 위원장은 이 의원을 이사장에 추대하는 것을 김 시장으로부터 확답받은 것으로 정리하며 증인 신문을 마쳤다.

1998년 11월 11일(수)

제 124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의 악몽'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서준식 씨 공판 재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9개월여 만인 10일 오후 2시 서부지원 형사3단독(안정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거목록이 변호인단에게 전달되지 않아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다.

이날 서 씨는 "구속 당시 압수된 물건 중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되지 않은 물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압수 물 가운데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해 재판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일 오전 11시.

'이적단체 조작' 이제 그만!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주사파 조직으로 부풀려 발표됐던 97년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형사항소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혁신대오 사건과 관련,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 단체 구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혁신대오 사건은 97년 6월 말 전북대를 비롯한 전주지역 대학생 30여 명이 전북도경 보안수사대와 기무사 등으로 무더기 연행된 뒤 발표된 사건이다.

당시 전북도경과 기무사는 엄성복(전 전북대 총학생회장) 씨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며 "이들이 지하혁명 전위조직으로 '혁신대오'라는 이적단체를 만든 뒤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혁명이론을 학습·전파시키켰으며, 96년 연세대시 위에 참가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하면서 사상학습과 통일촉진투쟁을 벌여온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언론도 경찰 발표를 인용해 "이들은 자신들이 조직한 '혁신대오'의 조직원을 학생회 후보로 내세워 당선시킨 뒤 학생회 운영을 뒤에서 조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후 군법재판에 회부된 양진건 씨 등 5명에게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엄성복 씨 등 11명은 1심 재판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였던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는 "혁신대오는 조직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본지 98년 3월 3일자 참조). 한편, 김진우 씨 등 같은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중이다.

지난 5월 13일 노래페 '천리마'가 항소심에서 이적단체 혐의를 벗은 것을 시작으로, 7월 1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동아대 간첩단 사건, 이번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이르기까지, 올 들어 공안당국의 이적단체 조작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영남위 사건, 재판 중단 사태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영남위 사건' 3차 공판에서 비공개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검찰은 현직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 △증인에 대한 신변 보호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얼마나 조작되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비공개재판은 증인이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채택하는 것"이라

며 "방청객이 폭력배들도 아닌데 신변 보호를 이유로 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 여부를 밝히려면 증인에 대한 공개적 심문이 필요하다"며 공개재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족대표 1명씩 6명을 입회시킨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비공개재판 요구를 수용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과 방청객들의 강력한 항의가 벌어지면서 결국 재판이 연기됐다.

'영남위 사건' 부산·울산공동대책위는 '2명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국가를 전복시킬 만큼 중요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서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비공개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얼마나 조작되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와 구속자들은 이번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이후의 모든 재판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장> 국회 앞 유가협 농성장

"의사봉을 두드릴 때까지"

며칠 전부터 국회 건너편 인도 위에는 비닐을 덮어쓴 허름한 천막이 깃발과 현수막을 펼리며 자리를 잡고 있다. 차기운 콘크리트 바닥에 스티로폼과 얇은 장판을 깔아둔 천막 안에는 대부분 50대 후반을 넘긴 '어르신' 20여 명이 간단한 취사도구를 갖추고 벌써 일주일째 기거하고 있다.

주변 건물에서 물과 화장실을 얻어 쓰면서 아침저녁으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당사 앞을 찾아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는 이들은 바로 억울하게 자식과 형제를 잊은 유가협 회원들이다.

이들은 올 정기국회에서 '의문사·열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며 삶을 에는 주위와 초로의 나이에도 아랑곳없이 농성을 진행중이다.

10일,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변함없이 피켓과 마이크를 들고 집회장으로 나섰다. 주위에 몸을 띠는 것도 잠시, 사회자의 구호가 시작되자 유가족들은 어느덧 추위도 잊은 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목청을 높였다.

누구나 내다보지 않는 불거진 한나라당 창문을 향해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던 어머니 회원들은 무심히 눈앞을 지나가는 젊은 직장인들을 바라보다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소리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곰은 손으로 연신 눈물을 닦던 한 어머니는 가슴에 묻은 자식의 기억에 고개를 떨구었지만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만은 멈추지 않았다.

한 시간 여의 집회를 마친 뒤 천막으로 돌아간 회원들은 언 몸을 채 녹이기도 전에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천막을 밝히기 위해 발전기를 돌리던 김학철 기획국장(추모단체연대회의)은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법 제정의 맘치가 울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농성하겠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대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국감에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본지 11월 11일자 참조). 보건복지부는 우선 사회복지법 인 천성원의 신임 이사장 김병화 씨의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김 씨가 지난 87년 성지원 사건 당시 노재증의 대리자로서 1년간 법인을 맡아 운영했던 것에 대해 “이사장으로 취임해 법인 운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퇴임한 바 있다”고 두둔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보건복지부, 책임 회피 급급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 실종된 지 오래다. 퇴소자 대책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양지마을에 강제 입소했다고 주장한 사람 및 퇴소를 원하는 사람은 즉각 퇴소 조치해 사후관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겨우 △노임을 받지 못한 퇴소자에 따른 시일 내 노임 정산 △종교단체에 양지마을 운영을 위탁해 퇴소자들 중 부랑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소를 적극 권유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는 “노재증과 그 가족들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국고유용분에 대해서는 국고환수조치하고 시설수용인과 퇴소자들에게 임금착복 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권단체의 목소리

만화 사랑방

이동수



1998년 11월 12일(목)

제 124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

전체 실업자의 약 70%가 아무런 생계보장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 이들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실업자의 약 70%가 노동능력이 있다거나 자산(주택 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조차 제외돼 생계파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입법 청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빈곤선’(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생계, 주거, 의료, 자녀교육)을 보장하도록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노재증 일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면으로 이어짐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반대하는 투쟁이 열달째 계속되고 있다.

국민건강권과 공공의료 확보 투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결핵병원 민간위탁 저지 운동’은 지난 2월 18일 정부조직 개편위원회(위원장 박관상)가 99년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발표한 이래, 11일로 2백68일째를 맞고 있다.

올해 초 정부조직개편위원회가 목포

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은 △정부기구와 인력의 축소 △병원운영의 재산성 증대라는 명분 아래서였다. 그러나 환자와 의료계는 “결핵사업의 특성상, △수의성을 추구하는 민간에 위탁될 경우 결핵관리사업의 축소와 치료소홀이 예상되고 △민간위탁시 진료비가 인상돼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민간위탁 방침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김용익 교수(서울대 의대)는 “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은 경제위기를 빌미삼아 보건의료부문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방침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결핵병원 환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민간위탁 저지운동’에는 각 대학 의대생과 보건의료계가 속속 등장했으며, 지난 6월 17일 병원 환자들의 상경을 계기로 각계를 아우르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위 등 주무관청과 국민회의, 한나라당 등 정치권을 접촉하며 민간위탁 방침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10월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 차례의 시위를 갖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침이 철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집행권을 겸 행정자치부가 “정부조직개편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위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무엇보다도 발견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1면에서 이어짐

또한 18세 미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생활보호법의 연령제한을 철폐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의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실업자들도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은 11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사회적 과제를 예방하고 앞으로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고시업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인권간행물

『다원건설(구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58쪽/5천원

철거용역업체의 대명사로 불려 온 다원건설(구 적준용역)의 철거폭력 실태가 한 권의 보고서로 묶여 나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4개 인권·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도시빈민들의 인권과 삶을 유린해온 한 철거용역회사의 얼굴을 공개한다. 90년 적준개발용역으로 출발한 다원건설은 94년 이후 재개발사업권을 거의 독점한 가운데 철거용역업체의 맹주로 군림해 왔다. 그러나, 그간은 성장의 이면에 잔인한 폭력과 솔씨좋은 철거폭력배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91년 양천구 신정동 철거폭력에서부터 98년 5월 서대문구 남기좌동 철거폭력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으며, 주거침입과 방화, 협박과 폭행에서부터 부녀자에 대한 성폭행에 이르는 인권유린의 실상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언제나 철거폭력의 현장을 수수방관하고 철거폭력배들의 처벌에 대해 관대했던 행정관청과 사법당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권력과 범죄집단 간의 공생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대책위 상임대표인 김승훈 신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백주대낮에 자행되는 불법적인 폭력에 대해 누군가는 ‘안돼!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야 한다”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폭력 앞에서 피눈물을 쏟는 악순환을 우리의 참여와 관심으로 막아내자”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에는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뿐 아니라 한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배어 있다.

• 구입문의: 천주교 인권위원회 (777-0643, 고상만 간사)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chollian.net · E-mail:rights@chollian.net/~rights

노숙자 1천8백명 쉼터 입소

“자유·희망없다” 입소 거부 상당수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노숙자들이 대거 ‘희망의 집’(노숙자 쉼터)으로 옮겨 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역 지하도를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에 최소 3백 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는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역, 용산, 영등포 등지의 노숙자들을 상대로 집중상담을 벌인 결과, 1천7백 68명이 ‘희망의 집’에 입소했으며 그 가운데 3백17명이 퇴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희망의 집’은 모두 90여 곳에 달한다. 노숙자 지원센터의 김성주 씨는 “현재 3백 명 가량의 노숙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희망의 집’에서 퇴소한 사람 가운데 직업을 구해 퇴소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음주로 인한 강제퇴소나 무단퇴소”라고 밝혔다.

노숙자 지원센터 등은 현재 남아 있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야간상담을 벌여 입소희망자를 가려내고 있지만, 노숙자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희망의 집’ 입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희망의 집’ 입소를 거부하는 까닭에 대해 노숙자들은 “자유가 없고 단체생활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숙자 씨는 “희망의 집에서는 술을 먹을 수도 없고,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잣은 마찰과 싸움이 벌어져 적응하기가 어렵다”며 “차라리 노숙을 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는 “노숙은 ‘벗’이 없으면 견디기 어렵다. 노가다 일당을 받으면 그것으로 일 못 나간 ‘벗’들과 나눠먹는다. 같이 술도 먹고

1998년 11월 13일(금)

제 124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리어카라도 끌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면으로 이어짐

“거듭된 소환, 생활 지장”

대공분실, 민애청 2차 재소환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석방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 6명이 계속된 경찰의 소환 요구로 일상복귀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으나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영장기각 결정으로 풀려났다(본지 11월 6일자 참조). ▶ 2면으로 이어짐

대구·경북, 인혁당 재조명 운동

“빼앗긴 추모비부터 찾자” 의견도

‘인민혁명당’ 사건의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한 노력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은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혐의의 이슬로 사라진 이들의 고향이기에 이곳 민주 인사들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11일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사무실에서는 「대구경북 민족민주 열사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열사대책위」 발족을 위한 연석회의가 이 지역 사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하루빨리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 달 30일 경 「대구경북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열사대책위」를 발족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연합의 이영기 씨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세칭 ‘인혁당’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건에 연루돼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회복을 포함과 동시에 당시 유신반대 투쟁에 앞장서 싸우셨던 열사들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인혁당’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은 전에도 간간이 이뤄졌으나 공안당국의 탄압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91년 경북대 내에 세워졌던 추모비는 해마다 경찰이 동원한 포크레인의 표적이 됐고 지난 96년 3백여 명의 경찰에 의해 결국 강제철거되고 말았다. 당시 공안당국은 “폭력혁명 등 이적행위로 처형된 관련자의 추모비를 세우고 추모행사를 갖는 것은 실정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댔다.

이와 관련, 현재 열사대책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본격화되는 이 때, 빼앗긴 추모비부터 되찾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회단체 도난사건 잇따라

“특수목적의 계획된 범죄” 추정

을 들어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사회단체 사무실에서 자료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계획범죄’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을 들어 3차례에 걸쳐 도난을 당했으며, 삼성 구조조정문제로 분주했던 지난 5월에는 회의자료와 디스켓뿐만 아니라 본부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까지 도난당했다. 경기도본부측은 “5대의 컴퓨터 중 본부장이 사용하는 컴퓨터만 들고 간 점과 다른 때와는 달리 책상을 뒤집어엎고 기물을 부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점을 살펴볼 때 아마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누군가와 우리의 정보를 원하는 사람의 핵작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본부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수원지부 역시 지난 10월말과 11월 8일 민중대회 때 등 2차례에 걸쳐 회의자료와 기타 다른 사업자료들을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부측은 “지난 10월말에 회의자료중 일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는데 민중대회 후 도난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본 결과 상당량의 자료들이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안산지구협의회는 이번 민중대회 기간 동안 을 1년치 회의자료철과 자료를 담은 디스켓 2개, 그리고 20만원 상당의 현금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안산지구협의회 사무처장 김동우 씨는 “일반 범죄라면 자료들을 가져갈 이유가 없으며,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 신고도 보류하고 있다”며 “그저 황당하고 폐렴할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경기남부연합 역시 지난 8일 민중대회 기간에 사무실에 있던 디스켓들과 사업관련 자료, 회의자료, 회비 10여 만원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연합측은 “지난 7월 26일 1박2일의 통일기행을 떠났을 때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번 민중대회 기간 동안 경기도내 다른 지역사무실들도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구속된 죄 씨를 제외한 연행자 13명 중 4명을 즉시에 넘긴 후 나머지는 훈방조치했다. 구속자 채길용 씨는 12일 오전 남부지청으로 송치됐다.

〈노숙자〉 1면에서

한편, 서울역의 노숙자들 가운데 ‘희망의 집’ 입소를 원하면서도 입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자 씨는 “몸도 안 좋고 주위도 심해져 희망의 집에 입소하고 싶지만 ‘입소원서’가 없다는 이유로 입소가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숙자 관련단체들은 지방상경자와 위장노숙자들을 구별해낸다는 이유로 입소원서를 발부한 바 있는데, 이를 분실한 노숙자들 또한 ‘증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입소가 안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노숙자 지원센터는 “야간상담의 경우, 입소원서가 없어도 희망자들을 입소시키고 있다”며 야간상담에 응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노숙자 지원센터의 김성주 씨는 “계속되는 상담을 통해 상당수가 희망의 집에 입소하고 있지만, 새로 유입되는 노숙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노숙자를 모두 없애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필요한 것은 노숙자들이 자활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애청〉 1면에서

홍제동 대공분실은 연행자들이 불구속으로 풀려나자 회원 6명을 다시 불러 민애청이 발행한 문서와 북한파의 연계·추종 혐의에 대한 재조사를 한바 있다.

민애청은 경찰의 계속된 소환에 대해 “그 동안 직장으로 전화를 해 ‘민애청 달려서를 보내라’고 강요했던 홍제동 대공분실이 아무런 근거나 혐의도 없이 2차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단지 괴롭히자는 의도”라며 “아마 지난번 재조사 때와 똑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일관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challian.net • E-mail:rights@challian.net/~rights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한 자치단체가 집없는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내보는 데 앞장서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 성북구청(구청장 진영호)은 지난달 정릉4지구 재개발지역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이 11월 2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의거 강제철거를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청은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재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공사지연으로 조합원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강제철거가 부득이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세입자들은 “동절기 강제철거는 집없는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보는 인권유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구청측이 재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있지만, 시공회사인 우성건설은 법정관리와 자금난 등으로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실정이어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조합이나 시공회사도 아닌 관할 관청에서 주민 몰아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 권리가 걸려 있는 조합이나 건설회사와는 달리 서민들을 보호해야 할 관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강제철거 운운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동호 주거연합 조직국장은 “성북구청이 재개발사업에 적극 나서는 목적은 주민들을 물갈이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원·강북구 등에 이어 성북구에서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내보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북구는 현재 또는 앞으로 모두 46개 구역에서 재개발을 시

행하게 되는데, 재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는 최소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 국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겐 나름의 공동체가 있고, 서로 일자리를 나누는 문화가 있다”며 “일방적인 재개발은 서민공동체를 모두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 2면으로

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부나

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혜정 씨 체포

13일 하루 동안 보안관찰 대상자 두 사람이 잇따라 연행됐다. 이에 따라 8·15특사 때 박상천 장관이 밝힌 대로 ‘보안관찰’ 강화 방침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저녁 수원 중부경찰서는 97년 9월 출소 후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김삼석(인권운동사랑방)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93년 남미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4년간 복역한 바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귀가시키라는 검찰의 구두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출소 이후 줄곧 “보안관찰법은 감시와 통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출소 신고를 거부해왔다. 앞서 오전 7시 30분엔 95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4일 만기 출소한 이혜정 씨가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씨를 체포한 용인경찰서 측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찰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1998년 11월 14일(토)

제 125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얼굴없는 감시자가 지켜본다

바코드·IC카드 이용 노동자 통제

13일 오후 6시 서울대 연관캠퍼스에서는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라는 주제로 진보네트워크 주최의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선 최근들어 사업장내에서 벌어지는 모니터링이 작업환경보다는 개별 노동자에게 집중됨으로써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 행위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진보네트워크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은 “각 사업장마다 노동자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기계적인 장치(컴퓨터, 전화, 영상·음향기술,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노동자 통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작업장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노조 전주지부 대의원 대표 서정원 씨는 “회사측이 바코드가 달린 명찰을 이용해 직원들의 지각, 조퇴, 외출, 출입시간 등의 공장출입 현황을 체크하는 등 명찰을 통제기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조합원들과 잣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자동차측은 바코드보다 한 단계 진보한 IC카드의 도입을 추진하려 노조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보류중이다. IC카드를 이용할 경우 출입기록뿐만 아니라 카드에 내장된 원격추적장치로 인해 등 건물내 이동사항도 모두 기록되게 된다. 즉 노동자가 카드를 가지고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센서를 지나치면 건물내의 각 지역에서 노동자가 머무는 시간과 위치가 기록된다. 결국 컴퓨터는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있는지, 작업지역에 있는지, 공중전화 옆에 있는지, 휴연장소에 있는지 등을 모두 기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이 아직 국내에서는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IC카드 사용을 일찍 시작한 외국에선 이미 일반화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그룹도 거의 모든 계열사 직원들에게 IC카드를 지급했으며 이 카드는 신분증과 열쇠를 겸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삼성직원들은 방을 나설 때마다 카드를 이용해야 해 근무시간 내의 자리이동 현황을 고스란히 기록당하고 있다.

이동 경로 속속들이 파악

노동환경이 열악하기로 유명한 한국타이어의 경우, 정문·탈의장·휴게실·기숙사·현장복도·1인화·기계·성형기 등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 출신의 한 노동자는 “회사측이 정문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를 통해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날날이 기록한 후 노동자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도 전 공정의 각 기계마다 작업시간과 불량제품 생산량, 기계 작동시간, 퇴근시간 등을 체크하는 전자장치를 설치해 노동자들의 모든 행동을 체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관리자에게 착히지 않기 위해 아예 휴식시간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형과의 경우 생산량을 늘리거나 착한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우나 LG 등의 대형증권사에서

는 전 지점에 모든 전화통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대우증권의 경우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녹음장치가 된 전화로 다시 받도록 하는 등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는 끝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1면에서 <강제철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데 대해 성북구청 담당 공무원은 “자진철거를 요구한 것은 동절기를 맞아 주민들의 안전을 염려해서였다”고 해명하며 “다음주 금요일경 사업시행자와 대책을 회의한 뒤, 강제철거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이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경우, 한 차례의 행정대집행 계고장(기한 20일)이 주민들에게 발송된다. 강제철거가 진행된다. 현재 정릉4동 주민 20세대가 연말연시 동안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정릉4동은 3년 전부터 재개발공사가 진행되어 왔으나, 올 4월 한달 동안 용역직원들이 상주하며 행패를 부린 것 외에는 별다른 마찰이 없었던 지역이다.

한편, 지난 7일 김대중 대통령은 김수환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 “재임기간 동안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통령은 또 배석한 비서에게 “이 약속을 각 구청장에게 알릴 것”을 지시하며, 철거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복지담당 비서와 협의하도록 조치했다.

행사와 동정

□ 진보네트워크센터 출범식 및 발기인 청립총회/ 한국노동네트워크 출범식

• 때 : 11월 14일(토) 오후 5시 • 곳 : 서울대 연관캠퍼스 보건대학원 1층

□ 제2회 서울 국제노동영화제

• 때 : 11월 15일(일) 까지 (오후 4시부터 10시)

• 곳 : 서울대 연관캠퍼스 보건대학원 4층 강당

□ 민에첨 투쟁기금마련 하루주점

• 때 : 11월 21일(토) 오후 1시~30분부터 • 곳 : 외국어대 학생식당

□ 열사명예회복·의문사진상규명·양심수문제해결·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인권대회

• 때 : 11월 21일(토) 오후 2시 • 곳 : 국민회의 담사앞

• 주최 : 유가협/ 추모단체연대회의/ 전국연합/ 조계사농성단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cholian.net) · E-mail:rights@cholian.net/~rights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최근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사상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듯하다.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깨뜨림으로써, 억울한 죄인의 발생을 막아야 할 사법부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 아무개 씨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사형과 무죄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파기 이유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은 반드시 직접 증거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가능하다"며 "간접증거가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은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으로,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80%의 유죄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거에 대해 단 30%의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무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취지인 것이다.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같은 취지 아래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인정한 것이었다.

'합리적 의심 여지' 인정 안해
피고인측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는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판단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검사측 주장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이번 사건에서 혐의 입증의 최대 장점인 피해자들의 사망시간과 관련, △피의자 이 씨는 오전 7시 이전에 출근을 했고 △살인범은 시체를 육조 안에 넣고 불을 질렀으며 △이 씨의 집에서 연기가 발견된 시간은 오전 8시 40-50분 경이라는 세 가지 사실을 볼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 변호인측의 주장이다. 김형태 변호사는 "불을 지른 지 1시간 40분만에 화염이 발견된 것은 피해자들이 살해된 시간이 이 씨가 출근한 뒤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인정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결함으로써 결국 피고측에게 무죄를 증명할 것을 요구한 결과가 됐다. 이는 각종 고문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반적 판결과는 상반된 결정이기도 하다. 흔히 고문사건

비공개 재판 논란

'영남위 사건' 공판 또 연기

14일 속개된 '영남위 사건' 공판에서 증인에 대한 비공개재판 문제가 재차 논란을 빚었다. 이날 검찰은 증인으로 신청된 대검수사본부 수사관들을 출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비공개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납득할만해야 한다"며 비공개재판을 반대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얼굴과 신분이 노출될 경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의 법정태도로 볼 때 검찰측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밝힌 한편, 증인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지금 인권영화제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세요

12월 5일-10일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후원 : 국민은행 822-21-0276-824, 농협 033-02-119388

제일은행 110-20-342272 (예금주 : 서준식)

1998년 11월 17일(화)

제 12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

일간(2면 발행)
인권하루소식(제 1251 호)

1998년 11월 17일 [2]

진보네트워크 둘러보기

(편집자주) '진보네트워크'가 사회운동 진영의 공동네트워크를 표방하며 14일 정식출범했다. 진보네트워크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와 이용방법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문의 : 774-4551).

- 진보네트워크가 다른 산업망과 다른 점은?

사회운동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정보가 쌓이고 자유로운 소통이 이뤄진다. 또 산업통신망은 국가권력의 견열과 통제에 무방비 상태인데 반해 진보네트워크는 독립네트워크로서 자유로운 의사교류, 토론의 활성화를 모색한다.

- 진보네트워크에 어떻게 들어가나?

• PC통신에 들어가는 두가지 방법 → ① 01410 또는 01411 접속 후, 약부호 입력창에 '참세상'이라고 입력 ② 텔넷(telnet)으로 'red.truenet.co.kr'

• 인터넷 주소는 → <http://www.jinbo.net>

- 유용한 PC통신 서비스 몇가지

- 신속한 사회운동 속보를 접할 수 있다. → go cool
- 사회단체들의 행사나 입장문을 알린다. → go note
- 특정 현안에 대한 토론실, 서명운동, 캠페인 공간을 운영한다. → go alert
- 국내외 사회운동에 관한 정보를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다. → go knigo

- 유용한 인터넷 서비스 몇가지

• 참세상 인터넷 뉴스

기존의 매체들이 소홀히 다루는 정보들이 오고가는 공간이다. '민중기자석'이 있어 일반 이용자들도 자발적으로 소식을 올릴 수 있다.

- 진보인덱스 서비스

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 주소를 각 영역별로 분류해 연결시켜 놓았다.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서 클릭만 하면 곧바로 관련 홈페이지에 도착할 수 있다.

- 메일링리스트 서비스

메일링리스트는 특정한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메일을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토론을 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원하는 사회단체에게는 메일링리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주요 공판 안내

▶ 11월 18일 (수)

- 조건수(집시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이의성(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신건

▶ 11월 19일 (목)

- 황윤미(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5단독, 선고

▶ 11월 20일 (금)

- 권정복(집시법) 오전 11시, 서울지법 525호, 10단독, 신건
- 조은호(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선고

주/간/인/권/호/름

(98년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 11월 9일 (월)

법무부, 책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도소에 대해 시정지시/법무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 공식적으로 밝혀/한석재 의원,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육군 당국이 '사병 구타 사망' 2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혀/법무부 국감자료, 국가보안법 실형선고율이 10%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나/인도네시아 학생들, 하비비 정부의 국민협의회 소집에 항의하는 시위 돌입/8·15 출소자 16명, 준법서약제 철폐 촉구/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서울 명동 카톨릭센터에서 발족하고 진상규명운동을 선언하고 나서

◆ 11월 10일 (화)

아시아태평양 NGO대표들, 아페 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페리룸푸르에서 10일부터 15일까지 경제위기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인권문제를 주제로 비정부기구 회의 열어/법무부 국감 자료, 지난 2년 동안 법무부와 일선검찰에 접수된 경찰, 안기부, 검찰 등 수사기관 직원들의 인권침해는 모두 7백47건이나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4건에 그쳤다고/정형근 의원,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대검찰청의 이적표현물 목록 재선정해야 한다고 지적/보건복지부와 관련 학계, '장애인 인권현장' 제정기로/김대중 대통령, "대출 실업 고용 6개월 연장" 지시/복지부 국감에서 정의화 의원,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

◆ 11월 11일 (수)

서울지법, 최장집 교수 논문 왜곡 보도와 관련해 월간조선 11월호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민주택시연맹,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 11월 12일 (목)

동래경찰서 보안과 직원, 보안사법을 찾는다며 영장도 없이 실직 노숙자 쉼터 수색/노숙자 보호시설, 노숙자증장애인, 노약자, 환자들에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청년진보당과 전국연합 등 6개 단체, '98민중대회 구속자 석방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규탄대회 열어

◆ 11월 13일 (금)

대법원,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남편에게 유죄취지의 판결 내려/세계식량계획, 북한 주민들 영양실조에 직면했다고 경고/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단체, '정보기술과 작업장감시' 워크숍 개최/김삼석·이혜정 씨,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연행

◆ 11월 15일 (일)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대다수 직장의보조합이 노동자 쪽을 배제한 채 사용자 위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국노총, '생존권 사수 및 총체적 개혁 촉구 전국 노동자·농민 시민대회' 열어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군대 자살사건 의혹 무성

'철책 너머는 인권사각지대' 오명 벗어야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인 자살사건마다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고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비롯해, 9월 나진영 이병(해군), 10월 이태경 이경(전투경찰)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각종 군내 사망사건에 대해 유족들은 사고사 또는 타살 의혹을 제기해 왔다(본지 11월 5일자 참조).

지난 11월 5일 강원도 모 부대에서 발생한 육군 이병 김윤웅 씨(부산대 휴학, 98년 6월 입대) 사망사건에 있어서도,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10여 일째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김 이병이 5일 오전 초소(GOP) 근무를 나갔다가 15분만에 수류탄을 껴안고 자폭했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수류탄이 봉인 후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 본인이 의도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폭발할 수 있고 △김 이병이 사고전 일주일간 말없이 지내 왔다는 점을 근거로 김 일병의 사망을 자살로 판정했다.

그러나, 유족측은 '특별한 자살 동기가 없고,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군 당국의 발표에 수긍하지 않고 있다. 김 이병의 여자친구 천 아무개 씨는 "11월 3일자로 보낸 편지에서 '다음달 휴가를 나간다. 빨리 나가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며 자살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또 군 당국이 유족들의 현장촬영을 허락하지 않는 등 곳곳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 이병 사망사건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언급되기도 했는데, 권정달(국민회의) 의원은 "김 이병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에

수사경위서와 사건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국방부의 답변과 자료는 금주 내로 제출될 예정이다.

권정달 의원실의 이영태 비서관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자살로 추정되지만, 자살의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이 사건에서는 자살의 이유를 밝히는 데 수사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77명 사망, 33건에 의혹

한편 올해 들어 군내 자살사건은 77건에 이르며, 그 가운데 33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군내 자살사건이 빈번한 것과 관련, 상급병의 가혹행위가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난 9일 함석재 의원(자민련)은 '7월 박현우 일병 사망사건'과 '10월 안성현 일병 자살사건'이 모두 고참의 가혹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일 사망한 김윤웅 이병도 백일휴가를 나왔을 당시 "취침도중 고참에 의해 화장실로 끌려가 구타를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내 사망사건'은 술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각종 의혹에 대한 민간차원의 조사와 사고예방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군대는 앞으로도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1998년 11월 18일(수)

제 125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가 '김훈 중위 사건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뒤늦게나마 국회 차원의 대응을 모색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공안조작 항의집회

민애청 사건 관련

17일 오후 12시 서대문구 경찰청 부근 인도에서 서울연합(상임의장 노수희) 주최로 민애청 공안조작과 구속자 인권유린에 대한 항의집회가 열렸다. 서울연합과 민가협 등 6개 단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정권은 바뀌었지만 공안조작 사건과 이로인한 인권유린은 여전히 반인권적 악습이 되풀이되고 기본권이 후퇴하는 현 정권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집회의 참석자들은 △연행시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 △체포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점 △조사시 미리 작성해 놓은 진술서를 폐끼라고 강요한 점 △강압수사를 거부하는 연행자에게 폭언을 퍼부은 점 △꿰어맞추기식의 억지수사를 강행한 점 등을 밝히며 "경찰의 이번 민애청 조사가 조작과 덮어 씌우기로 일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 노수희 의장과 민가협 김정숙 의장은 이날 집회를 마친 후 경찰청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모든 경찰간부들이 국정조사 대정부 질의에 참석해 부재증'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당해 경찰청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접수시켰다.

이날 항의서한에는 불법적인 연행, 부당하고 폭력적인 수사,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른 수사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과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경찰청장의 사과, 그리고 구속자의 즉각적인 석방 요구가 포함됐다.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①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지금으로부터 50년전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탄생시켰다. 2차대전의 참화와 반인권의 역사를 반성하며 '인권의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IMF시대 아래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 임시지옥 속에 고통받고 절망하는 청소년들의 모습 등을 보면, 아직도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현실 사이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진다.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앞두고 <인권하루소식>은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를 17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 특집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을 이해하고,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편집자주).



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장은 '경이로운 성취'라는 의장의 연설로 술렁였다.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동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들의 조직체인 국제기구가 인권이 무엇인가를 적어 넣은 보편적인 문서를 만든 것이다. 이 선언의 등장으로 자국민을 대우하는 문제가 그 국가만의 관할사항이라고 말할 근거는 설자리를 잃게 되었고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필연적 추세가 되었다.

이 선언은 6년여에 걸쳐 6개 대륙과 모든 바다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임태되었다. 약 5천만 명에 이르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2차대전의 참상과 나치가 저지른 만행은 국내에서 자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는 인류 모두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준 것이다.

기초위원회는 두 가지 형태의 문서를 모두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47년 말 유엔인권위원회는 기초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문서에 '국제인권장전'이라

이름을 붙이기로 하고 선언을 위한 작업집단, 조약을 위한 작업집단 및 그 이행 조치에 관한 작업집단을 각각 만들었다(UN,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1988).

48년 5월에 모인 인권위원회는 '선언기초위원회'가 제출한 초고를 수정하고 각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때 '조약화'의 문제나 '이행'의 문제를 고려하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선언만이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투표에 부쳐졌고, 결과는 찬성 48, 반대 0, 기권 8이었다.

기권표는 세계인권선언의 의의를 인정하는 속에서도 불충분하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사적 소유권을 인권으로 명기(제17조)한 점이나 사회권 보장에 대한 권리가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이 구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권표를 낳았다. 이는 선언의 기초 과정에서 가장 달아올랐던 논쟁 즉, 보편적인 인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한정되느냐, 아니면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포함하여야 하느냐는 논쟁의 일면을 보여준다. 후자를 지지한 것은 구 사회주의 국가였다.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의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선언에 포함되었다.

긴 산고 끝에 탄생한 세계인권선언은 뒤에 만들어진 유엔의 인권관계 조약들의 뿌리가 되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깊이에 인류는 선언이 채택된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조치의 마련은 먼 길을 재촉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cho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검찰이 아직 구성도 안된 99년 한총련을 미리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 「한총련 이적 규정을 철회하고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선거 활동을 보장할 것」을 김대중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가 한총련 노선을 지지하거나 새로 7기 한총련 조직을 구성할 경우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해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총련 출범식을 계기로 이적 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은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지금까지도 이적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7년 5기 한총련의 경우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지만, 올해 구성된 6기 한총련은 법원의 판결도 없이 공안당국의 잣대 아래 이적단체로 매도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구속되는 사태가 되풀이됐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내년에도 「한총련 혹은 학생운동 죽이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아직 실제로 활동도 없는 99년 한총련을 미리 이적단체로 규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적용의 자의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주고 있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학생회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한총련에 비판적인 입후보자들 역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열도당토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윤

1998년 11월 19일(목)

제 125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 인권 정책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이같은 검찰의 「한총련 죽이기」에 대해, 총학생회장 후보인 박경렬(사회학과 4학년) 씨는 "한총련에 대한 지지 유무를 떠나 학생운동 전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서울대 총학생회 정체국에서 일했던 한 학생은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탄압이 계속될 경우, 한총련 이적 규정에 대한 현법소원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무단횡단을 했다가 18시간 동안 경찰서에 유치됐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1천 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18일 참여연대 작은 권리 찾기 운동본부는 시민 김상태 씨가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된 데 대해 1천 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동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단속의경에 적발됐다. 당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김 씨는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에 대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행한 '고용 보험업무지원요원증'을 대신 제시했다고 한다.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에는 김 씨의 사진이 부착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김 씨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과출소로 연행됐으며, 신원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귀가요청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다음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는 △도로무단횡단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행

위이기 때문에 현행법이라도 그 사람의 주거가 분명한 이상 체포할 수 없으며 △김상태 씨를 제포하면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 했던 행위는 형법 제124조 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성남경찰서측은 김 씨가 처음부터 "내가 왜 신분증을 주느냐, 신창원도 못 잡는 것들이 무고한 시민만 잡는다"며 25분간 통고처분 수용을 거부해, 즉결심판사법 적발 보고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에 대해 신원보증을 세워 귀가시키려 하자 김 씨가 "어떻게 경찰서에서 친구를 부르냐"며 거부했고, 이후 신원보증인 없이 귀가시키려 했으나 김 씨가 "무단횡단하고 신분증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귀가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②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전문(前文)

세계인권선언 전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고,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써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고,

회원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신장을 성취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에,

그리하여 이제 유엔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절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과 회원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나라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써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세계인권선언(선언)은 내용상 다섯 가지 △인권의 개념과 가치 △인권의 목표 △인권 실현의 방법 △인권의 국제적 보장 △회원국의 의무 등 5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먼저, 전문은 인권이 모든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에 기반한다는 인권의 원천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깔린 철학적 바탕은 자연법 사상이다. 실체법보다 우위에 있는 자연의 ·불변의 ·궁극적인 법을 얘기한 자연법 사상은 17세기 사회계약론과 18세기 절대주의에 대한 토대가 되었다.

자연법 이론은 권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리에 호소하여 인권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였다. 그러나, 자연법 이론은 권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리에 호소하여 인권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였다. 그러나, 자연법 이론은 권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리에 호소하여 인권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였다. 그러나, 자연법 이론은 권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리에 호소하여 인권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였다. 그러나, 자연법 이론은 권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리에 호소하여 인권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였다. 그러나, 자연법 이론은 권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리에 호소하여 인권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였다.

선언의 전문은 매우 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그 속에 위축되었다.

자연법 사상의 부활은 역설적으로 2차대전의 참상을 통해 이뤄졌다. 개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실증주의 체계에서 파생된 공포와 나치즘에 대한 극도의 혐오가 자연권의 부활을 가져온 것이었다. 이렇게 부활한 자연권 사상은 전문에 등장하는 「타고난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문구를 통해 선언에 투영된다.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과 그 존엄성에서 기원하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 '양도할 수 없고,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 법령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불가침의,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은 국가 권력을 비롯한 모든 권력에 우선하는 것이며, 국가권력은 조절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인권을 폐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듯박은 것이 전문의 첫 문장이다.

전문은 또한 이러한 인권의 원칙을 무시한 2차대전의 참화를 환기시키고 있다. 인류의 평화를 위협한 것은 전제주의였으며, 그것은 곧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속에서 등장한 「야만적 행위」였다. 따라서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곧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라는 답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선언의 체택과정을 살펴볼 때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하다.

48년 9월에서 12월까지 열린 제3차 유엔총회는 선언의 초안을 아주 면밀히 검토했다. 모든 단어와 모든 문장이 살살이 검토했고, 무려 1천4백회 투표에 부쳐졌다.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세계인권선언이 12월 10일에 반대없이 채택된 것은 이러한 고된 탐색의 결과였다. 선언에는 매우 다양하고 심하게 갈등하는 정치·철학·종교 체계와 문화적 전통을 넘어 하나를 이룬 승리의 나팔소리가 묻어있다. 이런 까닭에 선언 전문은 "모든 국민들과 나라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위안부 전범재판 2천년 개최

정대협, 이달 말 한국위원회 발족키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범들의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여성국제전범 법정'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범법정을 위한 준비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2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여성국제전범법정 준비를 위해 오는 11월 말 경 한국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연구자, 운동가, 법률가 등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한국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위안부제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연구 및 활동을 벌이게 된다.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전쟁이나 무력 갈등 상황에서의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월 열린 '전쟁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네트워크 모임에서 제안됐으며, 지난 46년 동경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동경 동경제재판)에서 전쟁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46년부터 48년까지 2년반 동안 열린 동경제재판에서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731부대와 위안부 문제 등 구 식민지에 대한 일본의 범죄에 면죄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을 아시아 자본주의 정착의 구심점으로 삼아 미소년 전에 끌어들이려는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담합에 의한 것이었다.

그 결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자본주의의 지배국으로 군림했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피해국들은 막강한 자본을 소유한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 적절한 피해보상조차 요구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아시아 여성단체들의 끈질긴 국제 활동의 결과, 93년 일본정부는

위안부 징집이 강제적이었고 국가의 책임이 있었음을 시인하게 됐다. 이렇게 국제적 여론에 밀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정부는 여전히 국가적 배상이나 사죄는 거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의 민간단체들이 92년 조직한 아시아연대도 '전범법정'의 개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아시아연대는 가해국인 일본에서 그들의 죄상을 재판하는 법정을 개정함으로 위안부 문제가 전쟁범죄였음을 명백히 하고 이에 대

한 국제적인 여론을 모아,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진상규명을 통해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 저별의 선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에서는 전범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재청취함으로

1998년 11월 20일(금)

제 125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당시의 명령체계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아시아연대는 오는 12월 일본에서 회의를 갖고 여성국제전범법정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법정을 개정한 후에도 아시아 인권센터 설립 등의 활동을 통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조선일보 비판 통신인 체포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고발

컴퓨터통신을 통해 조선일보와 김대중 주필을 비판해온 통신인 2명이 1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19일 긴급체포된 김학찬, 공희준 씨는 통신에 띄운 글 때문에 김대중 주필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418호실에서 열린다.

…인권간행물

『철거민이 본 철거-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한국도시연구소/530쪽

서울시의 역사는 달동네의 역사였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층빌딩과 아파트로 표상되는 개발의 뒷켠엔 언제나 밀려나는 달동네 주민들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철거민들도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다. 철거민 운동이 시작된지 벌써 30년, 이젠 철거민 운동도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할 때다. 때맞춰 철거민 운동 30년을 돌아보는 책이 나왔는데, 바로 한국도시연구소에서 발간한 「철거민이 본 철거 - 서울시 철거민 운동사」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철거와 주거권, 주거권 운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철거민운동사 등이 소개되며, 2부에서는 최초로 도시빈민문제가 사회 전면에 부상했던 사건인 70년대 초 광주대단지 사건으로부터 최근까지의 철거 문제 가 시기별, 지역별로 지역현황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관련 유인물, 신문자료들로 정리되고 있다. ·구입문의: 701-9004 (한국도시연구소)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제 1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나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체 한 하에 있든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선언) 제1조와 2조는 이후 3조부터 30조까지 규정된 모든 권리의 대전제에 해당한다.

제1조는 우선, 인권이란 '타고난' 것으로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보편적인 권리라는 전문(前文)의 명제를 거듭 확인한다. 인권은 곧 자연법에 기반한 권리로서 현실의 법(실체법)보다도 우선한다는 점, 거꾸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부정하는 어떠한 법률도 정당할 수 없다는 점을 대전제로 전명한 것이다. 또한 제1조의 둘째 문장은 보편적 인권이란 '인류애의 정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제2조는 선언에서 규정된 모든 권리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근거의 차별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선언한다. 엄격히 말해 반드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법률적 진전도 꾸준히 이뤄져 왔다. 그러나, 현법과 법률에서 차별금지를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암묵적, 노골적 차별행위는 엄연하고 있다.

현법에서 금지한 연좌제가 최근까지

별금지의 구체적 기준을 언급하는 것은 곧 평등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일이었다. 모든 인권문서마다 상당한 분량으로 차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주요 국제조약들이 차별금지의 원칙을 일반 원칙으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까닭에 있다. 선언에서 특별히 남녀평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그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A규약)에서 '남녀평등 조

도 이어져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인이 교사임용에서 탈락했던 사례는 관행적으로 사상에 대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가진 우리 현실에서 특정한 사상적 경향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가장 빈번한 인권침해행위로 남아 있다.

또 세상의 절반,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은 여전히 높은 차별의 벽 안에 갇혀있다. 최근 주장 내 여성 우선해고 문제는 가장 심각한 여성차별 관행으로 꼽히며, 특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근거한 호주제도는 우리 법률상 대표적인 차별입법으로 비판받고 있다. 호주제도는 1년에 3만 명에 달하는 여아낙태와 성비불균형 사태라는 또 다른 인권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역시 상존한다. 장애인에겐 고용의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이라는 이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연수생제도의 하점 속에 합법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앞서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은 각각 차별금지의 근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과 헌법에 열거된 근거들은 '대표적 예'에 불과할 뿐, 그 밖의 차별을 묵과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된다.

00도 출신이라는 것이, 화교라는 것이, 대학을 못 나왔다는 것이, 얼굴이 못생겼다는 사실이, 병을 앓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전파가 있다는 사실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 한편 예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차별의 근거들도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에 싹튼 동성애인권운동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새로운 차별의 영역으로 등장시켰다.

평등을 향한 중단없는 전진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선언과 헌법의 이름 아래 벌어지는 암묵적, 노골적 차별행위는 엄연하고 있다.

향'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된다.

이처럼 차별금지를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우리 헌법과 법률 속에 도 반영되어 있다.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차별금지를 명문화했다. 또, 헌법을 보완하는 법률적 진전도 꾸준히 이뤄져 왔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서 차별금지를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암묵적, 노골적 차별행위는 엄연하고 있다.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제가 최근까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발뺌

중국교포 폭행한 뒤, 몰래 출국시켜

출입국관리소가 단속에 걸린 불법체류 중국동포에게 가혹행위를 한 뒤, 이를 은폐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용역회사에 근무 하던 중국동포 윤창로(40·중국 길립성), 윤창걸(36) 형제는 지난 11월 8일 한국인 동료의 신고로 군포경찰서에 연행됐다. 윤 씨 형제는 이어 서울 양천구 출입국관리소로 이송된 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수 차례 기합과 구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관리소 보호실 직원들은 8일 윤 씨 형제를 조사하면서 △다리를 구둣발로 걷어차고 △등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않았다 서기'를 반복시켰으며 △동생 창걸 씨가 무릎꿇는 것을 거부하자 3, 4명이 달려들어 발로 차서 넘어뜨린 뒤 얼굴, 허리, 팔 부위를 무차별 폭행했다.

또 이튿날인 9일 오전, 병원치료를 요구하는 윤 씨 형제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윤 씨 형제를 면회한 소설가 남한 씨와 성남외국인노동자아직(소장 김해성 목사)에 의해 확인됐으며, 김해성 목사는 "소장과 심사과장으로부터 보호실 직원들의 폭행사실을 시인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출입국관리소측은 김 목사에게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윤 씨 형제를 중국에 보내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18일 사전통보도 없이 윤 씨 형제를 은밀히 중국으로 출국시켰다.

김해성 목사는 "관리소측에서 처음엔 조용히 해결하자고 나오더니 이제는 폭행사실에 대해서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법무부에 강력히 항의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관리소 보호실 직원은 "윤 씨 형제가 조사받을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공식 사과하라' 방위비분담금 축소 촉구

20일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92년 이후 하루 평균 2건씩 미군범죄가 발생해왔다'며 "미국의 공개사과가 없는 한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안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약속했던 국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11월 21일(토)

제 125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만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 김엘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체국장은 "우리 국민들은 미군 한 명당 약 1억3천만원을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데, 미군이 주둔하면서 사용하는 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축소하고 이를 사회복지비와 실업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97년 한해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총액은 2조7백68억 원에 달한다.

유가협, 국민회의서 농성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의문사 진상규명 및 열사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유가협 회원들이 20일부터 국민회의 당사 안에서도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농성을 들어간 유가족은 신정화(고 신호수 씨 부친), 전영희(고 김성수 씨 모친), 송양자(고 이승삼 씨 모친) 씨 3명이다.

당초 올해 안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약속했던 국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와 동정

- 열사명예회복·의문사진상규명·양심수문제해결·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인권대회
 - 때 : 11월 21일(토) 오후 2시 · 곳 : 국민회의 당사앞
 - 주최 : 유가협/추모단체연대회의/전국연합/조계사농성단
- 학생인권선언제정을 위한 공청회
 - 때 : 11월 21일(토) 오후 2시-5시 · 곳 :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 강당
 - 주최 : 교육부
- 교통사고 무료상담
 -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522-3141~3)는 억울한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무료상담실을 개설했다.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to 가진다.

제3조는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

생명이 없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권리는 생각할 수 조차 없다. 따라서 생명에 대한 권리는 원초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생명권을 명문화함으로써 국가와 국제사회가 자신의 의무로서 생명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생명권은 또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대국가적' 방어권의 성격을 지닌다. 이를 구체화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 6조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설령 실정법에 의해 생명을 박탈했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는 한발 더 나아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도 생명을 박탈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선언제정 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제사회는 여전히 전쟁, 민족분쟁, 실종, 고문, 공적·사적 테러 등 집단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을 목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목숨들이 저편으로 사라져 갔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안타깝게도 헌법에서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헌법학자들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생명권은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0년을 돌아볼 때 70년대 인혁당 사건, 80년 광주에서의 학살 등 국가권력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했는지는 많은 설명이 필요없다. 또 최근의 경찰 총기남용사례들도 염연히 국가에 의한 살인의 일종이며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제3조에서의 '신체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고문(제5조), 자의적인 체포·

구금 및 추방(제9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2조) 등 21조까지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전제로서 의미를 갖는다.

제4조

누구도 노예나 노예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노예제도에 대한 금지는 세계인권선언의 제정에 앞서 이미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기울여온 문제다. 26년 노예협약이 국제연맹에서 체결됐고 30년 ILO(국제노동기구) 조약 29호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했다. 세계인권선언 제4조는 노예제도 및 매매 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4조에서 노예제도만 금지하고 있을 뿐 더 포괄적인 강제노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됐고 이는 이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8조에서 강제노동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보완됐다.

노예제도는 인류의 오랜 노력 끝에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릴 수 있는 노예제도적 관행은 여전히 남아있다. 5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노예제도, 노예매매, 노예제와 유사한 기구와 관행 폐지'를 위한 보충협약에 따르면, 아동노동, 노예적 형태의 결혼, 체무노예 등이 현대판 노예제도의 유형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예적 형태의 강제노동이 음성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지난 96년 폐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은 월양어선에서의 노예노동을 대표적으로 고발하는 사례다. 87년 형제복지원, 98년 양지마을 사건들도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노역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헌법 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많은 취약집단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망 밖에서 강제노동과 가혹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challian.net · E-mail:rights@challian.net/~rights

관료들 하는 일이란...

학생인권선언, 시작만 거창·용두사미 우려

교육부가 현재 준비중인 학생인권선언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인권선언제정위원회(위원장 권태준)는 21일 서울시대부속여자중학교 강당에서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학생인권선언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우선, 교육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들은 애매모호한 표

현으로 일관되게 인권기준으로 역할하기엔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교육부가 앞서 학생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공개한 학생인권선언 실무 초안 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은 "교육현장에서 힘을 갖지 못하는 이름만 있는 학생인권선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생인권선언은 초기 단계에서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을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준비돼 비난을 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선언 제정위원회는 교육현장에서 보장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실무 초안을 마련해 상당한 기대를 갖게 했다.

실무 초안에서는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제재에 대한 검열△소지품 검사, 두발 단속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시안은 구체적인 기준은 누락시킨 채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만을 열어놓았다. 이밖에 결사의 자유, 정책결정 참여권 등에 대해서도 실무 초안과 달리 형식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한편 "시안이 실무 초안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이유가 뭐냐. 보수적인 교단의 눈치를 보는 교육부의 입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제정위원회 한명인 강순원 교수는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며 "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교육부장관의 의견에 제정위원회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명묘한 기준없이 어떻게 학칙개정이 가능하나"는 부분은 여전히 문제로 남겨졌다. 덧붙여 실무 초안에 있던 내용 중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

....주요 공판 안내

- ▶ 11월 24일(화)
 - 손용용(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4호, 2단독, 신건
- ▶ 11월 25일(수)
 - 신광수 외1(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422호, 합의1부, 선고
 -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속행
 - 이장희 외1(국보법 친양·고무 등) 오후 4시30분, 서울지법 524호, 속행
 - 김향로(국보법 친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 11월 26일(목)
 - 오치근(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속행
 - 김종박(국보법 친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건

1998년 11월 24일(화)

제 125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유 등 기본적 권리가 시민에서 아예 빠진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교육부의 학생인권선언은 대폭 수정·보완되지 않는 한 학교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인권선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 ILO에 또 망신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고 받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진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체택한 권고안을 승인하며, 구속증인 노동조합 간부의 석방과 교원·공무원 노조의 인정,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공공부문 파업제한 철폐 등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을 허용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인정하라 △모든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 △복수노조 합법화 절차를 신속하게 단행하라 △단체협약과 쟁의과정의 제3자 개입을 노동부에 사전신고토록 강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조정법) 40조를 철폐하라 △필수적이지 않은 공의사업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관계조정법 71조를 개정하라 △노동조합 전입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불법화하는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을 철폐하라 △해고 또는 실업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 4호와 21조 1항을 철폐하라 △민주노총을 빠른 시일 안에 인정하라 △민주노총 전 위원장 권역 길 씨에 대한 모든 기소를 철회하라.

ILO는 95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지난 19일 서울대 민교협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우 낮고, 국제인권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비민주적 가치관 및 국가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한국의 국가체제가 이념으로 삼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작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등의 독재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한 말"이라고 분석하며,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전제주의를 내포하고 있거나 혹은 전제주의적 사회구조와 법제도를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밀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검토하는 것은 인권문제에 관한 한국의 법과 제도, 국가기구의 현상과 그 과제, 전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변호사는 우리사회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의 문턱을 넘어섰으나,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기엔 여러 장벽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김대중 정부가 아직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에 관한 한 과거정권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한 종합적 전망과 행동계획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사회에서 △법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반인권적 요소의 개혁 △부의 재분배 기제 확립을 통한 복지체제의 건설 △사회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의 전지구적 확산 △지식과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의 확보와 국가 감시체제의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의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기구와 제도의 개혁 ▲전형제도의 폐지 등 국가와 국민관계의 민주적 개혁 ▲사회경제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청산 ▲시민사회와의 자율성 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 등을 인권정책의 과제로 제안했다.

총기 피해자 민사소송 함께 합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총기 남용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무분별한 총기 남용의 근절을 위해 민사소송 등 다각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없으며,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만 수수합니다.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이들의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서울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3층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고상만 간사)

· 전화: 02-777-0643 / 전송: 02-775-6267

주/간/인/권/호/를

(98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 11월 16일(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학의회의 개최/노동부 "지난해 13만 6천3백5개 사업장에서 모두 3백26만5백89명의 노동자가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5.5%가 일반질병 유소견자 또는 직업병유소견자로 드러났다"고 발표

◆ 11월 17일(수)

예산청, 결식아동 가구나 의료보험료 및 임대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자 등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키로/한인점 까르푸, 대리급 간부사원 2백여 명을 뽑았으나, 이 가운데 1백여 명이 수습기간에 사직하거나 해고된 것으로 드러나/언론개혁시민연대, 정간법·통합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통신언론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 6개 언론개혁법 제·개정안 입법청원

◆ 11월 18일(목)

노동부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으나, 법무부가 △실업자는 현법 33조상 근로자가 아니며 △실업자만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해지면 정치세력화하는 등 공안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서울시가 조준 시장 시절,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 등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를 직원단 합대회 등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져/인도네시아 시위대 학생들, 실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 11월 19일(금)

경실련,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40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 구성/강민길 고려대 교수 등 각계원로 1백3명,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 11월 20일(토)

급우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정신병을 앓게 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4억8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6개 사회·노동단체들, IMF 체제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벌해체 및 부실·부폐 재벌총수 퇴진 △IMF협약 수정과 외채탕감 등 10대 개혁의제 선정 발표/한총련 대학생 10여명, 클린턴 방한 반대 시위/통계청 발표, 3분기 도시 노동자 월평균 실질소득이 전년보다 20% 줄어들었으며, 가계수지에 있어 최하위 20%가 4만4천 원의 적자를 낸 반면, 최상위 20%는 가계수지 162만4천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드러나/국회 법사위, 감첨장비 도입을 위해 법무부가 요구한 99년도 예산 5억2천 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 11월 21일(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5만1천7백35명 가운데 39.4%인 2만3백96명이 일터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국회 예결특위 서한샘 의원, 주한미군 지원규모가 95·97년 동안 67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혀

인권
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오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10주년 공연 포스터를 받아보았다.

아! 벌써 10년이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아직도 창살 틈으로 조각난 하늘과 부서진 햇살을 바라볼 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죄어온다. 문득 나의 윈쪽 발을 쳐다본다. 7년 전 일년 남짓한 수배와 감옥생활로 인하여 심한 동상에 걸려 푸르스름한 색깔로 변했었던 나의 발. 조금만 치료가 늦었어도 잘 렸을지 모를 나의 발가락... 옥살이하는 팔 안스러워, 봄에는 꽃을 봄에 한 다며 이를 모를 노란 꽃을 주머니 속에 몰래 감추고 접견실에 오셨던 어머니...

그곳 생각에 다시 머리 속이 헝클어진다.

40년째 수감중인 우용각 할아버지, 권력 앞에 양심을 계워낼 수 없어 준 범서약을 거부한 강용주 씨와 아들 만날 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철순 노모, 출소 사실을 관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되었던 김삼석, 이해정 씨,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게 가해진 주홍글씨(제7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정부는 다가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학생인권선언'을 제정 공포하고, 한창 공방 중인 국가인권기구 탄생도 가급적 그 때를 맞추고 싶어하는 눈치다. 과연 노벨평화상 후보에 수 차례 오른 '인권' 대통령다운 발상이다. 그러나 그것 만이 급한 불은 아니다.

분단 반백년의 세월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분단된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형벌이 단지 통강난 땅 뎅어리만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분단국가의 반공이데올로기는 법률로서 표현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61년부터 반공법과 병존하다가 80년 대외적 체면 때문에 반공법을 폐지·

통합하면서 개악되었다.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죄경사상에 대한 친양·동조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대변되는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과 함께 가끔은 그 애매모호함을 앞세워, 때로는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확대적용으로 무서운 칼날을 휘둘러왔다.

그 키에 맞아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희생자들과 그 고통을 지금 까지 감내하고 있는 이들의 한과 슬픔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세포들의 잠을 깨우는 일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숨쉴 수 있는 신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일찌기 "평화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폭력을 줄이고 폭력에 저항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폭력이란 정신적·육체적 가능성의 실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 전반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지배해온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가능성의 실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왔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아래 지금까지 가장 위력적으로 우리 민족의 삶을 족쇄처운 것은 '반공·반북·안보'이데올로기였다. 경제주권마저 내놓은 지금

은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 '국가 안보, 경제 안보'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일그러져도, 심지어 그것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일지도 그건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치욕의 분단 반세기는 말 그대로 반인권의 역사였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안보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다. 국가의 안보가 더욱 굳건해짐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의 삶이 더욱 비인간적으로 전락한다면, 국가가 부르짖는 안보란 정권안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의 이름을 빌어 자행되는 국가권력의 비정상적인 감시와 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력에 다름 아니다.

구제 금융시대를 맞아 나라 경제살리기 열풍에 밀려 다른 영역의 가치들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이제 다시 제2의 건국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경제살리기가 금 모으는 것만이 아니었듯이 제2의 건국운동 역시 선언적 구호의 남발이나 공허하게 펼려이는 플래카드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제2의 건국운동은 과거 냉전시대, 집권자들의 권력유지와 체제안보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악용되었던 제반 악법들의 철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다 틀어막고 생산성과 고효율을 얘기하는 것은 허위일 수밖에 없다. 반쪽의 경험만을 강요하는 체제는 결국 그 반쪽의 세상에 간힐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미 IMF를 통하여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모든 사상과 사고가 획일화되고 흑백 논리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올바른 역사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 투쟁은 우리 사회 다양한 세포들의 잠을 깨우는 일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숨쉴 수 있는 신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 함께 커다란 감옥을 깨뜨리자. 진정 평화로운 새날 맞을 때까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1월 25일(수)

제 125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나,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원재 변호사는 "통신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의 수사없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재판장 박재윤 판사)는 지난 6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17일 기각했다(본지 6월 25일자 참조).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법불법집문에 대한 항의 및 피해자 선언대회'를 가지려 했으나, 관찰 서대문경찰서는 "집회장소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개최하려는 옥외집회장소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에 해당하며 △경찰청 정문 앞에서 평일에 1백 명이 운집해 3시간 동안 집회를 할 경우, 경찰업무의 특성상 긴급출동을 요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임은 물론, △일반 시민들과 경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며 △집회 참가인원이나 규모, 집회의 성격으로 보아 차도를 통행하는 차량의 소통에도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많으므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집시법을 사실상 허가제도(법률상으로 신고제) 악용해온 경찰의 관행을 또 다시 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숨진 '민주화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은 지난 21일 유가협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회의는 "가능한 범위부터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차츰 대상을 확대한다"는 입장 아래 '70년대 이후의 사건'들을 명예회복의 대상으로 법안에 명기할 방침이다. 반면, 유가족들은 '8·15 해방후 모든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해왔다.

또한 각종 의문사 사건과 관련, 김의장은 "앞으로 구성될 '국민(국가) 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그 위상과 권한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의문사 진상규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회의 박상엽 전문의원은 "유명무실한 기구의 조사만으로는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강제조사권이든, 완화된 조사권이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 및 열사 명예회복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해온 유가협 회원들은 지난 4일부터 20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제5조 :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고문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잔인한 형태의 인권유린이다. 2차대전 이후 생명, 건강, 자유, 신체적 불가침성 및 인간의 존엄성 등을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고문 금지는 가장 중요한 인권원칙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졌다.

지금부터 불과 2, 3세기 전까지만 해도 고문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법으로 고문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었고 세계인권선언 이후에는 인권을 다루는 여러 국제적 문서에서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스스로 고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고문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각국의 정부는 고문을 실질적으로 극복시키기보다는 고문 행위를 비난하는 데만 열중했다. 지난 84년 국제앰네스티(AI)는 "80년대에 세계의 2/3의 정부가 수감자에 대해 고문과 학대를 자행하여 왔거나 묵인하여 왔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고문은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의 차이 또는 사회 발전수준의 차이에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자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

고문폐지를 위한 노력

1972년부터 고문폐지를 위한 국제 캠페인을 전개한 국제앰네스티와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같은 민간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의해 유엔은 73년부터 고문방지조약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첫 성과로 75년 유엔총회에서 고문방지선언이 채택되었고, 8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고문피해자기금의 설립을

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수법들은 그대로 독립된 대한민국 경찰에게 전수되어 아주 최근까지 우리 사회에서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군사정권에 의한 강압정치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의 길을 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고문이 사라졌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과연 고문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졌는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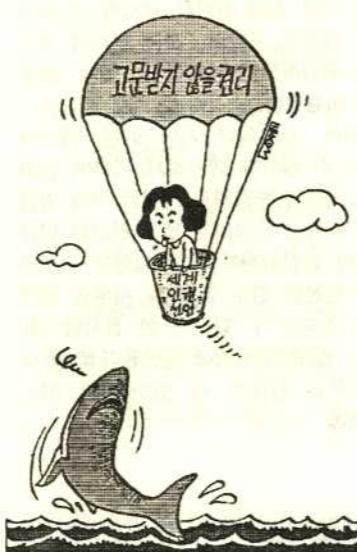
고문은 아직 존재한다

과거처럼 정치범에 대한 물고문·전기고문 등의 격렬한 방법의 육체고문은 거의 사라졌지만, 정치범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일반 형사범에 대한 육체적 고문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문이 아니다"라고 주장되면서 일반적으로 널리 자행되고 있는 고문형태는 잠안제우기 고문일 것이다. 여기에 정치범과 일반 형사범의 구별은 없다.

한편, 고문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즉각적이고도 공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이 법정의 증거채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공무원의 광범한 불법행위가 거의 처벌되지 않는 관행 역시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고문의 뿌리를 뽑는 길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48년 이후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에야 '고문방지조약'은 헛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95년에 이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정식으로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고문은 사라졌는가?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자행한 잔인한 고문에 대하여 모르

고문의 금지와 함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가령 체형, 강제급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가혹행위에 대해 무감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가혹행위들 역시 '고문'의 어엿한 한 형태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고문의 뿌리는 결코 뽑힐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비리재단 버티고 … 농아원생들 지치고

경기도 평택시 에바다농아원(농아학교) 사태가 27일로 2주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에바다 비리재단의 퇴진을 요구해온 농아원생과 교사들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에바다농아학교는 또 다시 파행운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재단에 비판적이었던 농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농아원 인근 '혜아래집'에서 숙식중인 농아학생들과 교사들은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이 어서 빨리 이사장으로 부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이성재 의원에게서 한 가지 희망을 찾는 것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이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 당시 이 의원은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에바다재단의 이사장을 개편하지 않는 까닭을 주궁하며 스스로 '무보수 이사장'으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할관청인 평택시청은 에바다 사태 처리에 있어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청은 이사장 승인취소 등의 적극적 조처 대신 재단에 이성재 의원을 이사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권고를 보냈을 뿐이다.

관선이사장의 태도는 더 한심할 따름이다. 박영규 관선이사장은 "나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중재역일 뿐"이라며 "이성재 의원이나 국정감사장의 높으신 분들과 상급기관에 물어보라"고 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에바다농아원 사태는 지난 96년 11월 27일 농아원생 60여 명이 "식사를 제 때 달라" "기숙사에 난방을 켜달라" "방학과 휴일에 고향에 보내달라"는

1998년 11월 26일(목)

제 12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수사관 김상두 씨와 조기원 씨는 증거 자료의 신빙성을 밝히지 못한 협조원이 제보했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협조원이 어디서 자료를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해 협조원의 존재여부와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시켰다.

이에 대해 '영남위원회' 사건 울산·부산 대책위는 "협조원'을 등장시켜 수사상의 불법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김상두 수사관은 구속증인 박경순 씨의 집을 24시간 감시했으며 박 씨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시로 미행했다고 밝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이뤄졌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편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은 8일부터 단식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구속자 중 한 명인 정대연 씨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억울하게 구속돼 있는 양심수들과 함께 3일 간 단식을 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또 출판사 털기

「일보…」 등 압수, 직원 구속

경찰이 또 책 사냥에 나섰다.

풀무질 출판사의 양효식 씨와 책갈피 출판사의 홍교선 씨가 25일 낮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연행됐다. 또 책갈피 출판사의 책 전제가 압수되기도 했다. 이들을 연행한 남영동 대공분실은 풀무질 출판사의 「일보전진 이보후퇴」 외 8종, 책갈피 출판사의 「광란의 자본주의」 외 12종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경찰은 또 다시 정식으로 출판돼 서점에서 베젓이 팔리던 책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해 무리한 처사라는 지적 이 일고 있다.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제6조>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7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법 앞에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인격적 주체'(6조)로서 '차별없이 동등하게'(7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언이 제택될 당시, 제6조는 신체적 자유에 관한 권리와 똑같이 중요한 권리로 여겨졌다. 노예제도의 금지(제4조)가 '신체적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모욕'을 금지한 것이었다면, 제6조는 '법적 관점에서 인간 모욕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제7조는 법학자들의 논쟁을 불러 왔다. 즉, 그 '법 앞에 평등'이 단지 법의 적용(사법과 집행)에 국한되는 평등인지, 아니면 입법권력까지 구속하는 평등(내용상의 평등)인지에 대해 해석이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 자체가 불평등할 경우, 법의 적용이 평등하더라도 결과는 불평등할 것이라는 점에서 '법 앞에 평등'을 입법권력까지 구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통설로 정착해왔다. 법률은 만들어질 때부터 평등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88년 희대의 탈주극을 벌였던 지강현 씨가 세간에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어떠한 탁월한 법률가보다도 명료하게 한국의 법 현실을 묘사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판시의 자유심증주의는 흔히 불평등하고 왜곡된 사법처리를 정당화시킴으로써 평등권의 대원칙을 무색케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지난 95년 광주에서 대형 건물의 무단 증·개축에 대한 단속이 벌어졌을 때, 작은 음식점의 주인은 구속된 반면, 혐의가 무거운 대형백화점 건물주는 '지역유지'라는 이유로 불구속수사를 받았다. 거액의 떡값을 받은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사법처리를 받아 왔지만, '피리미' 공무원들은 기백만원의 뇌물만으로도 줄

<제8조>
모든 인간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다.

제8조는 선언의 기초위원회가 마지막 순간에 첨가한 조항이다. '효과적인 이행 없이 인권은 실체없는 그림자'일 뿐이며, 따라서 '구제받을 권리'는 핵심적인 인권규정인 것이다. 이 조항은 해당국이 제정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우리의 경우, 법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행위를 구제하는 기관은 사법부며,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권리 구제 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그 자체가 반드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바로 섰는가?

헌법재판소가 이제까지 내렸던 결정들을 살펴보면, △"고문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각하(95년 3월) △"재정신청 대상의 제한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삼성교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수단 박탈(97년 8월) △"기업 파산시 퇴직금 우선변제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97년 8월)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97년 11월) 등, 인권문제 전반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곳곳에서 인권의 진전을 가로막았음을 알 수가 있다.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실효성 여부는 그 나라 사법부가 바로 서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유엔은 오늘날 해당국 법정에 의해 구제가 불가능할 경우, 여러 가지 구제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구제장치에 충분한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 또한 우리의 숙제다.



줄이 철창행이었다.

우리의 법은 적용과정에서만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 94년 천안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한 재소자는 열흘만에 폐암으로 사망했다. 교도소 내에서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심지어

"폐암으로 의심된다"는 보건소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폐결핵 치료약만을 복용하다 폐암발기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반면, 당뇨와 고혈압 증세 등을 보였다는 이유로 석방된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복귀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이미 전향서를 제출했던 국가보안법 전력자에게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자,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이 전향 여부에 관계없이 이른바 '공안사법'들을 영원히 국가의 감시·통제하에 두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유학시절의 활동과 관련 94년 국가보안법 위반(국가기밀누설,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돼 올 5월 14일 만기출소한 안윤정(34) 씨는 지난 9월 7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통고받았다. 안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대전지방검찰청은 "범죄 사실로 볼 때 유사시 보안관찰처분 해당범죄(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외환유치죄 등)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청구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안 씨는 이같은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 26일 서울고등법원에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재벌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노맹 출신 장민성 씨에게 내려진 보

안관찰처분을 취소토록 판결한 바 있

다. 또, 같은 사노맹 관련 혐의로 수

1998년 11월 27일(금)

제 12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감생활을 했던 이은경·정명섭 씨가 6월 26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본지 98년 6월 27일자 참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자는 3개월마다 관찰 경찰서장에게 △주요 활동사항 △회합통신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그 일시, 장소 △경찰서장이 신고토록 지시한 사항 등을 신고해야만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약자 방지, 국가임무 포기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26일 낮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소속 18개 단체는 명동 삼엽은행 앞에서 고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대량실업 위기를 극복하자"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과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신규실업자, 일용직노동자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실업대책 총괄기구의 구성 △실업대책에 민간의 참여 보장을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민복지 권리 선언'을 발표해, "소외된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방지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며, 정부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국민복지기본선을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제9조>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주방을 당하지 않는다.

'자의적인 체포·구금·추방의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제3조 '신체적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완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9조에서 '자의적(arbitrary)'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해 왔다. 단순히 '불법적'이라는 의미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법의 외피를 쓴 권력의 남용까지 고려할 때 '정의롭지 못한'이란 해석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인간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야 할 뿐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사전영장주의 원칙, 구속영장실질심사제, 구속적부심제 등을 통해 '자의적인' 신체의 구속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비춰볼 때 우리의 형사절차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잡아놓고 보자'는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긴급체포'가 그 중 대표적이다. 이제는 법관의 영장을 없이 사람을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뒤집어보면 48시간은 잡아둘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긴급체포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엔 체포 뒤 3-5시간 내에 체포영장을 발부토록 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긴급체포제도는 자의적 구금을 금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98년 경찰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긴급 체포된 12만 7천4백37명 가운데 43.4%가 훈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이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행하게 돼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무시한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문제점은 영장실질심사 제도에서도 드러난다. 97년 12월 '개악'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신청하고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범죄혐의로 체포·구금된 자는 신속히 판사 앞에 인치돼 구금의 죄법



성을 심사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 9조 3항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자의적 체포·구금에 관한 비보는 곳곳으로부터 들려오고 있다.

<제10조>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협의에 관하여 재판을 받게 될 때,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적인 심문을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갖는다.

<제11조>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주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번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장들이 행사된 공적 재판에서 범률에 따라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갖는다.

2. 아무도 그것이 범해질 당시에 국내 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던 행위나 태만으로 인해 형사법으로서의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범죄가 행해졌을 당시의 적용 가능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진실발견을 위해서도 '공정한' 재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한' 재판은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정, 공적인 심문, 변론권 등을 전제로 한다. 제10조는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은 이밖에도 여러 다른 요소들을 요구한다. 11조는 이같은 점에서 10조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 여기서는 자신을 방어할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법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원칙,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4조와 15조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한편 "모든 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갖는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 헌법 27조 4항에도 반영돼 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는 전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결재소자가 법정에 죄수복을 입고 출정하는 것에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은 실종된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기결수 취급받는 것은 그것뿐이 아니다. 여기엔 '구속되면 곧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후진적 인식도 한 끽을 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nterpic.net/~rights

명동성당, 농성장 강제철거

독기 품은 신도들 "꼴 보기 싫다"

명동성당이 27일 성당 내 6개 농성장 가운데 5개 농성장을 강제철거했다. 이날 철거로 성당에서 퇴거나게 된 농성자들은 한총련 농성단, 조총시스템 퇴출노동자, 건설일용직노조, '새날을 여는 실업자연맹' 회원 등이며, 전날 철수한 금성기공 협교자들의 농성장도 철거됐다.

농성장에 대한 강제철거는 오전 11시 경 시작돼, 오후 3시경까지 만도기계 농성천막을 제외한 다섯 개 농성천막이 모두 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저지하려는 농성자들의 강력한 항의가 벌어졌으며, 철거를 제지하던 대학생 허 아무개 씨가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만도기계의 경우, 수 배자들이 농성중이어서 철거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철거에 앞장 선 사람들은 30여 명의 남녀 신도들. 그 가운데엔 명동성당의 신도가 아닌 '인부'도 포함돼 있었다. 철거에 나선 신도들은 "빨리 치워버리라"는 고성과 함께 시종 독기를 감추지 않았으며, 농성자들에게 반말섞인 욕설도 거칠없이 내뱉었다.

국가보안법 50년·세계인권선언 50주년 국제연대 집회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 때: 12월 1일 낮 12시 · 곳: 여의도공원 문화마당(구 여의도광장)
- 내용: 공동선언문, 국제앰네스티 빠에르 싸네 사무총장 연대사 낭독
- 행진: 국가보안법 장례식 (여의도공원 - KBS - 한나라당 앞 - 국민회의 앞 - 장기신옹행)
-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연합, 지식인연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 참가를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민가협(763-2606)으로 연락바랍니다.

1998년 11월 28일(토)

제 1260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지 않나"며 "자진철거 약속을 계속 미루니까 신도들이 결국 참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신부는 "이번 강제철거가 앞으로 명동성당 농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총은행으로부터 퇴출당한 뒤, 1백 26일간 농성을 진행해왔던 조총시스템 협교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털린 출판사, 모두 구속

<풀무질> 출판사 폐업

지난 25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출판사 '풀무질' '책갈피'의 양효식, 흥교선 씨에게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출판물을 압수당하고 운영자가 구속된 <풀무질> 출판사는 27일 폐업 신고를 냈다.

'학생인권선언 있으나마나'

교육부 시안 비판

대학생들의 교육운동 모임인 '교육운동연대회의'는 교육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학생인권선언' 시안과 관련, "학생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학생인권선언은 있으나마나한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12월 10일 선언을 발표하려는 교육부의 계획을 중단하고 촉구했다(본지 11월 24일자 기사 참조).

교육운동연대회의는 졸속적인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반대하는 각 단체 공동명의의 성명서 발표를 준비중이며, 이를 위해 오는 29일 오후 5시 모임을 갖기로 했다(문의: 450-3981, 나우누리 kk31).

〈인권하루소식〉 98년 11월분 총목차(1241-1260호)

호	월/일	면	기사제목
1241	11/3	1	'책읽는 교도소' 말뿐인가 - 검열 불편 이유로 도서 반입 금지/공안당국 다시 기지개 - 단국대·인제대생 대거 연행
		2	"사실왜곡, 언론자유 아니다" -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주간인권흐름(10월 26일~10월 31일)
1242	11/4	1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2	근거 없는 '재범 우려' - 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특별법 제정 국회 앞 농성 - 유가협, 제13차 총회 개최/통일운동단체에 또 이적협의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9명 체포
1243	11/5	1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제정 - 차별배제·결사의 자유·노동권 등 천명/〈만화사랑방〉 학생인권선언
		2	전경·해군 의문사 잇따라 - 당국 '자살' 주장... 유족 '의혹' 제기/유가협 국회 앞 농성 돌입 - "올해 안 특별법 제정" 촉구
1244	11/6	1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민애청 6명 영장 기각 - 경찰, 문건 이적성 집증 추궁
		2	현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1245	11/7	1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IMF 1년, 고통받는 민중 결집 - '98 민중대회 8일 여의도에서 개최
		2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 금지/『월간조선』 편집장 고발 - 영남위 피의사실 유포혐의/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 재판부, "반성없다" 판단
1246	11/10	1	"감청 제한 더 엄격히" -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민중대회, 곤봉·방패 세례 - 해산 중인 시민·대학생 연행/8·15 출소자 16명 준법서약제 철폐 촉구
		2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볼까 -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주간인권흐름(11월 2일~11월 8일)
		3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이태곤 월간『함께걸음』 편집부장)
1247	11/11	1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 복지부 국감, 신임이사장 부적격 질책/서준식 씨 공판 재개/〈국감스케치〉 보건복지부 - 이성재 의원을 예바다로
		2	'이적단체 조작' 이제 그만! -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 영남위 사건, 재판중단 사태/〈현장〉 국회 앞 유가협 농성장 - "의사봉을 두드릴 때까지"
1248	11/12	1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만화사랑방〉 유가협 농성
		2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교수/〈인권간행물〉 『다원건설(구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
1249	11/13	1	노숙자 1천8백 명 쉼터 입소 - "자유·희망없다" 입소 거부 상당수/거듭된 소환, 생활 지장" - 대공분실, 민애청 2차 재소환/대구·경북, 인혁당 재조명 운동 - "빼앗긴 추모비부터 찾자" 의견도
		2	사회단체 노난사건 잇따라 - "특수목적의 계획된 범죄" 추정/민중대회 경찰폭력 규탄 - 청년진보당 등 항의집회
1250	11/14	1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부나 - 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해정 씨 체포
		2	얼굴 없는 감시자가 지켜본다 - 바코드·IC 카드 이용 노동자 통제

〈인권하루소식〉 98년 11월분 총목차(1241-1260호)

호	월/일	면	기사제목
1251	11/17	1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비공개 재판 논란 - '영남위 사건' 공판 또 연기
		2	진보네트워크 둘러보기/주간인권흐름(11월 9일~11월 15일)
1252	11/18	1	군대 자살사건 의혹 무성 - '철학 너머는 인권사각지대' 오명 벗어야/공안조작 항의집회 - 민애청 사건 관련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①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1253	11/19	1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 99년 한총연,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② -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전문(前文)
1254	11/20	1	위안부 전법재판 2천년 개최 - 정대협, 이달 말 한국위원회 발족기념/조선일보 비판 통신인 제포 -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고발/〈인권간행물〉 『철거민이 본 철거-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 차별은 안돼!
1255	11/21	1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밀慣れ - 중국교포 폭행한 뒤, 몰래 출국시켜/클린턴 공식 사과하라" - 방위비분담금 축소 촉구/유가협, 국민회의서 농성 -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3·4조 - 노예는 없다!
1256	11/24	1	관료들 하는 일이란 ... 학생인권선언, 시작만 거창·용두사미 우려/한국정부, ILO에 또 망신 -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리받아
		2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광고〉 총기 피해자 민사소송 함께 합니다/주간인권흐름(11월 16일~11월 22일)
1257	11/25	1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긴급체포 통신인 영장기각 -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혐의/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 고문 금지!
1258	11/26	1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 비리재단 버티고 ... 농아원생들 지치고/협조원이 누군가" - 영남위 수사관 증인신문/경찰, 또 출판사 텔기 - 『일보...』 등 암수, 직원 구속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6·7·8조 - 법 앞에 평등
1259	11/27	1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동성애 서적도 이적표현물?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9·10·11조 -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1260	11/28	1	명동성당, 농성장 강제철거/털린 출판사, 모두 구속/교육운동연대회의, 학생인권선언 시안 비판
		2·3	98년 11월분 총목차(1241호-1260호)

총기 피해자 민사소송 함께 합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총기 남용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무분별한 총기 남용의 근절을 위해 민사소송 등 다각적 대응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없으며,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만 수수합니다.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이들의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777-0643 / 전송: 775-6267(담당: 고상만 간사)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특집〉기사

제3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다음주에 계속됩니다.

인권하루소식

98년 12월

(제1261호 - 제1280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 히) • E-mail:rights@cha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2월 1일(화)

제 126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30일 국제앰네스티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국가보안법 남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반대세력과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보법 개정을 미루고 있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희생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과 한국정부가 스스로 서명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보법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지탄을 받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다.

92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의 실현에 중요한 걸림돌"이라며, "국보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라"는 권고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매년 열리는 유엔인권위 때마다 국보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치 못했다. 특히 95년 6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국보법 50년·세계인권선언 50주년 국제연대 집회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 오늘 낮 12시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구 여의도광장)
- 행진: 국가보안법 장례식 (여의도공원 - 장기신용은행)
- 주최: 인권단체협의회, 민노총, 전국연합, 지식인연대, 참여연대

삼 정부 출범 이후인 94년부터 매년 "한국의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96년 52차 유엔인권위에서 아비드 후세인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대해 반박발언에 나섰던 박창일 주 제네바 차석대사는 "국보법은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수단이며 국보법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한국 민의 공통의 정서"라고 강변했다. 올해 열린 54차 유엔인권위에서는 주기철 주 제네바대사가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국 민간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내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호도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내외의 비난을 외면한 채 존속되어온 국가보안법이 오늘로 제정 50년을 맞았다.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중에서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 인권법 제정을 추진중인 법무부는 당초의 인권법 시안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무부가 새로 내놓은 수정안은 이사회제도와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추가하는 등 다소 진전된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좌우하는 '위상' 문제에 있어 여·야 정치권과 민간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독립된 국가기구'안을 거부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틀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법무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을 겸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권위원의 인선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동격에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통해 의도하는 바가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데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법무부 수정안에 대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는 "법무부가 오만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내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좌절시킨다면 즉각 실력행사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규탄했다.

세계인권선언 50돌 기념

영화제 · 심포지엄 · 음악회 등 행사 다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다양한 행사가 국내외에서 준비되고 있다.

유엔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결의문과, 13년간의 오랜 논의 끝에 올 초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인권운동가 권리 선언문의 채택이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네덜란드에선 10일부터 12일까지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린다. 마스트리히트 대학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엔 유엔 인종차별방지 위원회의 일원인 테오 반 보벤 등 인권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인권선언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친다.

국내에서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시민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곳곳에서 준비되고 있다.

■ 제3회 인권영화제

- 12월 5일(금)-10일(목) / 서울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 부대행사: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토론회 「세계인권선언, 무엇이 문제인가」(8일 오후 4시)

·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콘서트 '인권·평화·사랑'
- 12월 10일(목) 저녁 7시 /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12월 12일(토) 오후 6시 / 서울 한양대 올림픽체육관
- 주최: 민가협

-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대회
- 12월 1일(조계사), 5일(서울역), 10일(종묘공원)
- 주최: 민권공대위

■ 울산인권주간(12월 1일- 10일)

- 울산인권주간 선포식 및 기념심포지엄(1일), 울산지역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울산시민의 밤(4일), 하루 감옥 체험과 시민걷기대회(5일), 촛불행진(10일)

- 주최: 노동운동탄압 '영남위원회' 사건 울산시민대책위
- 전북인권주간

- 시민행동의 날(4일), 인권영화제(5일-9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 및 기자회견(10일)
- 주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5개 인권단체

.....주요 공판 안내

▶ 12월 1일(화)

- 김영곤 외2(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알림> 1일 10시로 예정돼 있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공판은 연기됨
- 3일, 4일 공판은 내일자에 실립니다.

주/간/인/권/호/름 (98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 11월 23일(월)

서울지법 영장전달판사 25명, 강청·계좌수색 엄격제한 키로/정부, 내년부터 자활보호 13만 가구 월 15만원 지원하기로/아시아경제위기에 대한 한국천주교연대, 경제 위기의 뿌리인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알리는 등 경제위기 공동대응기로

◆ 11월 24일(화)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공개 운동 토론회' 열어/국제노동기구, 한국 노사관계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기본적인 노동현장을 인준하지 않고 노동계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겹거되는 등 부정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

◆ 11월 25일(수)

서울지법, '용공몰이' 한국논단에 거액 배상판결/노동부, 월 3/4분기 실질임금 14% 줄었다고 발표/40개 시민단체, 조선일보 취재거부 운동에 돌입/남영동 대공분실, 풀무질 출판사의 양효식 씨와 책갈피 출판사의 홍교선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영국대법원, 피노체트 전 철례 독재자에 대한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미국, 한국인 관광객을 불법체류자로 몰아 죄수복 입혀 형무소에 가두고 하루만에 강제출국시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 11월 26일(목)

안윤정 씨, 서울고법에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제기/참여연대 등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고용실업 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국민복지권리선언' 발표/〈한겨레〉 여론조사팀과 민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70.5%가 국가보안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통계청 발표, 상용직 노동자 7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미국의 프리덤하우스, 남한과 북한의 인권상황 평가를 포함하는 '97-98년 세계인권상황 평가서' 발간

◆ 11월 27일(금)

명동성당, 농성 천막 강제철거/박상천 법무장관, 수형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의 명문화와 더불어 민영 교도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혀/법무부, 이사회제도 폐지하고 국민인권위원회의 임시구제조치 권고권을 인정하되 특수법인 형태는 고수하는 내용의 수정안 확정/심원구 울산 시장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의 보석촉구 단원서 제출/진주드초등 학교 학생, 지난 18일 도둑 누명 쓰고 음독 자살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 11월 29일(일)

서울경찰청, '폭력철거 시비' 다원건설 재수사하기로/서울지법 형사항소2부,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결에 이어 '간접증거의 증명력' 인정하는 판결 내려/교육부, 겨울방학기간 중에도 결식학생들에게 점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청년진보당, 종로구 명륜동 유림회관에서 창당대회 열고 16대 총선 참여 선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2월 2일(수)

제 126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권위원회 등 35개 국제인권단체들이 연대성명을 보내 우리나라에서의 국보법 폐지 운동에 지지를 표명했다.

국회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반세기, 국보법 폐지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전국연합, 지식인연대 등 인권·사회단체와 학생들 2백여 명은 1일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제연대 집회를 열고 국보법과 정보·수사기관의 개혁에 즉시着手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국가보안법의 장례식으로 시작됐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보법 50년의 역사를 미감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참석자들은 국보법을 상징하는 악의 시신과 함께 50년간의 구속자 명단, 양심수들의 수의·포승줄, 국가보안법전을 관 속에 넣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엔 '근조 국가보안법' 만장과 상여를 앞장세우고 국회 앞 장기신용은행까지 행진을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인도네시아 사회운동가들도 참석해 연대를 표시했다. 인도네시아 인권변호사 조니 씨는 "인도네시아에도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악법이 있다"며, "한국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운동에도 좋은 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천주교 인권단체 패스로마나, 고문반대국제단체, 아시아인권연대 등 35개 국제인권단체들이 연대성명을 보내왔다.

우선,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자'를 명예회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민주화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이나 반국가행위자로 낙인찍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실질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법안은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 또는 정치적 권력의 기본권 제약에 대한 항거와 국민권리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정의함에 따라, 4·19혁명이나 6월항쟁과 같이 국가권력에 대항한 운동가들 외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하다가 학생 또는 탄압 당한 사람 역시 명예회복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협은 특별법 초안에 대한 내부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국민회의에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공판 안내

▶ 12월 3일(목)

- 권영길(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 이창복(국보법) 오후 5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속행

· 민철식(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5단독, 선고

· 손용운(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4호, 2단독, 선고

· 김종박(국보법 친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속행

▶ 12월 4일(금)

- 이범교(국보법 친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제12조>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프라이버시권)는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인권 가운데 하나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반면, 한편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사생활 침해를 낳아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선언 12조의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내용도 항상 확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히는 도청(감청), '몰래카메라'(CCTV) 활용 문제 등은 범죄예방과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상반된 관점 속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도청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익숙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은 최근 정보기관의 감청행위가 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삼 확인된 바 있다.

사생활의 권리에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다. 집으로 날아드는 광고전단의 홍수에서부터 지존파의 살인극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가져오는 인권피해는 다양하다. 이에 따라 현대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개념이 추가된다.

세계인권선언 12조는 문맥상 방어적·수동적 개념의 '보호권'을 주장하는데 머무른 한계를 보인다. 이와 관련 프라이버시권을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통제의 권리'로까지 나아가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13조>

- 모든 인간은 각국의 경계 안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누릴 권리다.
- 모든 인간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떠나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갖는다.

국제법에서 보장되는 이동의 권리는 영토 내에서의 이동과 국가간 이동으로 나뉜다. 오늘날 주목받는 문제는 후자 즉, 외국인과 자국민은 동일하게 '떠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국민은 '돌아올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의 자유'와 관련,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로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입국금지조치와 재일동포 가운데 이른바 '조선적(難)' 보유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있다. 그러나 시선을 멀리 돌릴 것 없이 국내에는 영토 내에서의 이동의 자유조차 제한받는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 존재한다. 국내 보안관찰피처분자는 약 7-8백 명 정도로 추산된다.

◆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다 나왔지만, 출소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나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담당경찰의 출소신고입력 전화일 뿐이었다. 보안관찰법과의 밀고 당기는 기나긴 신경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린다.

97년 9월30일 출소 후, 지금껏 출소사실 신고서를 내라는 담당경찰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1년 2개월 동안 끊이지 않는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 전화에 전화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전화를 받기조차 망설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출소사실 신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1월13일 수원 중부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가 다음 날 풀려났다. 지금도 경찰의 출두요구 압력을 받으며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고 있다.

나와 같은 출소자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피처분자들은 보는 담당경찰의 시도 때도 없는 전화공세에 시달린다. 보통 받자마자 '똑' 끊기는 전화가 십중팔구. 담당경찰이 출소자들의 소재를 확인하려는 전화다. 어떤 날은 밤 11시에 불쑥 집에 찾아온 경찰이 출소사실 신고를 안 해서 자기 입장이 난처하다며 떠들고 갔다.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까지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차라리 감옥에 다시 들어가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쯤 되면 세계인권선언의 '사생활권리' 조항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출소자나 보안관찰처분자들의 사생활은 보안관찰법이 있는 한 평생동안 경찰의 감시 속에 외줄타기를 해야할지 모른다.

지난 7월10일엔 여권을 신청해서 18일경 찾기로 했지만 안기부가 가로막았다. 여권문제는 보안관찰대상 출소자들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는 "모든 사람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고, 자국이나 다른 나라로 떠나고 돌아올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인권대통령 직속 기관 안기부 눈에는 세계인권선언이 안중에도 없다. 또 국외여행은 물론 이사를 해도 7일 안에 신고하라거나 10일 이상의 국내여행도 자진신고 하립신다. 남들은 금강산구경도 가는데 한 피처분자는 물릉도 여행마저 금지 당한 적이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세계인권선언이 과연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조차 모를 지경이다. 세계인권선언보다, 또 한국의 헌법보다 보안관찰 담당경찰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현실이다. 김대중씨가 인권선언에 서명을 했다지만 더 중요한 건 차분히 인권선언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철폐가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첫 번째 일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연행

서울경찰청, 마구잡이 압수수색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안당국이 또 한 사람의 사회운동가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2일 새벽 3시경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어 김국래(34·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씨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했다. 경찰은 김씨가 인천대학교에 재학 당시 민족해방애국전선(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은 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 황인오(을 8월 15일 가석방) 씨 등이 남한조선노동당 산하 중부지역당을 결성해 활동했다고 안기부가 발표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각계로부터 조작의혹이 불거져 나왔으며, 올해 10월 안기부는 4대 북풍의혹 사건 가운데 하나로 중부지역당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조작의혹 제기된 민예전 사건 연루혐의 한편 김 씨가 집에서 연행될 즈음, 서울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힌 20여 명의 경찰들이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전국연합의 회의자료, 지역활동자료, 인천지역 대의원자료, 인천연합자료, 디스크 30여 개, 컴퓨터 1대를 압수해 갔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무차별 수색에 항의하는 인천연합 관계자에게 "무조건 연행하겠다"고 위협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연합은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사회단체에 그것도 새벽 3시에 기습적으로 들어와 혐의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품까

1998년 12월 3일(목)

제 126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국보법 철폐 500인 선언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은 지난 1일,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는 '5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산인권센터(대표 김정각)와 부산민가협(회장 이정이)을 비롯한 각 단체 인사 5백여 명은 선언문을 통해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안된다면 최소한 민주적인 개정이라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IMF 1년, 돌아 본 우리 모습

IMF 1년, 인권은 얼마나 후퇴했을까?

지난해 12월 3일 IMF 통제체제가 들어선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업률의 증가와 노동권의 박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중 실업률은 7.1%에 실업자는 1백53만6천 명. 지난해 11월 실업률 2.6%, 실업자 57만4천명이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 또한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른 것일 뿐, 민주노총은 "현재 실망실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일시휴직자를 포함한 실질실업자의 수는 4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곧바로 가계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시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8.1%가 감소했으며, 물가인상을 감안할 경우, 실질임금은 14.2%나 줄어들었다. 반면 통계청의 '1/4분기 가계조사'에 따르면, 상위 20%이내의 고소득 가계의 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 이내의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12% 감소한 것에 비춰보면 부의부빈의빈 현상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IMF 이후 어린이·청소년들이 겪는 고통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파악하는 결식학생의 숫자는 96년 1만2천3백81명에서 97년 1만1천8백98명으로 주는 등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들어 1만7천5백18명으로 급등했다.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도 지난해 평균 41.5%보다 5.2% 포인트 늘어난 46.7%로 분석됐다. 특히 실업계의 한 학교는 지난해 44.9%에서 72%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청소년범죄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지난 3년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증가세가 2배 가까이 높아졌다.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14조>

-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 갖는다.
-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주의 경우에는 호소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피난처에 대한 권리'는 피난처를 허용하는 국가의 권리를 의미했다.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하게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였고, 이를 반영한 것이 세계인권선언 제14조다.

하지만 14조는 그야말로 '선언'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개인이 정당한 이유로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더라도 해당국이 받아들이어야 할 법적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피난처에 대한 권리'는 선언 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51년)과 의정서(67년)가 채택돼 현재까지 1백 30국이 가입돼 있지만 이 또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난민조약은 △난민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지역으로 주방송환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1년부터 95년 사이 2백40만 명의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이들은 단지 11%에 그쳤던 것이다. 과거 난민조약 채택에 적극적이었던 서방국가들도 난민 전이 종식되자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는 일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별도움이 못된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이러한 태도변화는 난민 보호원칙의 약화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된다.

한편 난민조약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우려가 있어 자국을 떠난 사람'만을 난민으로 정의함으로, 경제적 난민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

다. 97년 현재 난민 2천2백72만 명(유엔 난민고등관무관실 집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난민이었다.

우리

주변에선 북한 이탈주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느냐의 문제가 주 현안이 되고 있다. 탈북자 대부분이 중국 등 다른 국가를 경유해 오는데 그 나라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 나라를 전전하거나 강제 송환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겨울에도 북한의 식량 난민 13명은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죽음의 숨바꼭질을 해야 했다.



난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역시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난민의 자발적인 귀환이나 새로운 국가사회에의 적응을 돋는 일은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난민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무력 분쟁, 기아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난민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제15조>
1. 모든 인간은 어느 한 국적을 가질 권리 갖는다.

세계가 한 나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 법 아래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굳이 국적이란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는 여러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무국적자'란 곧 엄청난 불이익을 의미 한다. 투표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물론이고, 보건·교육 등 국가가 자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본적 서비스들에의 접근 또한 제한된다. 즉, 현대사회에서 국적은 사람들의 정신적·물질적 안녕을 위한 필수적 요소인 것이다.

하지만 '국적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제15조 역시 14조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국적을 부여할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국가들로 구성된 만큼 국가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가 부딪힐 때 국가의 권리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또 61년에 만들어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조약'도 '자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이들 중 다른 어떤 나라의 국적에 대한 권리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는 있지만 20개국에도 끊임없는 국가들만이 가입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국적법이 논란이 돼 왔다. '자녀의 국적은 아버지를 따른다'는 조항 때문에 외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한국 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부터 배제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6월 국적법이 개정된 법에 따라 과거 10년 동안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2월 4일(금)

제 12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공안당국 발길 바빠졌다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9명 연행

공안당국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2일 김국태 인천연합 지역위원장이 6

년 전의 민족해방애국전선 관련 협의로 서울경찰청 보안과에 의해 연행된 데 이어(본지 12월 3일자), 3일 인천 연합 산하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소속 회원 9명이 대거 인천시경 대공분실(만수동)로 연행됐다. 연행자들은 국

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들을 연행하면서 피의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가족들에게 연행 사실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공분실측은 변호사의 접견마저 한동안 거부해 가족과 변호인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3일 밤 8시 연행자들을 접견하기 위해 만수동 대공분실을 방문한 김동섭 변호사는 밤 10시까지 접견을 거부당했다. 김 변호사는 "대공분실측이 업무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공분실측은 태도를 바꿔 이날 밤 12시경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했다.

한편, 연행자 가운데 김의숙 씨는 임신 2개월의 몸으로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인천지역의 잇따른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로운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 연행자 명단: 함선규, 김관태, 박종의, 유한경, 이강복, 남겸숙, 김의숙, 김윤광, 신원미상 1명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인권을 옹호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인권신장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국민회의가 부폐방지기본법안에서 특별검사제를 제외하기로 당론을 채택한 가운데, 이러한 결정엔 법무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역사가 지난 수십년간 권리유착과 권리남용으로 점철돼 왔기 때문에 부폐방지법 제정에 있어 특별검사제는 빠져서는 안 될 사항이었다. 하지만 부폐방지법 입안 과정에서 박상천 장관 등 법무부 관리들은 '현 법이 보장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수사권 일원화 원칙의 근간을 훼손드는 위험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반대했고, 결국 이를 제외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법무부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신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국가인권기구 설립 추진 과정에서도 법무부는 국가인권기구를 장악하겠다는 의도 아래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해 왔다. 민간단체들의 비판엔 귀를 닫은 채,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성도 실효성도 없는 '특수법인 형태'로 만들겠다는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들이 불순세력화 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 중이던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입법화에 제동을 건 콧도 법무부였고, 사상전향제 대신 준법서약제도라는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 낸 것도 법무부였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해 법무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문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권한의 문제, 준법서약제도 등에 있어 법무부가 반인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 인권옹호기관으로 책임을 다 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책임자인 박상천 장관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긴급감청제 폐지 요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의견 제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이 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국회의장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각 당 정책위원회로 보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감청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현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영장주의 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긴급감청제도의 폐지 △감청대상 범죄 및 감청사유 축소 △불법감청, 도청에 대한 처벌 강화 △감청허기기간의 단축, 허가대상의 명확화 △감청영장발부 적부심사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바로잡습니다〉

민가협 주최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는 한양대가 아닌 장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⑩ 제16·17조 평등한 결혼의 권리·재산권

◆내가 본 인권선언◆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재산권의 보장에 대한 태도는 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서로 다르며, 한 사회가 체택한 체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기서 재산권의 두 가지 범주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체제나 실정법질서 여하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생태적) 인권으로서의 재산권과 실정법에 의해 창설된 (따라서 보호되는) 재산권이 그것이다.

인권으로서의 재산권이란 첫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고 둘째, 그 권리의 보장 자체만으로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에 어떠한 피해나 부담도 야기하지 않는다는, 모든 인권에 보편적인 본질이나 속성을 가진 재산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보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을 오로지 소유자의 의사에 좌우되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그 소유자의 존엄과 가치 유지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이를 인권이라 부르기는 어렵다. 즉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보편성은 부정되며 그것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일 따름이다.

반면 최소한의 재산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생산수단 이외의 부분에 대한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인권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산권의 형성과정 자체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에 어떤 피해도 야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인권으로서 보장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일반인의 획득 기회를 차단한 상태에서 형성된 재산, 불법적이고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획득된 재산, 모든 이의 생존을 희생한 대가로 특정인(집단)에게 귀속된 재산, 이러한 재산이 인권의 이름으로 보장될 수는 없으며 오로지 실정법이 부여하는 한도 내에서, 그것도 인권의 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 이 역시 인권의 이름으로 보장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는 무조건 그것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재산권의 형성이나 행사가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를 지양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일제국의 대가로 취득된 재산에 대한 상속권 주장이나, 정경유착을 통하여 형성된 대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부정한 재산이나 부정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는 이러한 반인권적 재산상태를 적극적으로 교정할 의무를 지게 된다.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를 권리 갖는다. 이들은 결혼의 기간동안과 그 해소의 시점에 있어 결혼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결혼은 장래의 배우자의 자유를 고려한 완전한 동의에 의해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의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보호받을 권리 갖는다.

16조는 “결혼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동의’에 의해 성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까닭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부모나 후견인 등이 결정한 결혼이 관습상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또 법적으로 여성에게 평등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혼에 관한 ‘남녀간의 동등한 권리’를 못박은 것이다. 16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에 관해 여성은 법적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법을 바꾸거나 폐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민법 제801조는 ‘남자 만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해 남녀평등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선언 16조의 정신은 규범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국제인권 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나, 특정한 종교·문화·사회적 현실에 따라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세계인권선언 체택시 기권표를 던졌던 것도 이슬람의 입장에서 이 조항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제 17조〉

- 모든 인간은 타인과의 연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 갖는다.
-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

17조에는 재산권의 한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개인이 전통적으로 누려온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를 재산권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의 공용이나 짐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기초된 조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언에 뒤이은 자유권·사회권 규약은 전혀 재산권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다수 인권조약들은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이 법적으로 제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대초기에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간주되었던 재산권이 사회·경제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아무튼 세계인권선언이 재산권과 사회경제적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배반적이라 할 것이며, 이는 선언체택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권표를 던진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약물주사 쇼크사’ 의혹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파문

최근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도관의 유서대필, 약물주사에 따른 쇼크사’라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11월20일 밤 11시 20분경 재소자 배 아무개 씨가 독방 내 회장실에서 목을 메 자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과 지역 사회단체들은 교도소측 주장 곳곳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사인에 의혹을 품고 있다.

유족 등이 제기하는 첫 번째 의혹은

유서대필 여부. 교도소측은 사건 직후 배 씨가 딸에게 보낸 편지 등 두 통의 편지를 자살의 증거로 공개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편지의 필체가 평소 배 씨의 필체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망시각에 대한 상반된 진술. 사건 직후 한 교도관은 “목을 뗀 것을 발견했을 때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었고 후송도중인 11시30분경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 씨의 시신을 최초 발견한 예수 병원 의사은 “동공이 이미 풀려있고, 근육도 이완되었으며 사체가 쌌다”며 장시간 전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사체부검 결과,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식후 1시간 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소 내에선 보통 4시30분~5시30분경 저녁식사를 하기 때문에 11시30분경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혹이 불가피해진다.

세 번째 의혹은 배 씨가 사망하던 날 교도소측에 의해 강제로 약물을 투여 받았는지 여부다. 항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복역 중이던 배 씨는 강간사건에 연루돼 또 다른 재판에 계류 혐의로 연행됐었다(본지 12월3일자

1998년 12월 5일(토)

제 126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참조).

이날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1월에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인권위 독립성” 거듭 강조

эм네스티, 법무부 수정안 비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인권법안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피에르 쌔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총장은 우선 법무부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관찰사항이 제한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민간단체들이 제출한 국민인권위원회에 대한 안은 관할, 구성,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쌔네 총장은 “법안의 내용이 국제인권수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특히 △구성과 재정에 있어서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강력한 조사권 △권고의 실효성 등을 강조했다. 또 “세계인권선언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조약들에 담긴 모든 권리들을 관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쌔네 총장은 “한국정부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리기 위해 12월 10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하려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제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인권개혁 프로그램의 신뢰성만 깊이먹을 것”이라며 좀더 충분한 논의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제18조>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의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교리, 전례, 예배, 의식에 있어서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의 간접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국경에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주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흄즈 판사)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다."(볼테르)

모든 정신적, 정치적 자유의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의 진보를 위한 오랜 투쟁의 성과물이었다.

프랑스 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11조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라고 선언했다. 사상의 자유가 역시 사상 처음 인권으로 보장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18조 역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재확인한다. 나이가 76년 발효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사상의 자유는 ① 특정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② 사상을 이유로 차별대우

를 받지 않을 권리 ③ 자신의 사상을 고백할 것을 강제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우리의 경우, 사상의 자유는 여전히 쟁취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극단적 반공이데올로기와 '레드 커뮤니케이션' 등이 국가보안법을 치는 가운데,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우며 일방의 사상만이 허용되고, 그 반대의 사상은 줄곧 탄압 받아 온 것이 바로 우리의 현대시였다.

우리사회에서 반(反) 국가보안법 투쟁은 바로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국가보안법의 '남용'에 반대하는 과거의 소극적인 반국가보안법 투쟁은 '사상의 자유'를 참되게 실현시킬 수가 없다. 우리는 남용될 가능성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상이 문제되는 경우는 그것이 외부로 표명·실천되는 경우이며, 따라서 사상실현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떠나 사상의 자유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길릴레오에게 '지동설'을 내심으로 갖고 있을 자유만 인정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이상, 사상표명 및 실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규약 제19조에서 좀더 구체화된다. 첫째 의견을 가질 권리이고, 둘째 의사표현의 자유, 셋째 '알 권리'다. 여기서 '간접'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진다는 것' 즉, 의견 형성의 자유란 필연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알 권리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내가 본 인권선언 ◆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김영식(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권리팀)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등장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편리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미디어는 정치권력과 시장에 예속되었고, 미디어에 대한 독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축소 억제되는 경향마저 보였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혁명적인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의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혹은 권력간의 투쟁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예측현상은 가장 민주적인 미디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와 미국의 주도로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공간도 상업화된 정보의 유통공간으로 전락되면서 예전에 가졌던 기대를 퇴색시키고 있다. 또한 여러 담론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정보통신망에 의해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검열의 주체(검찰, 경찰, 안기부, 정보부, 정보통신윤리위)는 직접적인 감시와 함께 기계장치(데이터 모뎀 인터넷)를 통해 전자우편·대화 등 개인적인 통신에서부터 전자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통신까지 24시간 동안 검열·감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의 일부를 차단하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공간,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은 인간을 위한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앞둔 시대에 세계인권선언 19조는 하나의 고리타분한 문구가 아닌 인간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더욱 날카로운 무기인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 하) • E-mail:rights@chi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인권법 상정 초읽기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듯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인권법 제정 문제가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당초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 인권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까지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법무부와 여당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조율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9일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와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조찬모임이 예정돼 있으며,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최종안이 확정되리란 관측이 높다.

법무부와 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인권위 위상 등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 조율에 실패했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 통제하에 두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특수법인' 형태를 끌까지 고집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영도 변호사 등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자 20여 명은 지난 5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 기념 토론회

"세계인권선언, 무엇이 문제인가"

◆ 때: 12월 8일(화) 오후 4시-6시
◆ 곳: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1998년 12월 8일(화)

제 1266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인권연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사실로 증명된다면 그 이후의 사태는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막중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도소·농성단 단식 잇따라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지난 5일부터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곳곳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정치수배자들과 명동성당 농성단, 한총련 구국단식단 등은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앞두고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하며 5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의정부·광주·대구·마산 교도소 등 전국 곳곳의 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수들도 5일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직무대행 노수희 씨도 8일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 5일 수도권지역 대학생, 노동자 및 사회단체 인사 6백여 명은 서울역광장에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및 민간통일운동보장 △정리해고 철회 및 민중생존권보장 등을 촉구했다.

.....주요 공판 안내

▶ 12월 8일(화)

· 오지근(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12월 9일(수)

·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속행

▶ 12월 11일(금)

· 노재중(횡령·폭행·협박 등, 양지마을) 오후 3시, 대전지법 231호, 속행

인권영화제 성황리 개막

<칠레전투> 등 만원사례, 10일 폐막식

제3회 인권영화제가 지난 5일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개막식이 열린 학술문화회관 예술극장은 5배 여 관객들로 빨디딜 틈 없이 붐볐다.

개막식에서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제2회 인권영화제가 상영장 봉쇄·단전·발전기 반입·압수수색·거리상영·구속 등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오늘 많은 이들의 격려 속에 다시금 제3회 인권영화제의 막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내건 인권영화제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감회어린 목소리로 밝혔다. 서 집행위원장은 "앞으로도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96년 가요검열제 철폐 때까지 6년여 간을 싸웠던 가수 정태춘 씨도 개막식 축하공연에 앞서 "이제 사전심의제는 사라졌지만, 사후에라도 내용을 문제시하고 간섭하고자 하는 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미완"이라며 아직도 남아있는 싸움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막작 <레지스탕스>는 군대와 미제국주의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아이티 민중들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전달해 많은 관객들이 밤 11시가 넘도록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7일까지 3일째 영화제가 진행된 가운데, <빅원> <치아파스> <IMF 한국, 그 1년의 기록> 등에는 객석보다 많은 수의 관객이 물려 바닥에 앉거나 서서 관람하는 관객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번 영화제에서 최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칠레전투>도 매진을 기록한 채 밤늦은 시각까지 관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칠레전투>는 1, 2, 3부로 나뉘어 3일간 상영된다.

관객들은 또 <특별기획전> '신자유주의의 도전하는 민중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꿈의 대륙'이라 알려진 미국에서 실제론 많은 사람들이 해고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는 <빅원>을 보면서 관객들은 탑워스런 자본가들의 허를 치르는 감독의 기지에 연신 웃음을 터트렸다. 실직노숙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 <IMF 한국, 그 1년의 기록>를 제작한 박종필 감독은 영화상영 후 가진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서 "우리 사회엔 노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시선이 지배적"이라며 "이 작품을 통해 노숙자 우리 이웃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인권영화제는 10일까지 계속된다.

◆ 오늘의 상영작

- ▶ 3시 : 5월광장 어머니들
- ▶ 4시-6시 : <토론회> 세계인권선언 무엇이 문제인가
- ▶ 7시 : 세계인권선언/황무지
- ▶ 8시40분 : 나눔/평화가 찾아올 때까지/칠레전투 2부
- ◎ 인권영화제 후원회원 계속 모집합니다. (741-5363)

주/간/인/권/호/름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 11월 30일(월)

대구경북지역 인혁당 진상규명 대책위 빌족/광주지검 공안부가 9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 회원 김동성 씨 등 5명에 대해 세번째로 공소장 변경하자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 일어/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인들, 제주 4·3 진상규명과 화해를 위한 종교인대회 개최

◆ 12월 1일(화)

국민회의, 부폐방지기본법안에서 특별검사제 도입 제외/인권·사회단체,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50년 국제연대 집회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노동부, 기업의 인수·합병시 두 기업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한 복수노조 허용키로/영화인 1천여 명, '스크린쿼터제 촉소 반대' 거리 시위 뒤 명동성당 내 농성 돌입/아내살해 누명 쓴 30대 남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아들을 자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처분을 받은 40대 가장, 또다시 가족에게 폭력 휘둘러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12월 2일(수)

정부, 한미투자협정체결과 관련 스크린쿼터 92일 촉소 안 마련/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특검제 철회에 대해 비난/부산 남부경찰서 용호3파출소 소속 경찰관, 학교매점 털더 10대에 총격/유네스코, "인류를 보존하고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유전공학과 복제에 대한 세계윤리규약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

◆ 12월 3일(목)

인천지방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족사랑청년 노동자회 9명 연행/무료급식 받는 아이들,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는 것으로 드러나/국내외 사회단체와 영화인들, '스크린쿼터 촉소 반대' 성명 발표/시민·환경단체, 팔당호대책·그린벨트 협약 등 환경정책 후퇴에 반발/휴먼라이츠워치, 미국 인권정책 비난

◆ 12월 4일(금)

실직자 이 아무개(50) 씨, 부산 태종대에서 분신자살/대법원 민사3부, 수갑과 포승에 묶여 독방에 수감됐다가 자살한 재소자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져야 한다고 판결/국회 예결위, 거창양민학살 희생자 합동묘역용 예산 전액 삭감/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김국래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영장심사 거쳐 석방

◆ 12월 5일(토)

한총련 대학생들, 명동성당에서 구국단식 돌입/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추위, "국가인권기구 독립성 보장"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캠페인 벌여

◆ 12월 6일(일)

정부·여당, 인권법에 의문사 진상규명을 명시하고 이를 인권위원회의 전담기구에서 조사하도록 하기로/국민회의와 자민련, 전자주민카드 백지화하기로/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3명 영장기각으로 석방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제20조

-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집회·결사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20조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제21조 역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의사표현의 일반적 통로인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집회·결사가 갖는 의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가진자, 힘센 자의 언론'만이 존재하고 국기권력에 의해 언론의 기능이 왜곡될 때, 집회나 결사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표현, 반영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선언은 집회의 자유에 '평화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일각에서 공공 도로상의 연좌집회를 놓고 '법적 평화를 해치고 통행인에게 심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설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없는 한 평화적 집회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한편, 선언을 만들 당시 '시위의 자유'를 명문화하느냐의 문제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초고에는 집회, 모임, 기두행진과 시위의 자유가 구분되어 있었으나, 선언에서는 집회의 자유로만 표현됐다. 선언 체택에 기권표를 던졌던 소련은 "시위의 자유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 가지 이유로 들기도 했다. '이동하는 집회'에 해당하는 시위는 평화적인 한 집회와 마찬가지의 권리로 인정된다.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결사' '평화에 반하는 결사'를 제외한 일체의 결사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집회의 자유를 부정당하는 대표적 집단이 존재한다. 바로 대학생들이다. 노동자의 집회, 미전거민의 집회장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전투경찰들은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집회 참석을 금지한다. 경찰이 밝히는 이유는 '노동자도 철거민도 아닌 너희들이 왜 여길 왔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남의 집회에 온 만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틀림없다'는 억지와 함께 집회참가를 의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학생들은 연행의 대상이 된다.

89년 개정된 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여전히 '집회·시위의 자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형식은 사전신고제이나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아무리 '평화집회' 다짐을 해도 '폭력화할 우려'라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집회는 금지된다. 그밖에 스야간 또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금지스집회, 시위장소에서 경찰관의 자유로운 출입 등의 규정 역시 집회와 미전거민의 권리로 인정되는 독소조항들이다.

◆ 제21조

- 모든 인간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모든 인간은 자국 내의 공공기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갖는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리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투표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서 표현된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각종 차별에 맞서 확대되고 행해져온 권리다.

인권의 수호신인 양자임해은 미국에서 조차 백인 남성에 대한 보통선거권제도는 이미 1830년대에 확립됐지만, 여성의 선거권은 근 백년이 지난 20년에야 비로소 인정되었다. 흑인의 선거권을 제한하던 합법적 장치들도 70년대에 와서야 사라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 행사'에 있어 국민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우리 현대사다. 95년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 20-30대 젊은 층의 65%가 진보적 이념의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두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적 후보들은 불과 1-2%의 득표율에 그치고 말았다. 국민의 '의지'가 선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결성, 이를 통한 진보적 '의지'의 반영은 여전히 우리 앞에 숙제로 남아 있다.

정치 참여의 권리인 '모든 인간의 권리'가 아니다. 연소자나 금치산자 등은 법률에 의해 그 권리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령자와 전파자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정권의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의 선거연령 제한선(만 20세)도 우리의 교육·문화 수준, 정치의식의 향상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cholian.net) · E-mail:rights@cho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인권위 올바로 만들어달라 사회원로 12명, 대통령 앞 건의문 발표

난항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립 문제와 관련, 사회원로 12명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건의문 형식의 입장장을 표명했다.

9일 이돈명 변호사 등 사회원로 12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가 '인권 존중의 사회'라는 대의를 저버리는 가운데 제자리를 땀들고 있는 게 아니냐"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 무사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로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 위원회 △국제사회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인권위원회 △아시아 나라들의 모범이 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호소했다.

건의문 발표에 참여한 원로는 강만길 (고려대 교수) 고은 (시인) 김관석 (목사) 김성수 (대한성공회 주교) 김찬국 (상지대 총장) 박형규 (목사)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언연합 공동대표) 유현석 (변호사) 이돈명 (변호사) 이세중 (변호사) 이효재 (여성운동가) 한완상 (전 방송대 총장) 씨 등이다.

여야 의원 "독립기구로" 자민련 의원은 법무부 지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회인권포럼에서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은 "특수법인 형태로는 인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는 그 책임에 맞게 독립된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미경 의원도 "국가인권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는 박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가 하면,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반대하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부폐방지법안에서 제외시키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다(본지 12월 4일자 참조).

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법무부가 주장하는 특수법 인안은 법무부의 산하기관화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민련의 함석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면 판교화되기 쉽다"며 법무부측 입장을 지지했다.

'박상천 장관 융퇴하라'

국승21, 여의도에서 규탄집회

박상천 법무부장관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진보정당을 준비하는 국민승리21」은 8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여의도 집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 장관의 반개혁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세계인권선언'과의 만남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토론회

제3회 인권영화제 특별행사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토론회가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8일 열렸다. '세계인권선언, 무엇이 문제인가'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일반인들에게 아직 낯선 '세계인권선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단상의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객석토론에서 고3 여학생은 세계인권선언 제26조 (교육의 권리)와 관련, "우리에게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학입시만 중시하는 인권부재의 교육이 '왕따'와 학내폭력 문제 등을 야기시켰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 학생은 "요즘엔 학교에서 메이크업을 배우고 있다"며 "이런 시간을 이용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객석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인권유린 방지' '평화의 권리' '동성 간의 결혼 인정' 등도 세계인권선언에 보완·추가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1998년 12월 9일(수)

제 126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제22조>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22조는 세계인권선언의 두 번째 주춧돌로서 23~27조에서 명시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선언 22조에서 간단하게 표명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는 25조에서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보장제도로 구체화된다.

22조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모든 사람이 '사회적 일원'으로서 당연히 누릴 권리로 명시하여 개인의 복지를 사회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즉, 개인의 복지의 보장은 우리를 누구나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조건에서 파생되는 결과이며 정부는 그 적절한 조건을 모든 시민에게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개인의 복지의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많은 국제문서에 녹아 있으며, 이는 정부의 행동과 책임의 범주의 편차가 큰 가운데서도 모든 국가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원칙이다. 이러한 의무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관련 국제규범은 자국민의 복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세계 전반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노력에 참여할 의무를 함께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선언과 같은 국제규범에서 받아들여진 보편적 의무가 교리를 감추기 쉽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이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의존한다는 제한점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정부는 자원의 한계를 들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보장

하라는 요구의 근거는 없다고 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인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입장은 또한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든다. 즉, 권리가 법에 의해 집행될 수 없다면 전혀 권리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이용 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보다는 행정적 프로그램의 확립에 달린 문제로 보는 것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의의

한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자유를 '간섭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국가가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식의 명분으로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의도적인 강제'일 뿐이라고 파악한다.

그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선언에서 명시된 이후 유엔은 모든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결의안을 거듭 채택하고 재확인해왔다. 어떤 한 권리의 침해는 모든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되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가 이분법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은 그러한 위협의 빌미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자유'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경제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수준에 머무르는 왜소한 것이 아니다. 자유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자유를 통해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인권의 범주에 넣기 위한 투쟁의 동력이었으며 결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치적 인정을 성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권의 역사 속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간의 통상적인 이분법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



어설 것이다.

이외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하는 데에는 거의 경제적 자원이 필요치 않다고 흔히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고문'을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입법조치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 이상의 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부담이 정부에 주어지기 때문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즉각적이고 완전히 보장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cholian.net) · E-mail:rights@cho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군사독재의 망령 아직까지

20년 고문후유증 앓다 투신 자살

9일 벽제 회장터에선 전두환 군사독재의 고문 희생자 한 사람이 한 줌의 재로 변해 날아갔다. 고인은 고문 후 유증으로 20년 가까이 고통 속에 살아 오다 7일 오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길상(39) 씨. 고인의 자살은 딸의 돌진치를 치른 지 일주일만의 일이라 주변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을 안겨줬다.

자신이 살던 상계동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이길상 씨는 80년대 초 학생운동을 하던 중 수 차례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아 왔다. 경희대 사학과 79학번인 이 씨는 재학 당시 학생운동 씨클인 사회과학연구회에서 활동을 했다. 이 씨가 처음 연행된 것은 80년 5·18민중항쟁 직후, 자신의 자취방을 유인물 제작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학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던 이 낮아 곧바로 풀려난 이 씨는 같은 해 가을에 이른바 '찌라시 도장사건'으로 청량리경찰서에서 1주일간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때 이 씨는 심하게 고문을 당하는데, 수사관은 이 씨의 동료가 고문 받고 만신창이가 된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씨는 81년 '화립사건'에 연루돼 다시 연행됐으며, 당시 며칠간 조사받았는지 또 얼마나 고문당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평소 활달한 성격이던 이 씨는 그뒤 처음으로 청량리정신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됐고 이후 고문후유증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한때 이 씨는 교육대학원에 다니면서 교사의 꿈을 갖는 등 삶의 의욕을 보인 적도 있지만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아 오며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했다. 특히 2년 전 이 씨의 여동생도 같은 이유로 투신자살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연행된 여동생은 미친가지로 심한 고문을 당했고 그 후 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남동생 이 귀상 씨는 "군사독재정권의 폭력에 여동생도 잃고, 형도 잃었다. 몇 분 받아낸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는 없지만 너무 억울해 어떻게 서든지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심경을 토로 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귀상 씨의 작은 바램도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이 씨 가족들 외에도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으로 지금까지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개인과 가족들만이 고스란히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가해진 고문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고문피해자들의 치유가 이뤄질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수사에 고통 호소

민청노회 회원, 재연행 수사도

국가보안법 상 적법성에 의한 구속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들이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되는 조사 때문에 병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12월 10일(목)

제 126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구속전 치질수술을 받았던 유한경 씨는 장시간 의자에 앉은 채로 조사를 받아 항문 출혈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관태 씨도 역시 항문에서 피를 흘리는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3일 연행된 9명의 민청노회 회원 가운데 남겸숙 씨등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그러나, 남겸숙 씨는 풀려난 지 이를만인 7일 오후 인천시경 대공분실측에 의해 재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인권법 제야의견 수렴"

인권법 발표 미뤄질 듯

오는 10일 인권의 날로 예상했던 인권법의 발표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 위상과 관련 "제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당정이 단일안을 만들되 유엔권고 결의안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정관계자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공개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 조찬모임에 박상천 법무장관,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차수명 자민련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 했으며, '특수법인' 형태를 고집한 법무부 및 자민련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회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3회 인권영화제 폐막식

- 때: 12월 10일(목) 오후 7시
- 곳: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 폐막작 '칠례, 저울 수 없는 기억'
- 오후 7시 30분.
- 폐막작에 이후, '칠례전투 제3부'
- 영화 상영 이어집니다.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①

인권 보장의 주춧돌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권을 거부하기 마련이다. 자기의 인권은 목숨걸고 지키려하지만 남의 인권에는 관심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수천 년의 인류역사에 비해, 세계인권선언이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졌고, 지난 50년 동안에도 사실상 무의미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 소수만이 누리던 특권이었던 권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하는 보편적인 권리로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 표어 이상으로 귀담아 듣는 사람도, 그 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실현시키려는 국가도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없는 지구사회에서, 그래서 적자생존의 원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인간사회에서, 인권의 거부는 사실 불가피한 것이다.

나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 혹은 내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은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기 마련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마찰을 해결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나와는 이해관계가 다른 경쟁자 혹은 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결국 인권의 논리는 생존의 논리와 힘의 논리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적어도 세 가지, 즉 인권 역사의식, 인권교육, 권력분산이 인권보장의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인간이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깨달으려면 역사인식을 필요로 한다. 인권의 탄압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깨닫고,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역사적 의지가 필요하다.

50년 전 세계인권선언이 나오기까지 인류는 수 천년의 인권탄압의 역사를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쓰라린 인권탄압의 경험이 있지만,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힘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아직 부족하다. 물론 심각한 정치적 힘의 불균형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인권보장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야 세계인권선언 1백주년에는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영화제 또 '사전심의' 시비

제3회 인권영화제가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인천·제주·강릉 등 몇몇 지역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화제 개최를 문제삼고 나섰다.

수원시, 인천 남구청, 제주시, 강릉시 등은 각각 10일부터 열릴 예정인 인권영화제에 대해 공연법에 따라 심의 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연법 위반에 해당돼 영화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지역 인권영화제 주최측은 "서울에서 아무 문제없이 인권영화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영화제 지역 상영일정

- 강릉 (12월 11일 - 13일) 곳: 인당동 성당 교육관
- 광주 (12월 10일 - 12일) 곳: 가톨릭대학 사회교육원 강당
- 구리남양주 (12월 19일 - 21일) 곳: 구민교회
- 군산 (12월 11일 - 13일) 곳: 군산 한겨레 문화센터
- 부산 (12월 11일 - 13일) 곳: 가톨릭센터
- 수원 (12월 10일 - 12일) 곳: 대한성공회 교동 교회, 수원민예총
- 안양 (12월 10일 - 12일) 곳: 안양 전진상 사회복지관
- 원주 (12월 9일 - 12일) 곳: 원주 참여자치시민센터
- 인천 (12월 10일 - 13일) 곳: 인하대학교 강당
- 전주 (12월 5일 - 9일) 곳: 전북대학교 학동강당 103호
- 제주 (12월 10일 - 12일) 곳: 제주 YWCA 일하는 여성의 집 6층 강당
- 청주 (12월 18일 - 23일) 곳: 청주 동양문화센터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이석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8년 유엔이 인류의 염원을 담아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한지 반세기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인격체로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 가치 있는 생활을 할 권리(生存權)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천부인권이라 일컫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권, 부당한 신체적 구금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생명권, 국가와 사회를 직접 움직이는 시민의 대표가 되거나 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참정권, 물질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 등이 포함된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지는 과학적으로 1백만 년이 경과하였다고 보고되고 있고, 오늘날과 비슷한 국가 체제가 만들어진지도 길게는 2천년, 짧게는 수 백년이 지났는데도, 겨우 50년 전에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보편적 원리를 인류가 확인한 것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몰라도 적어도 인권 분야에 있어서만은 인류의 이성이 점으로 더디게 발전해 왔다는 느낌이 든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보다 구속력 있는 법적 규범이 되기 위하여 그뒤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밟아왔다. 대표적으로 60년대 후반에 국제인권조약을 결의한 뒤에, 악칭해서 여성인권조약, 아동권리조약, 고문방지조약 등을 체결해 왔다. 이밖에도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난민조약,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등 비교적 넓고, 세세한 범위까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인권관련조약을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87년의 6월 항쟁 이후 유엔의 회원국이 되는 한편 국제인권규약에의 가입을 필두로 각종 국제인권기구에 구성원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유엔이 각 나라들에게 각종 인권조약의 가입을 촉구하고 체약국의 범위를 확대해 온 가장 큰 이유는 각 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정신에 따라 각 나라에서의 인권 수준을 최소한의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각 가입국의 정부는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승인한 보편적인 인권규범에 따른 간여를 받게 되었으며, 가입

적하는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제인권기구가 이처럼 각 체약국의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까닭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국가권력'이란 말로 인권침해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최근의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에 의한 혹독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런 탓으로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깊게 체험해 온 우리로서, 오늘 공포된 지 반세기에 이르는 세계인권선언의 올바른 의미를 되새겨보는 일은 뜻깊다.

정부가 수립된 지 반세기가 되는 금년은 특히 세계인권선언에 걸맞게 우리의 인권수준이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계기를 맞이했다. 즉 정부가 오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 정부의 공언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권선언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훌륭한 인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드는 일이다.

국가권력의 집중에서 오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외없이 권리분립의 원칙을 체택하고 있듯이, 국가권력기구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권문제에 관한 한 그에 버금가는 위상과 권한을 가진 별도의 국가기구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여전히 국가권력의 강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특수법인의 형태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국가권력의 세계적 연합체인 유엔이 체택한 세계인권선언의 이념에는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인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 명실상부한 인권보장국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가권력'에 의한
혹독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
오늘 공포된 지
반세기에 이르는
세계인권선언의 올바른
의미를 되새겨보는
일은 더욱 뜻깊다**

국의 시민은 인권문제에 관한 한 나라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세계에론에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한 각종 인권조약은 각 체약국의 정부에 그 나라가 인권조약에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국의 시민이 직접 국제인권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92년 국제인권조약이 부과하는 최초의 정부보고서를 국제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고, 이후 각 인권조약에 따른 독자적인 정부보고서를 그때그때 제출해오고 있다. 이들러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연대하여 이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2월 11일(금)

제 126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정부는 기념행사를 갖는 등 축제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 등의 인권탄압제도에 대한 항의집회와 단식농성이 잇따랐다.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와 한총련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준법서약제 철회, 한총련·범민련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했으며, 오후 1시엔 대학생 40명의 구국단식 농성단 결성식이 열렸다.

이어 민권공대위는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가졌으며, 흥근수 목사(민권공대위 대표) 등 10여 명이 명동성당에서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 탑골공원에서는 오후 2시부터 민가협과 유가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이 공동집회를 갖고 '국보법 철폐와 의문사 진상규명, 양심수 석방, 정신대문제 해결, 소파협정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한총련 농성단, 조계사 정치수배자 농성단,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전국 교도소 양심수 등이 같은 요구를 내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연합 노수희 상임대표 직무대행과 서울연합 이천재 공동의장, 부산대, 영남대, 한양대, 명지대, 충남대 소속 대학생들도 동조단식농성을 벌였다.

비뀌면서부터였다. 지난해 7월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을 낙찰받은 신한건설은 느닷없이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간 이 곳에서 주거와 생업을 함께 해온 영세상인들이라, 건물에서 나갈 경우 살길이 막막했다. 주민들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자, 신한건설은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법원은 유진상가에 대한 신한건설의 소유권을 재확인해주면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도 면해졌다. 이제 주민들은 임대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판이다. 주민들은 "동절기에는 절대 강제철거가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상기하며 더욱 분노했다.

현재 주민들은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영구임대 상가와 재건축 기간동안 살 수 있는 가수용 상가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빠른 시일 내 다시 철거하려 오겠다고 공언한 터라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모르나?"

대학교수, 불법검문 곤혹

경기도 가평에 사는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씨는 '인권의 날'인 10일 큰 곤욕을 치렀다. 오후 1시 40분경 기차를 타기 위해 가평역에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과 만난 것이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십시오." (경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주세요." (장 교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잘 모릅니다." (경찰)
"오늘은 무슨 날인지나 대체 알고 계시오?" (장 교수)
"모릅니다." (경찰)

이날 불법검문은 기소증지자 일제검거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적법한 절차를 지켜달라"는 장 교수의 거듭된 요구에 경찰은 "당신이 떳떳하다면 주민증만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소리를 높였다. 장 교수는 이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단식하던 양심수 실신

의정부교도소

의정부교도소에서 13일째 단식을 진행중이던 김동석(전 충청총련 의장)씨가 교도소 보안과장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머리로 벽을 치는 등 자해를 시도하다 실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는 김 씨를 비롯해 양심수 4명이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제 철회,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단식농성 중이다. 단식에 들어간 뒤, 이들에 대한 처우는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이들의 청원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하루 3번 제공해야 하는 식수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서신 통제·신문기사 삭제가 더욱 심해졌을 뿐 아니라, 양심수들이 수감된 방의 열쇠를 보안과장 혼자 관리하기 시작해 방에서 응급 조치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일선 교도관들은 전혀 알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인권단체들은 오늘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해 김동석 씨 등 양심수들을 합동접견하고 교도소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병역면제자 죄인 취급

합동수사본부 밤샘 조사까지

최근 병역비리사건과 관련해 군·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병역면제자가 죄인 취급을 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7년 허리디스크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던 이진실(23·감신대 4년) 씨는 지난 3, 7, 8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후암동에 위치한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수사관들의 고압적 심문 때문에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세번째 조사를 받던 8일엔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밤샘 조

사를 받았다고 이 씨는 밝혔다. 또 합동수사본부측은 조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MRI, CT촬영기록 등)를 이 씨가 직접 발부받아 오도록 함으로써 시간적, 물질적 부담을 안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씨를 조사한 은성욱 검사는 "개인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15 준법서약 출소자' 25명은 9일 준법서약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인권의 날' 요구 봇물

민주노총 등 각계 성명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 등 각계 민간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해 '양심수 석방' 등 시급한 인권현안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독립된 국가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면복권 △4백77명에 달하는 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수배해제 △반개혁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해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경제위기 상황일수록 인권은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경제위기로 첨예화되는 노동권 보호 등을 요구했다.

또 50여 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국보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범민련·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및 공안탄압 중단 △특별검사제 도입 및 수사기관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민중생존권 보장 △인권유린 자행하는 공안기관 해체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즉각 해임 등을 요구했다.

신상석 목사, 문정현 신부 등 전북지역 사회인사 2백명은 10일 오전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양심수 석방 △준법서약제 즉각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청년진보당은 "인권대통령을 자처한 현 정부의 인권정책은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말로만 치장된 현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외국인노동자 캠페인 벌여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인권단압 국으로 비난을 시웠던 우리 정부에 대해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9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캠페인에는 20여 명의 외국인노동자와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조약은 한국 내 이주노동자 인권 및 해외에 진출한 한국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제적 정체"라며 정부는 즉각 이 조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0년 비엔나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필리핀과 스리랑카를 비롯한 9국이 비준하고 있다.

인력의 수출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손실과 책임을 우려해 비준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회 각계 인사 3백여 명은 이주노동자 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준법서약 위헌이다

8·15 출소자 25명, 헌법소원

준법서약 폐지와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8·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제23조〉

- 모든 인간은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
- 모든 인간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모든 일하는 인간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존을 보장해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해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4조〉

-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

◆ 내가 본 인권선언 ◆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언론은 외국 인권단체가 발표한 한국의 인권지수를 앞다퉈 발표하고, 고문 등 국가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김대중 정권도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를 시도하고 있고, 대표적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을 대신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렇게 떠들썩한 '인권'의 호황(?) 속에서, 은폐되고 있는 것이 있다. 가장 기본적 인권 문제인 노동권이 그것이다. 98년 한국사회에서 '일할 권리' '생존할 권리', 그리고 '단결해서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 등 노동권민족 압살되고 유린된 것은 없다. 그것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총체적 개혁'의 이름으로 말이다. '구조조정'이라는 허울 속에 수십만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고, 4백 만명이 넘는 실업자들(민주노총, 98.8.통계)이 아무런 사회보장제도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로 내몰렸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대량실업에 따른 고용불안은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생존만이 아니라, '아직 짤리지 않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민주적 권리'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98년 들어 80%가 넘는 사업장에서 임금동결과 임금삭감, 임금체불이 강요되었고, 작업장에서의 노동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무직, 제조업을 망라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상 개악을 통한 노동조합의 무력화, 작업장 노동통제의 강화는 지난 10여 년간 험난한 투쟁을 통해 생겨난 협정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은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만이 아니다. 정리해고의 칼바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수 밖에 없었던 노동자들 중, 5백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거나 수배되었고, 아남산업이나 만도기계 등에 대한 경찰력 투입처럼, 노동자의 '파업권'까지 유린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인 '전교조 합법화'와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도 정부 내 견해 차이로 아직까지 법제화조차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98년,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21세기의 진정한 인권개념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로 정의돼야 한다"(김대중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대회 메세지」 가운데)는 선언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노동권에 대한 확고한 보장에 바탕하지 않는 인권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cha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20대 청년 가혹수사 의혹

'조직폭력배' 혐의…본인은 부인

경찰이 한 청년을 '조직폭력배'로 엮어 구속하기 위해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 청년의 부모는 아들의 무죄를 호소하며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 남원에 살고 있는 양일동(22) 씨는 지난 11월 22일 조직폭력배 '신흑장미파' 관련 혐의로 전주북부경찰서에 의해 연행된 뒤 구속돼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수번 292). 그러나, 양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심하게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의 부모는 아들이 연행된 지 6 일째 되는 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들의 신체를 사진촬영했다. 이 사진에 따르면, 양 씨의 팔 다리 등 몸 여러 곳에 심한 명자국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세면장에 끌려가 얹어맞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씨의 부모는 "아들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불구속으로 풀려난 사람이 11월 24일 '일동이 형이 너무 많이 맞아 죽는 줄로 알았다.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영화제 성원 감사합니다

◎ 지난 5일 개막된 제3회 인권영화제가 1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인권영화제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영화제 해설책자와 뱃지, 포스터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오. (741-2407/741-5363)

1998년 12월 12일(토)

제 127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국본)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진주, 광주, 전주, 청주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정리해고 저지! 생존권 사수! IMF반대 민중대회'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국본은 지난 10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다가오지만, 정치개혁·재벌개혁·사회개혁·언론개혁·행정개혁 등 어느 하나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와 의사를 집약한 올바른 사회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본은 당면한 5대 요구사항으로 △ 정리해고 중단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교원노조 법제화 인정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및 의보통합 보장 △경제청문회 개최와 재벌총수·정치인·관료 처벌 및 부정축재재산 환수 △구속자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제시했다.

동티모르 인권상황 악화

재판없는 처형·실종 잇따라

인도네시아 식민지인 동티모르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한 인권단체가 최근 동티모르에 대한 긴급구명운동을 호소하고 나섰다. 홍콩의 '민중의 진보를 위한 아시아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10일부터 16일 사이 50명의 동티모르인들이 동티모르 남부 알라스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군대에 의해 재판없이 처형당했다. 11월 13일엔 타이투다 마을의 지도자인 비센트 씨가 4명의 짚은이와 함께 체포된 뒤 총살됐으며, 시신은 군인들에 의해 매장됐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군에 의해 살해된 50명의 동티모르인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단지 14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0명의 동티모르인들이 인도네시아 군에 의해 체포당하거나 실종됐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의 구금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외부와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다.

◆ Asian Center for the Progress of Peoples: E-mail - accp@hk.super.net
전화: (852) 2712-3989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⑯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제25조>

-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의 결핍의 경우에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어린이는 적서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모든 인간은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천명하는 동시에 이러한 것들을 구비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합한 생활수준'이란 무엇인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조약(A구약)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쓸 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 그리고 의료와 교육을 의미한다고 답한다.

A구약 11조는 '굶주림에서 벗어날 권리'의 보장을 위해 가맹국들이 각자 또는 국제협력을 통해 식량의 생산·보존·분배의 방법을 개선하고 공정한 세계식량분배구조를 확립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2조는 건강권의 실현을 위해 가맹국들은 사산율과 유아사망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전염병과 직업병 등의 예방 및 치료,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창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약속은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반영돼 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이 곧 개인의 탓으로 돌려지는 현실 앞에서 이러한 조항은 낯설기만 하다. 정부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선진국의 1/4 수준에도 못 미치며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6개 중 진국에 비춰볼 때도 1/3 수준에 불과하다. 주거·의료 문제도 거의 개인적 책임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다. 그 외에도 최상위계층의 수익은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재계는 구조조정과 고용유연화만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실업문제를 자동해결할 수 있으며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앞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시도한 남미의 경험은 시장에 대한 믿음이 결국 환상임을 증명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할 때 그 결과는 빈부격차의 심화일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국가의 계획과 실행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다른 나라의 경험은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이를 돋기 위한 새로운 질서의 창출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요소다.

◆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렬(환경운동연합) 생명이 갖는 권리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가 희망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속출, 산림훼손에 의한 사막화 현상, 생물종의 급속한 멸종, 환경호르몬 물질에 의한 종보존의 위협 등 인류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들이 허다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전자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슈퍼나코틴 담배가 수십 년 동안 비밀리에 제조, 유통되어 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는 인류에게 장미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만 같았던 유전공학이 도리어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내일이면 1천여명의 해남 주민들이 서울로 올라온다. 혜발전소 건설예정후보지 3곳(해남, 울진, 삼척) 중 한 곳을 연내에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산업자원부 앞에서 반대집회를 하기 위해서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또 영월 동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수십 차례 상경집회를 가진 바 있다. 평생을 살아온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아무소리 못하던 때가 있었다. 혜발전소를 지어도, 댐을 지어도, 소각장을 지어도, 골프장을 지어도 침묵해야 했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 이제는 자신들의 생각을 큰 목소리로 말한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 인간의 권리만을 주장하던 시대는 가고 있다. 이후에는 인간의 권리만이 아닌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의 권리'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이제는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는 곧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생각이다. 자연을 도구화, 대상화하고서 인권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의 권리'를 말하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비장애인 어린이 농아원 수용

에바다, 보조금 수령·가족 인도 요청 거부

비리재단으로 지탄을 받아온 에바다 농아원(농아학교)이 장애가 없는 어린 이를 농아원생으로 수용하면서 보조금을 태내는 등 최근까지도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구속수사 뒤 집행유예로 풀려 난 최실자 전 원장이 여전히 재단운영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평택시청과 에바다재단측의 공문에 따르면, 에바다농아원은 지난 93년부터 최철수(5·가명) 어린이 등 비장애인 2명을 농아원에 수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신상을 관할 관청에 허위로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아원측은 96년 11월 철수 군 등 2명을 청각·언어장애자로 신고해 평택시측으로부터 입소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얼마 뒤 농아원 비리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는 농아원생들의 농성이 시작되면서 두 어린이는 입소자 명단에서 빠졌다. 이후 올해 1월 에바다 재단측은 두 어린이를 다시 농아원생으로 등록했으며, 이를 통해 쇠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 등의 보조금을 태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에바다재단 측은 철수 군을 데려가기를 원하는 가족들의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 지난 12일 철수 군의 할머니(충남 서산)와 어머니가 직접 에바다농아원을 방문하기도 했으나, 농아원측은 93년 철수 군의 어머니가 작성했다는 '포기각서'를 들먹이며, 아의 인도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바다농아학교 내에는 최실자 전 원장의 감독 또는 목인 아래 건물 외벽마다 "이성재 의원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혀 있으며, 학교 측은

재단에 반대해온 농아학생과 교사들의 출입을 10여 일째 가로막고 있다. 이 성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에바다 이사장으로 선임해 줄 것을 평택시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평택시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출입을 봉쇄당한 농아학생들은 오늘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바다농아원 사태는 지난 96년 11월 재단비리에 항의하는 농아원생들의 농성이 시작되면서 비롯됐으나, 비리를 저지른 운영진이 계속 재단 운영권을 장악하면서 현재까지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국민 건강도 '시장'에?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

국립목포결핵병원이 결국 민간위탁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립목

1998년 12월 15일(화)

제 127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포결핵병원에 대해 99년 상반기엔 국고로 운영하되, 하반기부터 민간위탁 할 것을 잠정 결정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간위탁 방침에 반대하며 목포결핵병원의 국고 운영을 요구했으나, 예결위는 정부 방침대로 민간위탁을 결정했다. 여기엔 행정자치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2월부터 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벌여왔던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중의 건강권을 위해 어렵게 쌓아온 환자와 양심있는 제 사회단체는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 6월 환자들의 상경투쟁 이후 '공대위'는 명동성당 농성을 비롯해, 국회 앞에서 두 달여 간에 걸친 시위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명동성당에서 철수한 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농성을 벌여오다, 최근 인천의 한 사회단체 사무실로 농성장을 옮겼다.

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목포에 가서 결과를 보고하자 환자들이 많이 실망하는 모습이었고, 예전에 같이 싸우던 사람 가운데 일부는 퇴원하고 일부는 죽기도 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결핵환자는 공식적으로 40만 명에 달하며, 전남지역의 경우 매년 7만 명의 환자 중 4백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공판 안내

- ▶ 12월 16일 (수)
 - 박효근 외10(국보법, 국제사회주의자그룹 사건)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 이범교(국보법 친양·고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 12월 17일 (목)
 - 권정복 외3(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5호, 10단독, 선고
 - 김종박(국보법 친양·고무등, 안민청 사건) 오후 3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속행
- ▶ 12월 18일 (금)
 -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선고

양심수 단식농성 정리

옥중 단식 불상사도 따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진행됐던 각지의 단식농성이 14일 전후로 마무리됐다.

지난 11월말부터 시작된 이번 단식농성에는 마산, 대구, 광주, 부산, 홍성, 영등포, 의정부, 순천, 춘천, 청주여자교도소 등 전국 각지의 옥중 양심수들과 40여 명의 한총련 단식농성단, 조계사 정치수배 해제 농성단, 8·15준법서약 출소자 농성단,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단 등이 참여했으며, 전국연합 상임의장 직무대행 노수희 씨등 재야단체 인사들이 동조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집단 단식농성은 지난 10일이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데다 올해 안으로 인권법이 상정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더 이상 국가보안법과 양심수 문제 등 과거의 유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요구 아래 진행되었다. 그러나, 광범한 규모와 장기간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식농성은 별다른 사회적 반향을 불러오지 못한 채 끝나는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오는 1월 임시국회에서 인권법이 논의되는 시기를 전후해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등에 대한 요구는 다시 한번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단식농성에 참여한 양심수 가운데 교도소 내에서 쓰러지거나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에 광주교도소에서 14일째 단식을 진행했던 김영정(조선대 91학번) 씨가 탈진증세를 보여 동광주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김 씨는 병원치료 뒤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민중대회, 또 경찰폭력 물의

시위참가자 부상·연행 잇따라

지난 12일 전국 주요도시에서 '정리해고 저지! 생존권 사수! IMF 반대 민중대회'가 열린 가운데, 대구지역 민중대회에서 가두행진에 나섰던 참석자 다수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연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대구 백화점 앞 집회를 마치고 가두행진에 나섰던 김형계(34·금속산업연맹 대구경북본부 조직부장) 씨 등 3명이 경찰의 폭행으로 머리에 수십巴늘을 훑매는 중상을 입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김찬수(38·대경연합 부의장) 씨 등 21명이 연행됐으며, 오후 6시경 불법연행에 항의하던 노동자·학생들 가운데 흥석원(37·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씨 등 10여 명이 다시 연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평화적인 가두집회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가로막았다"며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정작 생존권을 지키려는 민중들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주/간/인/권/호/름

(98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 12월 7일 (월)

전두환 정권때 고문을 당한 뒤 20년 가까이 후유증 앓던 이길상 씨 투신자살/이수일 교육부 중등교육정책과장,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집단 따돌림' 당한 학생이 4천 명에 이른다고 밝혀/인천지법, 상습적으로 자녀 폭행해온 신 아무개 씨에게 가정폭력특례법을 적용해 강제퇴거 결정/대법원, 강청 및 계좌추적영장 심사 강화방안을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 12월 8일 (화)

정부, 긴급감청 36시간·긴급감청통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돈명 변호사등 사회원로 12명, '바람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대통령에 촉구

◆ 12월 9일 (수)

김대중 대통령, 박상천 법무장관 등 당정관계자와 조찬 모임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위" 설립 시지/삼성자동차 노동자 2천여명, 삼성자동차 본사 앞에서 "고용승계 보장" 요구 시위/의문사한 김훈 중위 탄살 가능성 재수사 촉수/〈한겨레〉 여론조사결과, 인권위를 독립적 국가 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5.6% 차지/외국인노동자, 명동성당에서 캠페인 갖고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8·15 출소자 25명, 준법서약에 대한 협법소원 제출/영국 내무장관, 피노체트 스페인 인도절차 개시결정

◆ 12월 10일 (목)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전국 교도소 양심수 및 각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요구 단식 잇따라/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세계인권선언 실천촉구대회'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촉구/천용택 국방장관, 군 의문사 사건 재조사 방침 밝혀/박상천 법무장관,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혀/일본인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써 달라며 5천여 만원 보내와

◆ 12월 11일 (금)

검찰,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주도하는 노조간부를 전원 구속기로/문화예술인 5백 명, 스크린쿼터 사수 결의/여성노동자 1백여 명,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수립 촉구 시위/인도 노동자, 농민 등 4천여 명, 국영기업 노동자 대규모 감원에 항의하며 총파업 전개/국회에 제출된 규제개혁 법안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72 건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한 것으로 드러나/김 중위 사망사건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 국정조사 추진

◆ 12월 12일 (토)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전국 주요도시에서 민중대회 동시 개최하고, "정리해고 중단, 부정축재재산 환수" 등 요구

◆ 12월 13일 (일)

인천 부평경찰서, 두 뺨을 상습폭행하고 앵벌이시킨 힘으로 실직자 한광수 씨 구속영장청구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cho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민간사찰 부활' 강력 비난

공안책임자 처벌·사찰카드 폐기 여론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도 경찰의 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재야단체들은 경악과 분노를 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경찰이 사회 주요인사 및 사회단체에 대해 사찰을 벌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국민승리21, 청년진보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연대 등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정부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3면에 성명서>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은 "이번 일을 경찰의 과잉충성으로 축소·왜곡하지 말라"며 "공안·경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사태가 발생한 만큼 공안기관 수뇌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직무대행 노수희)은 "민간인 사찰 재개는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부의 인권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난하며, 카드 작성 경위의 혜명과 사찰카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전교조 단식 돌입

교사 8만여 명 서명 동참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전교조 합법화 문제가 교육상태에 빠진 가운데,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 전교조) 위원장단이 단식농성을 돌입했다. 또 전국의 교사 8만4천4백24명은 '교육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 법안처리를 유보

하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사항을 뒤엎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교원노조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증증장애인의 삶 외면하지 말라"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촉구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직업재활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법은 특히 장애인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증증장애인들의 고용과 삶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증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 체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로 보내거나 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하는 등 힘겨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 또한 누구보다도 '일'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증증장애인들을 소외시켜 비판을 받고 있다.

뇌성마비 장애인 김낙균 씨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스무 번도 넘게 고용 신청을 했지만, 한번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김 씨가 일할 의욕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다. 남 못지 않은 성실함으로 5년 동안 양 말 판매를 한 경험도 갖고 있는 김 씨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3급 장애인 이강주 씨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며 장애인에게 신문 기관이나 노점상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98년 12월 16일(수)

제 127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또한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원노조의 법제화 △법정교원수 확보 △계약제·연봉제·성과급제·수습교사제 등의 도입 계획 전면 유보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및 교장·교감 보직제 실시 △교육자치의 시·군·구 확대 및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교육청·학교평가제 폐지 △대학 서열화, 고교등급화, 학교장 추천입학제 재고 및 고교·대학의 무시험전형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증증장애인의 삶 외면하지 말라"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촉구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법은 모든 장애인들이 국가의 책임 하에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법은 특히 이제껏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증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법은 증증장애인의 개념을 직업적 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장애인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가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적 지원고용

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많은 증증장애인들이 소규모 집단을 형성해 제조·판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점을 감안해, 자영업과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지원의 폭을 넓힘으로써 증증장애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노동부와 국회 노동환경의 일부 의원들은 시설수용과 시설에서의 보호고용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증증장애인들의 인권과 능력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1]

일간(3면 발행)

인권하루소식(제 1272 호)

1998년 12월 16일 [2]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제 26 조>

- 모든 인간은 교육에 대한 권리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들과 인종 또는 종교집단 사이에서 이해, 관용,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치사회적 의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다. 선언 26조는 이러한 교육권을 인권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교육권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 산업화가 속화된 19세 후반이었다. 당시 아동노동에 대한 자본의 기혹한 착취는 오히려 노동력의 재생산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을 보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노동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국민들의 국가적 일체감을 고양시키려는 국가적 필요가 부합되면서 각국에서 초등무상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 상승과 불평등 감소를 추구하고자 했던 민중의 오랜 투쟁의 성과이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교육권은 '교육의 기회균등', 즉 차별받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로 해석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 기회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교육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기회균등의 의미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선언이 제정되고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 수준의 교육조차도 받지 못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선언의 정신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무엇보다도 임시위주의 교육 자체가 26조 2항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상급학교 진학만이 지상최대의 목표가 되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심 강화'라는 교육의 목적은 단지 '의자'에 모셔진 경구일 뿐이다. 임시위주의 교육은 또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연평균 6~7만에 달하는 중도탈락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한다. 과외를 받을 경제적 여유가 없는 빈곤층 자녀들은 학업성취 측면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임시위주의 학교에서 소외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조차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권은 국가가 통제하는 획일화된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교육에 접근할 수 있고 교육의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교육선택권'이라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국가가 교육내용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국정교과서제도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조치는 학습자와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경기도교육청의 폐교처분에 맞서 두밀분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5년간에 걸쳐 전개한 법정투쟁은 교육선택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선언 제3항이 특별히 학부모의 우선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나치의 교육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가 특정형태의 교육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언은 국가나 학부모가 아닌 학습자 자신의 교육선택권을 명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선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다.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1.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절 독재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정보기관을 동원한 진보 인사에 대한 사찰에 분개하였다. '윤석양 일병'의 암심선언을 비롯한 용기있는 행동들에 의해 파시즘적 정보정치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이에 대한 전 민중적인 저항으로 불법적인 사찰을 중단시킨 바 있다. 바로 그 시절 사찰의 대상에는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그도 집회에 나와 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2. 그런데 인권 대통령을 내세우며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이 정권 하에서도 파시즘적 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전국지방경찰청에 주요인사들과 사회단체, 기업에 대한 동향을 카드로 작성해 지방청별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미 집행되었다고 한다.

3. 우리는 이 정부의 이중성을 믿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보다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를 양산하는 '국민의 정부', 인권을 신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준법서 약서' 등을 통하여 인권을 더욱 교묘하게 탄압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사찰을 폐지하기보다 사찰을 더욱 고도화하여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이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4. 우리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또한 지난 참담의 과정에서 무수한 불법 정치사찰을 당해왔으며 이에 대한 막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으며, 결코 인권은 신장될 수 없다. 국민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이 감시받고 처벌받음으로 인해 오히려 '공포'의 정치를 경험하게 될 뿐이다. 이에 청년진보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며 아울러 아래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과 그 정부에게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바이다.

- ◆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불법적인 정치사찰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공식 사과하라.
- ◆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 ◆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 정치권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 정부는 사찰자료를 공개하고 사찰대상이 된 인사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

<성명서>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1. 경찰청이 지난 10월 각지방경찰청에 지시하여 각 지청별로 주요인사와 단체에 대한 사찰카드를 작성, 인물존인자료, 단체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인물존인자료에는 학력, 경력 등만 아니라 소행, 취미, 정치적 성향 등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자료 역시 설립일, 회원수, 설립목적, 배경 및 후원단체, 연혁 등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3. 경찰청은 관내 동향 파악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라고 강변하지만 이 카드의 성격상 명백한 사찰카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와 제2건국을 문위해온 신정부의 경찰청에서 군부독재 시대에나 통용되던 구시대적 국민감시행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게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사찰의 최대 희생자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의 집권 하에서, 게다가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미당에 이러한 군정시대의 유령이 버젓이 되살아나 전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뒤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태라 할 것이다.

4.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한 신정부에서 국민을 사찰대상으로 여겨 그 개인비밀을 카드로 작성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당국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찰자료는 전부 소각되어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98 10대뉴스 선정! 설문에 응답해주세요

<인권하루소식>은 98년 10대 인권뉴스를 선정해 오는 29일 98년 종간호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는 '98 10대 인권뉴스' 선정작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설문지(54개 문항)는 이미 팩스와 우편을 통해 보내드렸습니다. 설문지가 더 필요하거나 못 받은 독자께서는 연락 바랍니다. (741-53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의 기본권이 하나둘씩 잡식당하고 있다.

올해 초 정리해고의 법제화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가 '일할 권리'를 빼앗긴 테다, '살아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노조활동의 권리를 제한 당해 왔다. 게다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마저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구조조정의 큰 틀 속에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히 안전보장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

1998년 12월 17일(목)

제 127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에 대한 벌금 규정도 개정안에서는 완화되었다. 근로감독관의 점검·출석요구 등 감독상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현행법은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백 만원 이하로 낮춘 것이다.

다만, 개정안 제44조항에서 건강장에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들에게 재직 중에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 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법은 이 직종에만 무료 건강검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앞서 8월 노동부가 내놓았던 법안보다 규제완화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역시 경제우선 논리 아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역행하는 입장에서 있어 앞으로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놓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안전보장체계의 후퇴에 따른 재해 발생 증가가 오히려 기업의 비용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 베일을 벗긴다

전국 이래 최대 '감옥실태조사' 공개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려온 감옥의 인권실태가 공개된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지난 3월부터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교도소인권실태 조사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2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교도소인권실태 보고서 「한국 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와 기자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교도소인권실태조사는 전국의 교정시설 출소자들의 설문응답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행정법이 개정된 96년 12월 이후의 출소자들로 한정했으며, 특별사면이 있었던 3월 13일과 8월 14일에 전국 40여 개 교정시설 입구에서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 결과 36개 교정시설의 출소자 2백30여 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응답자 가운데 공안수와 일반재소자의 비율은 6:4 정도다.

설문은 △수감생활에서의 차별행위 △신체위생 △의류 및 침구 △일과 △식사 △의료 △규율 및 징벌 △도서·신문 열독 등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옥 전반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설문조사 결과 외에도 국내외 교도소 관련 법규와 인권개선책 등이 실려있으며, 집필작업엔 김선수 변호사, 박찬운 변호사, 도재현 변호사, 이승호 교수(전국대 법학과), 최정학(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손민영(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5년 복역), 엄주현(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인권운동사랑방) 씨 등 8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사이버권리 백서 발간

을 한해 통신공간 상의 인권침해 상황 및 사이버권리 운동의 현황을 소개하는 「98 사이버 권리 백서」가 발간됐다.

'정보민주화와 진보적통신을 위한 연대모임'(통신연대)이 발간한 이 백서에는 '전라고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이승희 홈페이지 사건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쟁, 지적재산권 문제, 온라인 성희롱 문제 등을 한해 발생한 다양한 사례와 논쟁들이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온라인 공동체 △알 권리 △소수와 약자의 권리 등의 목차로 분류돼 소개되었다.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7) 제 27 조 문화·과학, 함께 즐겨요!

<제 27 조>

-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 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 갖는다.
- 모든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산물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득을 보호받을 권리 갖는다.

문화적 권리는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과 향유, 나아가 참여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선언 이후 채택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15조는 혼당국들이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과학과 문화의 보전·발전·보급에 힘쓸 것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에선 안타깝게도 문화적 권리가 인권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문화의 획일화 현상은 문화적 권리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선진국의 거대 문화산업이 전세계 인구의 눈과 귀를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조약의 "모든 인민은 자결권에 기초해,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는 규정은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최근 스크린 퀴터 축소 방침에 대한 국내 영화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자결권에 기초해' 문화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사례의 하나로 꼽아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부터

제27조 1항은 또 과학의 진전 및 그 혜택을 누릴 권리 천명한다. 하지만 과학의 혜택을 누릴 권리 논하기 전에 '과학은 그 자체로 진보적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 인류가 누리게 된 혜택도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가 골칫거리인가 하면, 전자기술

돌아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의 개발에 앞서 과학에 대한 민주적 통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일반시민의 의견수렴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합의회의'다. 지난 87년 덴마크 의회 기술평가국이 처음 도입해, 현재 유럽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합의회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1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처음 선보인 바 있다.

한편, 유네스코가 97년 '인간 계놈과 인권에 관한 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유엔 인권위원회도 최근 인간 계놈(유전자+염색체)과 생명윤리에 관한 국제 가이드 라인을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학기술의 무한질주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인간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첫 출발이다.

◆ 내가 본 인권선언 ◆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27조 2항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의 지적인 생산물에 대해 생산자의 독점적 권리로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적으로 더 풍부한 생산물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을 또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것을 누릴 권리도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영화, 연극, 통신, TV, 여가, 서적, 음반 등 우리의 모든 문화생활이 돈을 지불해야만 향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예술·과학의 창작자들이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은 27조 2항의 당초 취지와 달리, 거대 기업만이 그 혜택을 누리게끔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전세계 특허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초국적기업의 독점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문화적 권리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좀더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을 규정해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과학의 성과가 유통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

군 관련 의문사 사건 일지

유가협측 진상규명 대상자 명단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새삼 군 내 의문사 문제가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 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십수년 간 얘기해 자식들의 사인규명을 요구 해왔던 민족민주전국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하다. 정치권과 언론의 반응이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는 회의적인 눈길도 엿 보인다. 이 때문인지 유가협측은 김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구성되는 민·군 합동조사반보다 앞으로 설치될 국가인권위원회에 더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명예회복 특별법)의 국회통과 문제와 강제조사권 등 실효성 있는 권한을 갖는 국가인권위 설립 문제에 당분간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래는 현재까지 유가협측에서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군 관련 의문사 사건들이다 <편집자주>

◆ 강제징집후 의문사 ◆

- 정성희 (21세) 82. 7. 23
- 이윤성 (20세) 83. 4. 30
- 기독교대전연합회 중 연행된 뒤 강제징집됨. 보인대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사.
- 김두환 (24세) 83. 6. 18
- 최은순 83. 8. 14
- 한영현 (22세) 83. 12. 11

◆ 학생운동 관련 의문사 ◆

- 김용경 (24세) 87. 2. 20
- 서울대 83학번으로 민민투 활동하다 입대. 보안대에서 프락처 행위를 강요 받다 고문을 당했으며, 정신불안이 시달리다 의문사.
- 이이동 (22세) 87. 6. 15

인권운동사랑방 송년회

- 때: 12월 23일(목) 저녁 7시
- 곳: 혜화역 부근 '술익는 마을' (765-6981)

발을 쪘 자살하기 어려움. 특히 군 당국은 총탄이 이마에서 목덜미쪽으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총을 이마 위쪽에 들고 아래쪽으로 쏘았다는 주장에 의혹이 제기됨.

- 이승삼 (22세) 87. 3. 3
- 외박복귀 이를 후 앞니가 4개나 부러진 상태에서 사체로 발견.
- 박상구 (21세) 87. 5. 9
- 정연관 (22세) 87. 12. 4
- 군부재자투표에서 야당에 투표한 뒤 의문의 죽음.

- 우인수 88. 6. 24
- 박종근 (26세) 88. 8. 1
- 박성은 (22세) 90. 5. 24
- 방위병 근무중 부대 내의 구타사건과 비인간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문건을 작성한 뒤 이 문제와 관련해 부대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

◆ 보안사 연루 사건 ◆

- 임기윤 (59세) 80. 7. 26
- 75년 '사회정의구현 부산 기독인회' 회장 출신으로 보안사 부산분실로 연행된 이후 사체로 발견.
- 김영환 (27세) 91. 4. 27
- 고려대 졸업 후 한겨레 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 한미군사관계, 평화, 군축 문제, 남북관계, 통일문제 등을 연구 하던 중 보안사의 추적을 받아 강경대학생이 사망한 다음날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경찰·안기부·기업 관련 의문사

◆ 안기부 관련 ◆

-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 91. 5. 6):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안기부로부터 전노협 탈퇴를 강요받던 도중 안양병원으로 후송된 뒤 의문사
- 이내창 (중앙대 총학생회장 · 89. 8. 15)
- 장준하 (75. 8. 17) 최종길 (서울대 교수 · 73. 10. 19)

◆ 경찰 관련 ◆

- 정법영 (청주신학대생 · 78. 7. 8) 문영수 (노동자 · 82. 8. 19) 신호수 (86. 6. 19)
- 김성수 (서울대생 · 86. 6. 21) 우종원 (서울대생 · 86. 10. 11) 이태춘 (노동자 · 87. 6. 24) 고정희 (연세대생 · 88. 5. 13) 이철규 (조선대생 · 89. 5. 10) 문승필 (전남대생 · 92. 11. 3)

◆ 기업 관련 ◆

- 정경식 (노동자 · 87. 6. 8) 오범근 (노동자 · 88. 3. 10) 문용섭 (노동자 · 88. 6. 9) 배중손 (노동자 · 88. 11. 14) 이재호 (노동자 · 89. 10. 29) 김용갑 (동우전문대 총학생회장 · 90. 3. 28) 이덕인 (노점상 · 95. 11. 2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cha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사노맹 관련 출소자…을 들어 두 번째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한 출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부장판사 최병학)는 보안관찰처분자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고원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92년 사노맹 관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됐던 고원 씨는 95년 10월 만기출소와 동시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결정됐으며, 지난해 8월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를 받았다. 당시 고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서울지검 이용훈 검사는 △출소후 기간의 일천한 △전향 거부 △복역증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단식농성한 사실 △이혼 및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트집잡아 "고 씨가 보안관찰처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고 씨는 "출소 후 처음엔 그저 순응 하려 했지만, 경찰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1년반 뒤에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통보받게 되자 일방적으로 당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고 씨는 "처음엔 포기할 생각도 해봤지만, 혼자서 법전을 뛰어가며 소송을 준비했다"며 "재판부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 씨가 보안관찰의 명예를 벗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최종심 판결을 기다려야 하며,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안관찰처분자에게 보안관찰대상자로 신분이 바뀔 뿐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 보안관찰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월에도 장민성(사노맹 관련 출소자)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고원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경찰의 대민사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반인권적 이라크 공습 중단하라"

국내 민간단체 비난 성명

17일 새벽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 대해 전격적으로 공습을 감행하자, 국내 사회단체들은 두 강대국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옛 지식인연대, 대표 김진규)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8년여의 경제제재와 수천 번의 무기사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공격을 감행한 것은 '테러리즘'과 다름없다"며 "이번 군사공격엔 클린턴 탄핵안 통과를 앞두고 미국 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추악한 목적과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지배하려는 독점자본의 이해가 깔려있다"고 비난했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도 "이번 공습은 세계평화에 명백히 반하는 군사행동이며, 바로 일주일 전 50들을 맞은 세계인권선언의 평화와 인권 정신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한편에서는 평화를 외치면서 돌아서서 미사일 폭격을 감행하는 것은 강대국 인권정책의 이중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유엔의 경제 제재로 무고한 이라크 민중이 희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습을 자행한 것은 비인간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라며 "한국 정부도 범죄적 공습에 대해 결연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역시 "세계평화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공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998년 12월 18일(금)

제 127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보공개를 요청한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단체와 구성원에 대한 자료 △인물존재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위해 작성한 자료 일체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리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헌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자신과 청구인의 구성원 개인에 대해 작성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15일 이내에 공개를 결정하고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해 청구인들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올해 7월 대법원은 90년 윤석양 이명이 폭로한 국군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제 28 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갖는다.

<제 29 조>

1. 모든 인간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있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일반인의 안녕을 위한 공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해서 행사할 수 없다.

<제 30 조>

이 선언의 그 어떤 조항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 중 어느 것이라도 파괴할 목적을 갖는 어떤 활동에 종사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같은 의미에서 선언 29조 1항은 권리의 실현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질서는 우리가 굳이 따라야 될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모든 사람은 오직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만 의무를 가질 뿐이다.

흔히 "권리를 주장하면서 의무에는 무관심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의무'를 '질서 존중' 내지 '준법의식' 정도로 해석한다. 그러나, 인권선언이 말하는 의무는 질서유지 또는 준법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와 자유 또한 결코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에 대한 선동이나 민족적·인종적·종교적 반감을 부추기는 일을 삼기는 것, 나아가 평화유지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 사회의 진보와 공동체의 발전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등이 공동체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 선언 29조에서 말하는 '의무'는 바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폐'일 뿐 아니라 그 성취를 위한 '수단'이다.

29조 2항은 권리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다. 개인에 대한 권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는 것이 인권의 기본 성격인 만큼, 인권에 대한 국가의 제한이 쉽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권리의 제한은 '법'이라는 데 안에서만 가능하며, 동시에 그 법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인권은 정의로운 법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끝으로 선언 30조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 인권을 침해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느 누구도 선언의 어떤 한 조항을 왜곡해 다른 권리들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선언에서 열거된 권리의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부족한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가 실현할 수 있는 '조건' 즉, '새로운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및 법적 질서'를 만들고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chollian.net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금속연맹, 국민회의 농성돌입

“빅딜, 재벌엔 특혜·노동자엔 고통”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노동자 20여 명이 18일 아침 8시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당시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은 구조조정 관련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과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등 노사정·노정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우리는 왜 국민회의에 들어왔는가’라는 제목의 항의서한을 통해 “재벌경제의 암세포인 족벌경영과 총수의 소유지배를 없애기는커녕 노동자에게만 실업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난 12월 7일 정부와 재벌이 발표한 5대 재벌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번에 발표된 구조조정 계획은 오히려 국민의 혈세로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노동자들은 지적했다.

더구나 전교조 합법화,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삼미특수강 노동자의 고용승계 등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약속했던 사항 중 단 한가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한편, 조준호 금속연맹 위원장 직무 대행, 김창남 삼미특수강 노조비상대책위원장 등 노동자들은 조세형 국회의 총재 권한 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녁 8시 현재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국가보안법 긴급토론회 ◆

김대중 정부 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현주소

· 12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종로성당 3층 강당

◆ 「한국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 및 기자간담회 ◆

· 12월 21일(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1998년 12월 19일(토)

제 127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돌아가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의 참석자들은 “세계 어디서도 감히 업무를 내지 못한 인간 복제 실험이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것은 과학자들의 무분별한 실험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인간복제와 관련된 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규제장치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금요시위 2백회 맞아

SOFA 등 여전히 현안으로

지난 14일 경희의료원의 인간배아 복제 성공이 전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18일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 등 20개 환경·사회·종교 단체 회원 40여 명은 광화문 빌딩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인간복제 금지를 위해 엄격한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모임의 박병상 씨는 “인간복제 실험은 특정 인종만을 선별해 번식시키려는 우생학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생명윤리 측면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의 이해정 씨는 “인간복제 실험은 경제적 성과만을 중시하는 상업주의와 연구자의 소영옹주의 업을 진행해왔다.

18일 열린 2백회 금요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은 “SOFA로 인해 아직도 미군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이 구조적으로 짓밟히고 있다”며 △미군범죄에 대한 미국의 사과 △SOFA의 즉각적인 개정 △구체적인 미군범죄방지대책 수립 △국회의 ‘SOFA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다시 강력히 요구했다.

사정에 의해 1면만
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chollian.net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2월 22일(화)

제 127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한국 감옥의 재소자들은 의료, 난방, 위생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도서열독 및 집필권 제한, 부당한 징벌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한국 감옥의 현실」(도서출판 사람생각) 출판회를 갖고 올 3월부터 진행된 감옥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97년 이후의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출소자들을 상대로 총 2백64개 문항에 걸쳐 진행됐으며, 2백30명이 설문에 응답하는 등 건국 이래 최초·최대규모의 조사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감옥현실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5백 명을 훨씬 능가하는 대규모 시설들로, 재소자들의 교정활동에 근본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엔 약 다섯 평의 공간에 33명까지 수용되기도 했다는 응답자가 있는 등, 수용시설의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집필자인 박찬운 변호사는 “현행 행형제도는 대부분 소장의 재량이나 법무부의 공문에 따라 운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소장이나 교정당국이 자의적 판단이나 결정을 못하도록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이번 조사가 당국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교정당국과 얼굴을 맞대고 논의를 벌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취재진과 출소자, 법무부 당국자 등 1백여 명에 가까운 청중이 모여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법무부 김화수 교정과장은 “민간단체가 지적한 교정행정 개선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출소자 가운데, 흥경선(36년 구금·3월 13일 가석방) 씨는 “겉으론 사상전 항제를 없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도소 내 공안수들의 쳐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꾀집었고, 지난 10일 출소한 현정덕(8년 구금·사노맹 사건) 씨도 “교도소 재소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방마다 붙어 있는 재소자준칙 외에 하다못해 행형법 규정이라도 붙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국가 혐의 철회” 촉구

28, 9일 영남위사건 결심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의 구형 공판이 28, 29일로 다가왔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초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반국가단체 혐의 인정 여부에 우려섞인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의 경우, 일단 반국가단체 혐의가 인정되면 이후 공안당국이 ‘이적 단체’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계속 이용되곤 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연합·참여연대국제인권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긴급히 ‘국가보안법 토론회’를 열고,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반국가단체 적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 측은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해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증인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해 민족을 산 바 있다. ‘제3의 협조자’가 제보한 디스켓에 강령과 조직구성표 등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협조자의 존재를 공개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사건 구속자들에 대해 장기간 불법 도청이 이뤄졌음이 밝혀져 수사과정 내내 인권시비가 꼬리를 물기도 했다.

송년의 밤, 초대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아끼는 모든
분들을 모십니다.

· 때: 12월 23일(수) 저녁 7시부터
· 곳: 술익는 마을(765-6981)
· 혜화역 4번출구 5분거리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세계인권선언은 다양한 문화·정치·종교적 차이 등을 뛰어넘어 인류역사상 최초로 국제사회가 합의해 낸 인권 문서였다. 바로 그 다양성과 차이로 인해 인권선언에는 '최소한의' 인권만이 담겨지게 되는데, 이는 거꾸로 세계인권선언이 인류의 '보편적' 기준이자 '양도할 수 없는' 인권원칙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됐다.

"인간은 누구나 태고난 존엄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선언 1, 2조로부터, "남의 권리도 나의 권리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30조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인권의 내용과 원칙들과 만날 수 있었다.

생명과 신체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 평등, 자의적 체포·구금의 금지,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명예의 권리, 국적의 권리, 결혼의 권리, 재산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 등 자유권 조항과 사회보장의 권리, 노동·휴식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의료·주거 등의 권리, 교육의 권리, 문화·과학의 권리 등의 사회권 조항들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가깝게는 우리 헌법의 조문 속에도 녹아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언과 헌법의 정신에 비춰본 우리의 모습은 사뭇 부끄러운 게 현실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공존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 해고와 실업의 나락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 등을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그리고 행여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나아가 이미 50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인권의 내용, 선언의 제정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에 밀려 누락되었던 인권의 내용 등, 선언이 담지 못한 한계를 넘어 새로운 인권현장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우리의 끝으로 남겨져 있다.

그동안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를 지켜봐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글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해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낼 예정입니다.

.....주요 공판 안내

- ▶ 12월 22일 (화)
 - 전상봉 외2(국보법, 민예청 사건) 오후 3시, 서울지법 311호, 신관
- ▶ 12월 23일 (수)
 - 강기웅 외5(국보법 찬양·고무 등, 진보민청 사건) 오후 2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관
 - 단병호(업무방해)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속행

주/간/인/권/흐/름 (98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 12월 14일 (월)

경찰청, 10월부터 민간 사찰 재개한 사실 밝혀져/경희의료원, 인간 배아복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국·공립 어린이집이 금·간식 지원비를 떼먹는 등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에바다농아원, 비장에 어린이를 농아원에 수용하면서 보조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도 불법 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전교조 위원장단, 교원노조 법제화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

◆ 12월 15일 (화)

경찰의 사찰활동 재개, 안기부의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시민·사회단체들, 경찰청의 민간사찰에 대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력히 비난/환경운동연합 등 9개 환경·사회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경희대 앞에서 인간복제 실험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열어/송재현 서울행정법원장, 행정소송에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

◆ 12월 16일 (수)

군, 검문에 불응한 승용차에 실탄을 발사해 대학생 등 4명 중경상 입어/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전·현직 경관이 관련된 납북어부 김성학 씨 간첩조작 고문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특별검사)로 백오현 변호사 선임/부산지검, 부산시청과 산하 구청에 공무원상상형세 등 관련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정부,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하기로

◆ 12월 17일 (목)

미국과 영국, 이라크에 전격적인 공습 단행/국내 민간단체, "반인권적 이라크 공습 중단" 촉구/민변 등 5개 단체, 경찰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한국노총·민주노총,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사정협의사항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다"며 강경투쟁 선언/김훈 중위 유족들, 현장조사를 비공개로 하는 것에 대해 '자살로 몰아가려는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발/대법원, 외국 국가와 개인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직접 외국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처음 인정/서울고등법원,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 출소자에 승소 판결

◆ 12월 18일 (금)

금속연맹,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없이 빅딜 통해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며 국민회의 당시 농성 돌입/미군법제근절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금요집회 2 백화 맞아

◆ 12월 19일 (토)

잠시드 미거 동티모르 유엔 특사, "동티모르 자치권협상이 타결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혀

◆ 12월 20일 (일)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준비위원회', 조용수 사장 묘소에서 추도식 및 발족식 열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인권 시평

여기는 전투지대, 평화의 교실을 꿈꾸며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교권주권을 비통해하는 곡소리
무조건 체벌을 금지하니 교사가 동네
복이 되었다. 반격해라, 피웅피웅!
내 아이는 때마다 교사도 맞아봐
라, 따다당!
때리는 선생님이 싫다구? 바꿔 달라
구? 갑히 애들이 교사를 쫓아내, 세
상에! 으드드드!

요즘 학교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전투
지대에서 들려온 법한 콩북는 총소리
와 비슷하다. 체벌과 꾸지람을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했다. 학
생으로부터 체벌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업중인 교사를 연행했다는 충격과
격앙된 반응 속에서 교권 주권을 비통
해하는 곡소리가 높다. 이 곡소리는
교권수호라는 교지를 탈환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구비를 요구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정작 진지한 '대화'는
들려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
은 '전투지대'를 떠나 '가르치고 서로
에게 배우는 교실'로 문제를 옮기는
일이 아닐까?

정작 필요한 질문들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부모, 학교당국자와 교사...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다. 각각의 관계에 속해있는 당사자간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언제나 존재하기에 우리는 이를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

"두 당사자간의 갈등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그 주장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가?" "그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권주권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의 기사와 기고된 글들에 이 질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촌지수수와 교사정년파동 등을 계기로 교사들의 위상이

악화된 현실과 과거에는 웬만한 체벌
이면 수용하던 자세를 보이던 학생과
학부모가 맞대음을 시작했다는 데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사랑의
매(체벌)'가 교육현장에서 일방적으로
금지됐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더 이상 교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스승을 공경하고 따르는 분
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절실히다." 이
것이 과연 올바른 질문이고 분석일까?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학습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배움은 '참
여'가 존중되고 장려되는 환경에서라
야 그 효과가 가장 높다. 교사와 학생

표현의 자유가 질식된 교실에는 교권도, 학생의 인권도 없다

의 견해는 표현의 자유가 공정하고도
정의롭게 보장되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표현되고 토론되어야 한다. 학교는 학
부모와 여타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장
려해야만 한다."(유럽의회, '학교에서
의 인권교육에 대한 권고안' 중에서)

표현의 자유가 질식된 우리의 교실에
는 분명 교권도 학생의 인권도 없다.

교사가 전교조 반대서명을 강요당하
고, 교장이 학교의 민주주의를 실험하
는 학교운영위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학부모에게 뿌려대는 학교는 때리고
차별하는 담임을 바꿔달라는 건의서를
교장선생님께 제출한 초등학생들을 노
여운 시선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다.

"그렇게까지 할게 뭐가 있느냐?"는
학생에 대한 헐난은 전혀 어울리지 않
는다. '대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
술'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 필수답안이다. 학교에서 어떤 문

제가 발생할 때, 학교의 주체 누구에게
나 공정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때론 자신을
변호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
돼야 한다. 그런 통로는 자물쇠가 잠
겨있는 건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공중전화처럼 흔하고 신속하게 이
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
상은 현실적 약자여야 한다. 최근 불
거진 몇 건의 사건으로 교사가 약자로
탈바꿈할 수 없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
다. 교권의 주장이 이제 갖 시작된 학
생의 인권 논의에 친물을 끼얹는 결과
를 낳지 않았으면 한다. 상식적이고
긍정적인 통로가 없기 때문에 교권 또
한 위협받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전환
되었으면 한다.

솔직하게 자문해보자. 학생들이 평화
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수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 현장에서 제시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너희는 그런 방법
을 택하지 말고 이 방법을 택해 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말
이다. 어떤 교사나 학생에 대한 여론
재판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대안을 마
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
사와 학교당국만이 싸안고 고민할 문
제만은 아니다. 말하고 싶어하는 학생
들에게 의견을 듣자.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어떤 식
으로 평가받았으면 좋을지 잘 알고 있
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스승의 그림자를 밟혔다
는 단식과 분노에서 벗어나 사태를 제
대로 인식했으면 한다. 교사를 112에
신고했다는 교교생만이 사제간의 신뢰
를 무너뜨린 죄인인가? 이를 타 교
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문제의 근본원인을 '깨가 없다'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담황스럽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
이라기보다 아이들을 보다 잘 가르치
기 위한 것이라는 한 학부모의 말을
상기하고 싶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cha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국보법 전력’ 강단서 쫓겨나

교육부 등, 일선 대학에 압력

한 대학강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때문에 강단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선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명상 강좌를 맡고 있던 이윤정(45) 씨는 23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사실 때문에 학교측으로부터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윤정 씨는 94년 광주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 및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이 씨는 일본 동경도의회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범민련 해외본부의장과 접촉해 국내 동향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올해 2월 만기출소한 뒤, 지난 8월부터 조선대 사회교육원에 출강해 왔으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겨울강좌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선대 사회교육원측은 교육부의 공문과 ‘주변’의 전화 등 외부압력을 이유로 이 씨에게 23일 “강의를 보류해 달라”는 통보를 보냈다.

지난 8월 이 씨를 채용했던 조선대 사회교육원 관계자는 “주변에서 이 씨

의 신상을 문제삼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시간강사 신원조사’에 관한 공문을 보내오는 등 여러 정황상 ‘강의 보류’를 결정하게 됐다”며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소개한 교육부 공문은 “일부 대학강사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수령 사실 등 신원에 특이사실이 나타난 사례가 있음을 알려준다”며 신원에 문제가 있는 강사에 대해 사실상 퇴출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씨가 강단에서 물러난 데는 안기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씨는 “학교 관계자로부터 ‘안기부의 전화를 수 차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앞서의 학교 관계자는 “외부에서 전화가 여러 차례 왔는데, 안기부에서 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이윤정 씨는 “강좌에 사람이 모일 것 같으니까 당국에서 제동을 건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학교 관계자도 “처음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 강의를 맡겼고 이 선생이 강의도 적극적으로 해

1998년 12월 24일(목)

제 127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며 여전히 좋아지면 다시 강의를 맡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윤정 씨는 출소 후 아들이 다니던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도 압력에 의해 물러난 사실이 있다. 이 씨는 올 4월 아들의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돼 활동중이었으나, 역시 교육청의 압력에 의해 사퇴한 바 있다. 이 씨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건드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틈만나면 한총련 연행사태 잇따라

또다시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한 연행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부산 동의대생 3명이 ‘한총련을 사랑하는 모임’이란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본지 12월 23일자 참조), 같은 날 저녁 충남대학생 2명도 한총련 대의원이었다는 이유로 연행됐다.

22일 저녁 9시경 충남대학교 교내엔 대전 북부경찰서 형사와 의경 20여명이 들어다쳐 한총련 대의원직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배중이던 조철상(98년도 사회대 학생회장) 씨와 강건규(98년도 경상대 학생회장) 씨를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들은 미란 다원칙을 지키기는커녕, 체포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의 연행을 제지하던 다른 학생 2명도 함께 연행되었으나 이들은 밤 11시 경 풀려났다.

한편, 대전 북부경찰서측은 “조 씨와 강 씨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대의원직을 탈퇴하지 않았고, 올해 초 총장퇴진 운동 과정에서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연행 이유를 밝혔다.

미국의 이라크침공 규탄과 한국의 지지표명에 대한 항의집회

• 때: 12월 24일(목) 낮 12시-1시

• 곳: 서울 광화문빌딩 앞(구 국제극장)

• 주최: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기본권 쟁취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녹색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청년생태주의자KEY,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보안관찰대상자 계속된 수난

출소신고 불이행 이유, 체포 후 석방

보안관찰대상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오전 11시경 인천 중부경찰서는 보안관찰대상자 정민주 씨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7시간여 만에 풀어줬다.

정 씨는 95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돼 올해 10월 4일 만기출소했으며, 출소와 동시에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정 씨를 긴급체포하기 앞서, 정 씨에게 출소신고를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출두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재벌의 우려가 있다는 당국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생활을 통제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안관찰법에 규정된 출소신고를 거부해 왔다.

정 씨는 또 조사 과정에서 “이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부당하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날 조사 내용은 정 씨의 인적사항, 형을 살게 된 경위, 출소신고를 거부한 이유 등이었다. 정 씨는 경찰과의 실랑이 끝에 이날 저녁 6시 반 경 귀가조치됐다. 경찰은 “조사 내용은 검사에게 넘겨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를 작성하는데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씨와 같은 혐의로 실형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해정 씨도 지난 달 13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용인경찰서에 긴급체포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본지 11월 14일자 참조).

**연말입니다.
밀린 구독료 납부로
시원한 마무리를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

이동수

변협, 인권보고서 발간

97년 인권상황 개관

대한변호사협회는 97년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김영삼 정부 5년을 결산하며 97년도 인권상황을 △김영삼 정권밀기와 대선정국 △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악화와 IMF 체제의 대두 △남북관계의 교착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파동 등을 배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 각 부문별 인권상황이 정리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또 97년 정치개혁 입법의 평가와 전두환·노태우 사면의 문제점,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등을 특집으로 다뤘다.

열사력 판매합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는 70년대 이후 사망한 민족민주열사들의 약력 등을 담은 99년 열사달력을 제작·판매중이다.

· 가격 5천원 / 문의: 742-318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ia.net/~rights

아빠를 선물로 보내주세요

양심수 자녀들의 성탄절 소원

"산타 할아버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아빠예요."

태어난 지 3일만에 아빠를 빼앗기고 7년째 아빠 품에 안겨보지 못한 명지(7살)의 성탄절 소원이다. 명지의 아빠 장창호 씨는 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8·15 특별사면 때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석방되지 못했다. 잠 씨는 앞으로도 5년 이상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기협 목요집회에는 명지 또래의 양심수 자녀들이 참석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등 '제동진치'를 열었다. 감옥에 있는 아빠, 할아버지 등의 석방을 기원하면서였다. 민경우(97년 구속, 3년6월형) 씨의 아들 준홍이 등 아이들은 캐롤을 불려가며 재롱을 선보였고,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작은 선물꾸러미를 받고 즐거워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재롱을 지켜보던 참석자들은 "내년에는 아이들이 아빠의 품에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10월 말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는 4백5명에 달하고 7년 이상 구금중인 장기수만도 21명이다.

검찰 "북 연계" 억지 주장

민애청 첫 공판

지난 11월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의 첫 공판이 24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민애청의 총

1998년 12월 25일(금)

제 127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즉각 지지한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이라크 민중을 학살한 행위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정위 미련없다"

24일 국회앞, 캐롤 대신 투쟁가

24일 국회 앞에선 성탄 캐롤 대신 노동자들의 투쟁가와 분노에 찬 함성이 울려퍼졌다. 정부가 노사정 합의사항 이자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사항인 교원노조 법제화, 실업자 노조가입, 구속·수배문제 해결 등 민주노총 5대 요구안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였다.

이날로 단식 17일째에 접어든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현장의 문제를 투쟁으로 해결하기보다 노사정위에 의존했던 지난 1년이 남긴 것은 휴지조각이 된 단체협약과 4백70여 명의 구속·수배자"라며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노사정위와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투쟁에 나서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사 노사정위 합의인이 뒤늦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재벌들에게 필요한 것은 1주일만에 통과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1년을 매달려야 하는 노사정위에 더 기대할 게 무엇이냐"며 노사정위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갑용 위원장에 이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20개 산별연맹 위원장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년 안에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원회 탈퇴는 물론, 노사정위 해체 및 정리해고 중단과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내걸고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휴일 관계로 26일자 쉽니다.

일간(2면 발행)

인권하루소식(제 1279 호)

1998년 12월 25일 [2]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유엔인권이사회가 89년 박태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과 관련, "국제규약 위반이며, 한국정부는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 한국정부가 오는 1월 20일까지 유엔의 시정요구를 이행할지 주목된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인권이사회 견해
-제64차 회기-
통보번호 628/1995

통보자 : 박태훈(대리인 조옹환)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 : 대한민국
제소일 : 1994년 8월 11일
허용 결정일 : 1996년 7월 5일
견해재택일 : 1998년 10월 20일

인권이사회는 98년 10월 20일에 열린 회의에서 박태훈 씨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통보번호 628/1995호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통보의 제출자, 그의 대리인 및 당사국이 이사회에 제공한 모든 문서 자료들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채택했다.

(증례)

-이사회가 심의한 쟁점과 진행절차

10. 1 (생략)

10. 2 (생략)

10. 3 이사회는 규약 제19조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음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가)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공의 건강 또는 도덕을 보호할

정한 권리보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당시국의 주장을 검토한다. 이사회는 당시국이 조약에 따른 의무보다 국내법의 적용을 우선하는 것은 규약과 합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회는 당시국이 조약 제4조 (3) 항에 따라 비상사태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규약의 일부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일이 없음을 지적한다.

10. 5 (생략)

11. 인권이사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된 사실관계가 조약 제19조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

12. 조약 제2조 3 (b) 항에 따라 당시국은 박태훈 씨에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데 대한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3. 선택의정서의 당시국이 됨으로써 당시국은 조약의 위반이 일어났다는 것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승인하고 조약 제2조에 따라 당시국은 자국 영토 안에서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조약이 인정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또한 조약위반이 일어났다고 인정될 경우 효과적이고 집행할 수 있는 구제조치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여, 이사회는 당시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사회의 견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또한 당시국이 이사회의 견해를 번역하여 공개하고 특히 사법부에 이사회의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접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가) 타인의 권리와 명예 존중

(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공의 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 중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이경, 방석수, 이은미, 흥정련, 김명호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징역 10년에서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토대로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당초 피의자들에 대한 감청영장을 3년 동안 받았다는 것은 법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감청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받은 6명의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양심적인 세력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는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도·감청 등 인권유린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이같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한 만큼 무죄추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올해 종간합니다

을 한해 동안도 인권하루소식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1월 5일 재발행합니다.

1998년 12월 29일(화)

제 128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교단체 대표자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문제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노사정합의 위반으로 촉발된 모든 사태를 대통령이 방지하거나 조장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0개 단체 대표들은 이어 △노사정 합의와 노정합의 이행에 대한 대통령 개입 △교원노조 법제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이행 △구속자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 △성역없는 청문회 개최 △경제파탄책임 규명과 비리인사 처벌 및 부정축재재산 환수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으며, 기자회견 후 국회를 방문해 입장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29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교원노조법제화와 노사정 합의이행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가진 뒤 민주노총 단식투쟁 농성장에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표자 지지 농성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구독료 납부바랍니다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정리해고 시행, 실업자 150만 명(설문응답도 82%)
- 신(新)사상전향, 준법서약제 도입(64%)
- 국가인권기구 설립 비틀(57%)
- 도마에 오른 조선일보 사상공세(54%)
- 군 의무사 의혹, 세상밖으로(48%)
- 육지위의 노예선, 양지마을(45%)
- 소리만 요란했던 양심수 석방(43%)
- 초·중·고등학교 '왕따' 현상(42%)
- 불법검문 시민불복종 운동 전개(40%)
- 김대중 정권, 국보법 구속자 오히려 증가(36%)

➡ 2, 3, 4면에 해설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인권하루소식>은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인권하루소식 독자를 상대로 98년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총 54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98 10대 인권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모두 1백19명의 독자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편집자주>

정리해고 시행, 실업자 150만 돌파 노숙자·가정해체·어린이 결식 급증

98년 2월 정리해고제의 시행과 함께 우리는 본격적인 '실업의 시대'로 진입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0~60만 명 수준이었던 실업자가 올해엔 1백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실업률도 2~3% 대에서 7% 이상으로 치솟았다.

정리해고가 가져온 결과는 단순히 일자리의 상실만이 아니었다. 실업에 따른 한 가구의 생존 위기는 곧바로 가정의 해체(이혼율 및 시설의 어린이 증가)로,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업포기와 결식, 나이가 노숙자의 급증과 사회범죄 및 자살의 증가 등 충격적 문제들을 파생시켰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은 노동자, 서민들을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서민들은 곳곳에서 저항의 물질을 보였다. 그러나 9월 만도기계 파업시 정부당국의 강경폭력진압처럼 정당한 파업과 시위의 권리마저 짓밟히는 결과가 빚어졌다. 내년이면 경기가 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미 실업과 그에 따른 인권문제는 구조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신(新)사상전향, 준법서약제 도입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

지난 7월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법을 대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문서로 서약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준법서약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것인가'를 묻는 것이기에 사상의 포기를 요구하는 전향제도와는 다르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민변·민가협 등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제가 더욱 교묘해진 형태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반인권적인 제도라며 즉각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대다수가 확신범인 이상, 그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상전향과 다를 바 없으며, 이에 따라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양심수들

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준법서약제를 실시한 결과, 8·15 사면에서 3백명 가까운 양심수들이 제외됐으며, 준법서약서를 쓰고 풀려난 양심수들도 여전히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등 운신의 폭을 제한당하고 있다.

한편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양심수 가운데 일부는 "준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장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비틀'

법무부 '인권위 장악' 고집

98년은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 인권정책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가 법무부의 오만과 욕심 때문에 비틀거리 한 해였다.

지난 9월 25일 법무부는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 인권법안은 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하고 시정권과 수준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 위상을 요구한 국내외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 민간단체는 물론, 여당인 국민회의와 국제앰네스티, 그리고 언론 등으로부터 잇따라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끝까지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를 고집했고, 이러한 논란 속에 당초 12월 10일로 예정됐던 인권법 제정 문제는 결국 내년의 과제로 넘겨졌다.

인권위 설립을 둘러싼 법무부의 태도는 인권대통령이라고 자부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와 기대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마에 오른 조선일보 사상공세

최장집 교수 마녀사냥 파문

<월간조선> 11월호가 '사상검증'이란 이름 하에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 교수의 역사관을 친북적인 것으로 몰고 가 사회적인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월간조선>의 진보 인사 흡집내기가 이번만큼은 수월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 교수 보도를 계기로 매카시즘적 언론 폭력을 일삼는 조선일보에 대한 규탄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국내외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월간조선의 '사상공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고, 11월 11일엔 서울지방법원이 <월간조선> 11월호에 대해 판매·배포금지 기쳐분결정을 내리기도

만화로 되돌아본 98년 한국의 인권



인권하루소식

합본 11호 색인

(제1157호 - 제1280호)